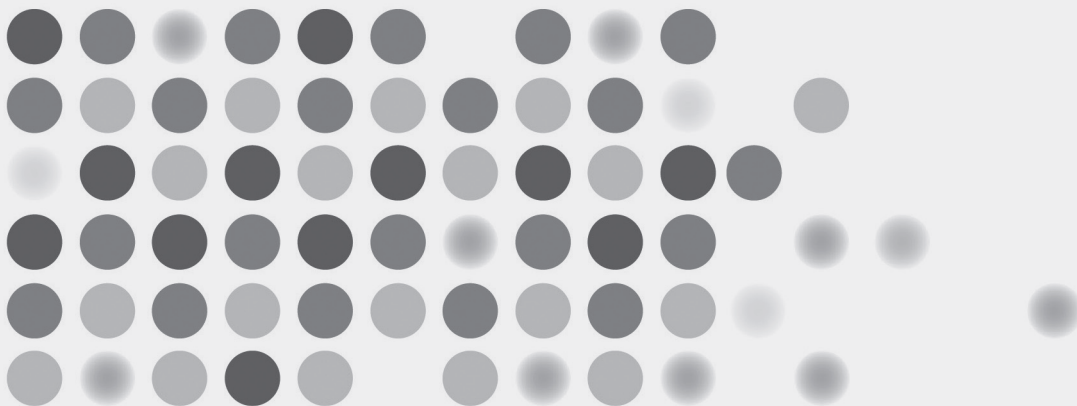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이승현 | 박성훈



발간사

지난 25년간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수립 및 범죄예방에 기여해 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올해도 '안전한 국가', '통합된 선진사회',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라는 목표를 정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선진법치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비행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추어 소년의 개별특성에 적합한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비행초기에 범죄를 중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서는 법원송부를 통해 소년의 처분 결정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의 처우지침과 지도방향 설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보호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1곳만 있어 위탁소년의 과밀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은 위탁소년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제대로 된 비행진단 및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소년분류심사업무와 관련된 법제도에 대한 검토는 물론 위탁소년과 직원을 비롯해 소년부 판사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연구가 향후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번 연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수집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 소년과의 관계자 분들과 연구에 대한 자문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이승현)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11
제3절 연구방법	12
제2장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실태 분석 (이승현)	15
제1절 소년분류심사의 의의와 관련법제	17
1. 소년분류심사의 의의와 기능	17
2. 소년분류심사의 관련법제	18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 및 인력현황 검토	20
1.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현황	20
2. 소년분류심사원의 인력현황	20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현황 검토	23
제4절 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진단 및 조사현황 검토	25
1. 분류심사에서의 비행진단 절차	26
2. 분류심사의 비행진단방법	27
3. 분류심사에서의 조사 현황	28
4. 분류심사의 현실	29
제5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인성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실태 검토	30

| 제3장 | 소년분류심사원 이해관계자 조사결과 (박성훈) .. 33

제1절 조사의 개요	35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35
2. 표본의 특성	35
3. 주요 조사항목	38
제2절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경험실태 및 인식	41
1. 형사사법기관 접촉 경험	41
2. 생활 및 시설에 대한 만족	42
3. 프로그램 만족	52
4. 입소 후 인식변화	56
제3절 직원의 소년분류심사원 업무실태 및 인식	63
1. 직무에 대한 인식	63
2. 교육업무에 대한 인식	72
3. 분류심사업무에 대한 인식	76
4. 수용과밀화에 대한 해소방안	79
제4절 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이용실태 및 인식	81
1. 분류심사 이용 현황	81
2. 분류심사 평가 및 개선안	84
제5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에 대한 의견	86
1.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인식	86
2. 소년분류심사원의 이미지	87
3.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및 역할강화에 대한 인식	89
4. 소년분류심사원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91
5.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 방안	92

| 제4장 | 외국의 소년분류심사 형태 (이승현) 95

제1절 일본의 소년분류심사제도	97
1. 소년감별소의 역사	97
2. 소년감별소의 운영현황	98

3. 소년감별의 내용	102
4. 소년분류심사 관련법률: 소년감별소법	106
제2절 독일의 소년분류심사	112
1. 예비절차(Vorverfahren)	113
2. 소년법원보조인제도(Jugendgerichtshilfe)	114
3. 조사를 위한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	115
제3절 미국의 소년분류심사	117
1. 초기면접(Intake)	117
2. 처분심리(Disposition Hearing)	120
제4절 국제인권기준상의 최소구금기준 분석	122
1.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용기준 검토	122
2. 소년분류심사의 국제기준 부합성 검토	125
제5절 외국 소년분류심사 형태 및 국제기준에 따른 시사점	126

| 제5장 |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이승현) 129

제1절 개요	131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32
1.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132
2. 분류심사의 전문화방안	135
3. 위탁소년의 성격에 맞는 예방교육프로그램 실시	137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138
1. 소년분류심사원법 제정논의 검토	138
2. 별도법(가칭 소년분류심사원법)의 제정필요성 검토	139
3. 별도법 제정 시 추가검토사항	139

참고문헌 143

Abstract 147

[부록1] 설문지 151

[부록2] 일본의 소년감별소법 170

표 차례

〈표 2-1〉 전국 소년분류심사 담당직원 현황	21
〈표 2-2〉 전국 소년분류심사 위탁현황	23
〈표 2-3〉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소년분류심사 현황	24
〈표 2-4〉 분류심사 실시기준	27
〈표 2-5〉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현황	28
〈표 2-6〉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현황	29
〈표 2-7〉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프로그램 내용	30
〈표 3-1〉 표본의 특성(1): 위탁소년	36
〈표 3-2〉 표본의 특성(2): 직원	37
〈표 3-3〉 표본의 특성(3): 소년부 판사	38
〈표 3-4〉 조사대상별 주요 조사항목	40
〈표 3-5〉 집단별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경험여부(%)	41
〈표 3-6〉 집단별 부모(보호자)와 관계 인식 차이	43
〈표 3-7〉 집단별 다른 입원생과의 유대 인식 차이	44
〈표 3-8〉 집단별 다른 입원생과 정보교환 경험 차이	45
〈표 3-9〉 집단별 담임교사와 관계 인식 차이	46
〈표 3-10〉 집단별 생활의 어려움 인식 차이	47
〈표 3-11〉 집단별 생활시설의 전반적 만족도 차이(소년)	48
〈표 3-12〉 생활시설별 만족도 비교(%)	49
〈표 3-13〉 집단별 급식 만족도 차이(소년)	50
〈표 3-14〉 집단별 하루일과 만족도 차이	52
〈표 3-15〉 집단별 생활안내 만족도 차이	53
〈표 3-16〉 진단·조사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도움정도(%)	54
〈표 3-17〉 집단별 진단·조사 프로그램 인식 차이	54
〈표 3-18〉 교육·예방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도움정도(%)	55
〈표 3-19〉 집단별 교육·예방 프로그램 인식 차이	56
〈표 3-20〉 집단별 피해자에 대한 인식 차이	58
〈표 3-21〉 집단별 자신에 대한 반성 차이	59
〈표 3-22〉 집단별 퇴원 이후 두려움에 대한 인식 차이	60
〈표 3-23〉 집단별 긍정적 심리·태도변화의 차이	61

〈표 3-24〉 집단별 입원 후 소년분류심사원 생각변화의 차이	62
〈표 3-25〉 평균업무시간(평일)	64
〈표 3-26〉 당직업무 횟수(월 기준)	65
〈표 3-27〉 집단별 업무중요성의 인식 차이	68
〈표 3-28〉 집단별 다른 업무지장의 인식 차이	69
〈표 3-29〉 집단별 별도조직 필요성의 인식 차이	70
〈표 3-30〉 직무만족 및 개선시급성(%)	71
〈표 3-31〉 교육업무 개선사항(개방형 질문)	76
〈표 3-32〉 분류심사업무 개선사항(개방형 질문)	79
〈표 3-33〉 수용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개방형 질문)	80
〈표 3-34〉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태도 비교(평균)	88
〈표 3-35〉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및 역할강화 인식(%)	90
〈표 3-36〉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 방안 (개방형 질문)	93
〈표 4-1〉 일본 소년감별소의 설치현황	98

그림 차례

[그림 2-1] 분류심사 진행절차	26
[그림 3-1]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경험	41
[그림 3-2] 소년원 입원 경험	42
[그림 3-3] 구치소 입소 경험	42
[그림 3-4] 교도소 입소 경험	42
[그림 3-5] 부모(보호자)와 관계 인식	43
[그림 3-6] 다른 입원생과의 유대 인식	44
[그림 3-7] 다른 입원생과의 정보교환 경험	45
[그림 3-8] 담임교사와 관계 인식	46
[그림 3-9] 분류심사원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47
[그림 3-10] 생활시설의 전반적 만족도 비교	48
[그림 3-11] 생활시설별 만족도 비교(평균)	49
[그림 3-12] 급식 만족도	50
[그림 3-13] 급식에서 불만족스러운 점(복수응답)	51
[그림 3-14] 하루일과 만족도	52
[그림 3-15] 생활안내 만족도	53
[그림 3-16] 사건책임의 인식	56
[그림 3-17] 사건의 잘못인정 및 분류심사원 입원에 대한 인식	57
[그림 3-18] 피해자에 대한 인식	58
[그림 3-19] 자신에 대한 반성	59
[그림 3-20] 퇴원 이후 두려움	60
[그림 3-21] 긍정적 심리·태도변화	61
[그림 3-22] 입원 후 소년분류심사원 생각변화	62
[그림 3-23] 하루 기준 업무시간(평일 기준)	63
[그림 3-24] 하루 기준 업무시간(주말 기준)	63
[그림 3-25] 월 기준 당직근무 횟수	64
[그림 3-26] 당직업무	66
[그림 3-27] 이송·호송·소환업무	66
[그림 3-28] 면회업무	67
[그림 3-29] 소년분류심사원 직무 포트폴리오 분석	72

[그림 3-30] 교육업무의 우선순위	73
[그림 3-31] 비행예방교육의 도움정도	74
[그림 3-32]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의 도움정도	74
[그림 3-33] 현재 위탁소년 수 및 적정 위탁소년 수	75
[그림 3-34] 분류심사업무의 우선순위	77
[그림 3-35] 분류심사서 작성활동의 도움정도	77
[그림 3-36] 월평균 분류심사서 작성 수 및 적정 분류심사서 수	78
[그림 3-37] 월 평균 소년사건 처리건수(%)	81
[그림 3-38] 월 평균 분류심사 위탁건수(%)	82
[그림 3-39] 분류심사 위탁 의뢰 기준(복수응답)	82
[그림 3-40] 분류심사서 참고 정도(복수응답)	83
[그림 3-41] 분류심사서의 원칙(복수응답)	84
[그림 3-42] 조사관의 처분의견 제시여부(%)	84
[그림 3-43] 분류심사서의 완성도	85
[그림 3-44] 분류심사원 조사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복수응답)	85
[그림 3-45]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인식	86
[그림 3-46]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태도 비교(평균)	87
[그림 3-47]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이미지 비교	89
[그림 3-48] (가칭)경기분류심사원 설립 필요	91
[그림 3-49] 미결구금형 주장에 대한 의견(N=17, %)	91
[그림 3-50] 쇼크 구금형태 주장에 대한 의견(N=17, %)	91
[그림 4-1] 일본소년심판 및 처우절차	101
[그림 4-2] 소년감별절차도	105
[그림 4-3] 독일의 소년사건처리절차도	113
[그림 4-4] 미국의 소년사법처리절차도	118

국문요약

연구의 필요성

분류심사는 비행초기 소년의 비행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소년의 개별 특성에 적합한 처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년사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1개만 존재하고, 6개의 대행소년원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위탁소년의 과밀화현상이 심각하다. 관할법원의 신설 등으로 위탁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밀화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나 범죄학습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의 현행 운영실태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행소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우 결정을 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실태 및 해외사례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원인에 대한 진단 기능 외에도 처우의 개별화기능, 신병보호 기능, 예방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별도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임무에 관한 사항은 「소년법」에 의해, 처우에 관한 사항은 소년원 처우와 함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1개와 대행소년원 6개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나 의뢰되는 사건의 수에 비하여 분류심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진단업무의 과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분류심사관이 진단업무 외에도 호송업무, 당직업무 등도 함께 병행하고 있어 업무 전체 중 비행진단의 비율이 20-30%에 불과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행진단과 수용, 예방교육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의 경우 특정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관인 소년감별소(少年鑑別所)가 존재하나 비행진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년감별소법(少年鑑別

2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所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감별방법, 구울 및 질서유지방법, 면회·서신교환·전화 등 외부교통방법, 구제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해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비행진단에 중점을 두고 초기진단을 위한 초기면접(intake)과 처우결정을 위한 처분심리(disposition hearing)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비행진단을 위한 일정기간 수용에 중점을 두고 수용을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의 일종으로 보아 엄격한 적용요건을 두고 있으며, 소년법원보조인(Jugendgerichtshilfe)이라는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UN아동권리협약,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을 보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미결구금상태 하에서의 최대한 인권보장 노력을 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 이해관계자 조사결과

이번 연구의 조사대상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7개 위탁대행소년원에 입원한 소년들, 이들을 지도하고 심사하는 직원들, 그리고 전국의 소년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위탁소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실태와 관련해서는 부모(보호자)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높았고, 다른 입원생들과 유대관계는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소년들 간에 교환되는 정보는 주로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적은 편이었다. 담임교사와의 관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분류심사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그리움, 구속된 생활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시설이나 하루일과에 대해서는 절반가량만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상대적으로 샤워실과 화장실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진단·조사프로그램, 교육·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비행예방 및 법교육, 인성교육, 개인상담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소 후 태도 및 인식변화와 관련해서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입원처분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책임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과 부모(보호자)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응답도 매우 높았다. 다만, 퇴원 이후 소년원 처분이나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태도의 측면에서도 미래에 대한 인식, 규칙성, 타인에 대한 배려, 인내심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와 관련해서는 평일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60.5%로 높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비율이 33.3%로 나타났으며, 당직은 월 평균 약 6회로 파악되어,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업무와 이송·호송·소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인력이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0.0%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개선시급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근무환경의 시설적 측면과 시간적 측면, 사회적 인식, 복지의 측면이 중점개선영역에 포함되어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에 대한 보람은 긍정적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할 요소로 파악되었다. 둘째, 교육업무와 관련해서는 생활지도와 수용관리가 중요한 업무로 나타났고, 소년과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비행예방교육이나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적정 위탁소년의 수는 평균 10명 내외로 현재 위탁소년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 교육내용의 통일성과 전문성 역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분류심사업무와 관련해서는 분류심사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과 신상조사, 심리검사 등이 중요한 업무로 나타났고, 분류심사서 작성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교육생활태도 행동관찰과 분류심사관의 심층면담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분류심사관 1명이 작성하는 분류심사서는 월 평균 약 20~30건 정도로 분류심사관이 생각하는 적정 분류심사서는 대략 한 달에 15건 내외로 파악되었다. 분류심사업무의 개선사항은 분류심사서 작성을 위해 타 업무의 경감, 인력확충 및 적정 인원수 유지, 전문심사관의 전문성 제고로 나타났다.

위탁소년, 직원, 소년부 판사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소년부 판사는 소년분류심사원을 비행예방·교육기관으로, 위탁소년은 수용기관으로, 직원은 분류심사·수용기관으로 각각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4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럼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주요한 기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략적 측면에서 향후 소년분류심사원이 다양한 기능에 부족한 자원을 배분하기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정확한 비행진단에 중점을 두면서 예방교육이나 수용은 진단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입법적인 측면에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소년분류심사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광역별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뿐만 아니라 현재의 분류심사원 시설의 소규모화와 대형 소년원의 분류심사기능 폐지 등이 필요하고, 분류심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분류심사를 재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 비행소년의 환경적·개인적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를 통해 비행유발적 환경으로부터 단절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별하고, 저연령 소년에 대하여는 수용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용을 통한 분류심사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둘째 분류심사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행동관찰 및 환경조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한 분류심사에 조사의 핵심을 두도록 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분류심사관의 업무에서 호송 및 당직업무를 제외하고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분류심사관 1인이 비행진단과 분류심사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업무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행초기자인 위탁소년 대상자를 중심으로 재입원 경험여부, 소년원 수용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를 위해서는 입법적 개선도 필요하다. 첫째, 소년분류심사 대상자 선별에서부터 처우에 이르기까지 분류심사의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소년원 수용소년과 통합관리되기 보다는 ‘(가칭) 소년분류심사원법’과 같이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별도 예산관리와 대상자처우가 필요하다. 둘째 분류심사원이 비행진단을 위한 최소한의 수용과 인권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위탁기간 연장시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독일 및 일본과 같이 수용을 위한 위탁사유를 엄격화하고 법적 근거를 법에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서 인정되는 항고권과 같이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하여 분류심사위탁의 경우에도 당사자 및 보호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보장을 위해 소년원 처우와 달리 위탁소년 처우에 관한 관련 사항(예를 들어 분류심사 방법, 보건위생 및 의료지원, 규율 및 질서유지방법, 외부교통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둘 필요가 있겠다.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론

이 승 현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7년 서울소년감별소(현 소년분류심사원) 개청 이후 대구·대전·광주·부산 등 4개 소년감별소가 운영되었으나, 2007년 소년보호기관의 기능조정으로 4개 기관이 폐지되어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개 기관만을 운영 중에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6개 지역은 소년원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최근 소년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비행초기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비행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정교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소년원에서 대행하고 있어 소년분류심사원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자는 2010년 89,776명에서 2013년 91,633명으로 증가하였고,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2007년 이후 소년범죄자 중 전과 3범 이상자의 증가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소년범죄자가 중대범죄자로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행 초기에 원인을 진단하고 소년의 개별특성에 적합한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초기에 범죄를 중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확한 비행원인 진단을 위한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 결과는 법원송부를 통해 소년의 처분 결정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의 처우지침과 지도방향 설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분류심사원에서의 비행원인 진단이 소년의 향후 처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의 중요한 비행진단과 처우 결정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이 1개만 존재함으로 인해 위탁소년의 과밀화 현상이 심각하다.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기관정원이 150명이지만, 2008년 이후 평균 수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일일 수용인원이 250명~300명에 달하고 있다. 위탁소년의 경우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통상 1개월에서 최장 2개월까지 수용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분산수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과밀수용으로 인해 위탁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행성 심화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인권 침해, 범죄학습 등 대규모 집단생활로 인한 부정적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위탁소년과 직원간의 수용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인천가정법원, 2019년 수원 가정법원 등 관할 법원이 신설되면서 서울·경기권 분류심사원의 과밀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소년분류심사 기능 외에도 불구속 송치된 소년에 대한 상담조사(소년법 제2조), 보호자교육(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검사의 결정전 조사(소년법 제49조의2), 위탁소년에 대한 비행예방전문교육과 인성교육 프로그램까지 실시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관이 전국에 74명으로, 분류심사관의 1인 비행진단 적정인원은 0.5명이지만 현재 평균 1.2명을 실시하고 있고, 분류심사 외에 교육기능까지 강화하면서 분류심사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비행진단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소년감별소가 52개에 달하고, 인력도 2013년 기준 1,203명에 이르고 있어 비행소년 진단에 있어 우리나라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분류심사원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는 대행소년원에서 위탁소년에 대한 관리 및 분류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성이 심화되지 않은 위탁소년과 장기간 교정교육을 필요로 하는 보호소년을 동일한 공간에서 처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류심사원에서의 위탁은 일정기간동안 수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결구금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소년원 수용소년이나 소년교도소 수형자와 달리 위탁소년에게 기본적 인권보장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근거법령의 불명확함과 소년원 대체수용으로 인해 구금상 최소 인권기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위탁소년에 대한 처우는 소년원 운영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비행성이 심화되지 않은 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위해서는 소년원 운영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위탁소년에 대한 처우를 구분하고 정확한 비행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자의 정확한 비행진단과 역할을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인권적 처우에 부합하는 최소요건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실태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 비행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우결정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이 갖추어야 할 소년분류심사의 전문화 방안, 인권기준에 적합한 처우조건 마련방안, 위탁소년의 성격에 맞는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강화를 위해 어떠한 사항들을 정비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변화로 인한 역할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과밀 수용과 구금기능의 문제점, 분류심사기능의 전문성 약화, 대행소년원 운영으로 인한 파생문제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점검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의 기관설립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인력구조나 교육내용이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 운영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업무담당직원, 소년부 판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 및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의 이미지, 비행진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방안 등에 대한 각 그룹별 의견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소년분류심사 형태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년분류심사원을 갖고 있는 일본의 소년감별소 운영현황 및 입법형태를 살펴보고, 우리와

유사한 소년분류심사원을 갖고 있진 않지만 소년사법단계에서 분류심사기능을 하고 있는 미국의 초기면접과 처분심리 형태 및 독일의 소년사법보조인제도, 조사를 위한 미결구금 등의 내용을 살펴본다. 국제사회의 구금처우 관련 규정도 함께 검토하면서 인권적 처우방안도 검토한다. 이들 국가의 소년분류심사 형태를 통해 보다 과학적 비행진단과 인권적 처우를 위해 우리나라의 소년분류심사 기능이 어떠한 형태로 변모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장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이 가지는 비행진단, 교육, 수용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로 선행문헌 연구와 외국 소년분류심사 형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및 업무담당직원, 소년부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분석, 관련전문가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8호처분 운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법무부 소년과 협조를 구하여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현황 및 직원배치현황 등 관련 통계를 수집하였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시설형태 등을 점검하였다. 소년분류심사관, 소년부판사, 관련 학계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 및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외국의 소년분류심사 형태에 대한 분석은 비교법적 분석방식을 채택하여 일본의 경우 법무성 관련 사이트 검색과 새롭게 제정된 소년감별소법 내용을 분석하였고, 미국과 독일의 경우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와 외국의 관련 단행본 자료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였다. 인권 관련 국제규약은 해당 규정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소년분류심사 업무담당자 및 소년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위탁소년에 대하여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후 변화를, 소년분류심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에 대한 인식, 시설에 대한 만족도, 교육 및 분류심사 업무에 대한 인식을, 소년부판사를 대상으로는 분류심사 이용현황 및 평가의견을 파악하였다. 이해관계자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능인식 및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위탁소년, 직원, 소년부판사간 소년분류심사원 기능에 대한 인식차를 분석하였다.

국내 소년분류심사 운영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및 외국의 소년분류심사 형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재 역할을 점검하고, 보다 적절한 비행진단 및 처우결정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지에 대하여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2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실태 분석

이 승 현

제2장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실태 분석

제1절 소년분류심사의 의의와 관련법제

1. 소년분류심사의 의의와 기능

가. 소년분류심사의 의의

본래 소년분류심사제도는 비행소년이 처한 가정·학교·사회의 환경적 특성과 비행 소년의 성격·능력·욕구·행동특성 등 개인적 자질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처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¹⁾ 소년의 생활환경 조사 및 각종심리검사, 행동관찰, 보호자 상담, 각종 기록조회 등을 통해 요보호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분류심사²⁾의 핵심이다. 요보호성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을 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수용 및 교육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나. 분류심사의 기능

분류심사원은 소년에 대한 과학적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 네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심리하는데 필요한 소년의 신병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소년부 판사가 위탁결정을 하면 1개월 이내(최장 2개월)에 비행소년을 수용·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기간은 출석일수가 인정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지닌다.

1) 이춘화,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보호 제16호, 2004, 24면.

2) 1995년 소년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분류심사는 ‘감별’이라는 용어로 통용되었다.

둘째,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원인을 규명하고 재비행을 예측 및 진단하는 기능을 한다.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대상소년의 가정·학교·주변 환경 등 환경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요보호성을 과학적으로 진단한다.

셋째,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소년에 대한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상소년이 위탁되는 기간 동안 언어·행동·예절·규범 등 기초적인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강·절도·폭력비행 예방 등의 비행예방 전문교육, 분노조절훈련·감수성훈련·종교지도 등의 인성교육 등을 통해 비행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를 위해 기능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진단결과는 법원에 송부되어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처분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등에서 최선의 처우를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보호자에게 자녀교육 및 사후지도 방법 등을 권고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2. 소년분류심사의 관련법제

우리나라 소년분류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일본과 같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소년분류심사의 임무에 관한 내용은 소년법에서, 소년분류심사 처우에 관한 내용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소년원 처우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소년분류심사의 목적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위탁소년의 비행원인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조사 및 심리자료를 제공하며, 소년원·보호관찰소·보호자에게 지도방향 및 처우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는 분류심사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류심사의 전문성에 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 “분류심사 시에는 심리학교

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 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고 분류심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도 분류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분류심사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서 언급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서는 분류심사 영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분류심사는 ① 신상관계(소년의 인적사항, 학력, 지니고 있는 문제, 비행의 개요, 비행이력, 보호자 및 가족상황, 그밖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② 신체적 측면(소년의 건강상태, 신체 특징, 결함여부 및 병력 등의 진단), ③ 심리적 측면(소년의 지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성격의 특징, 신경증정신병 등 정신기능의 장애여부, 적응 및 욕구, 자기개선 의지 등의 측정), ④ 환경적 측면(출생 이후 현재까지 소년의 가정·학교·사회생활 조사), ⑤ 행동특징(수영생활 및 검사 면접할 때 등 소년이 처한 환경조건에 반응하는 특이사항 및 경향의 관찰), ⑥ 그 밖의 참고사항을 종합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분류심사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서 다루고 있다. 분류심사는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 관찰, 자기 기록 검토,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동규칙 제48조 제1항). 행동관찰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하고 그 결과가 분류심사에 유용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규칙 제50조). 그리고 분류심사는 ‘일반분류심사’와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게 진행되는 ‘특수분류검사’로 구분하고 있다(동규칙 제48조 제2항).

분류심사 결과 통지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분류심사 또는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각각 법원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고, 소년이 보호처분결정을 받으며 소년의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등을 지체 없이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그밖에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소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 및 인력현황 검토

1.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현황

소년분류심사원은 1977년 소년감별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칭되었고, 1995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1년 법무부가 소년범 불구속 수사원칙을 세움에 따라 수용인원이 감소함을 이유로 2005년부터 소년보호기관(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직원 정원도 감축되었다. 2000년대 초까지 5개였던 소년분류심사원이 2003년 대전소년분류심사원 폐지, 2005년 대구소년분류심사원 폐지, 2007년 부산과 광주심사원 폐지를 거치면서, 이후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다른 기관으로 개편되었고, 전국 6개 소년원(부산, 대구, 춘천, 제주, 광주, 대전)의 경우 위탁소년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비행초기에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비행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정교화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소년분류심사기능을 6개의 소년원에서 대행하고 있어 소년분류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제 개편 과정에서 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이 감소함에 따라 분류심사원이 1개로 축소되었으나, 실제 분류심사업무가 감소된 것은 아니다. 이전의 분류심사업무가 소년원과 비행예방센터로 이관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분류심사 업무량과 위탁소년 인원을 감안할 때, 전문적인 분류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소년분류심사원의 인력현황

가. 분류심사원의 직원선발 및 배치현황

소년보호기관의 축소와 함께 소년분류심사 업무 담당직원의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2007년 81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던 반면에, 2014년에는 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표 2-1〉 전국 소년분류심사 담당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직원 인원					
	서울(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2006	75	44 (부산심)	17	41 (광주심)	15 (대전의로 분류과)	12
2007	81	18	20	19	20	18
2008	81	18	20	19	20	18
2009	78	18	19	18	20	18
2010	78	18	19	18	20	18
2011	81	21	19	17	20	17
2012	75	21	17	17	20	17
2013	73	21	16	16	20	14
2014	74	21	16	17	20	14
2015.10.	77	23	18	18	21	14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통계자료, 2015.

주1)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소년원의 직원인원은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 내 '분류심사과' 직원 정원 인원을 의미함

주2) 제주소년원은 소규모 기준으로 별도로 분류심사과 직제가 없으며, 교무과에서 위탁·보호소년의 교육·생활 지도 및 분류심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분류심사 담당직원의 인원을 별도로 산출하기 어려움

나. 분류심사원의 직원 업무 현황

2014년 3,055명에 대한 분류심사를 분류심사관 10명이 담당하였는데, 이는 1인당 연간 305.5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무부 내부진단에 따르면 1일 비행진단 적정인원은 0.5명이지만, 2014년 현재 분류심사관 1인이 1일 평균 1.2건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진단업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행원인을 진단하는 분류심사절차의 진행과정을 보면, 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이 위탁되면 건강진단, 신상조사, 심리검사(2일), 환경조사, 행동관찰(3주간 담임교사 관찰결과), 심층상담을 통해 분류심사서를 작성한다. 실제 분류심사는 분류심사 관련자료 수집(180분), 법원심리 참여(360분), 해피콜(35분), 분류심사(560분), 상담조사(480분), 심리검사(집단(390분)·개별(285분)), 자료 분석 과정을 거쳐 분류심사서 작성하고 있다. 전국 소년보호기관 업무량 및 직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류심사서를

작성하는데 평균 2,290분(4-5일)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³⁾ 그러나 이런 업무 외에 면회, 호송 등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인력부족현상은 직무분석 내용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서울분류심사원의 경우 업무량에 비례한 소요인력을 추산하면 122.3명이 필요하나, 현재 74명의 인력만이 배치되어 있어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대행소년원의 분류보호과 인력을 보더라도 부산소년원은 24.3명, 광주소년원은 14.8명, 대구소년원은 9.42명의 인력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⁴⁾

인력부족 현상은 집중인력 투입이 필요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 더욱 더 문제시된다. 가령 교도소의 경우 호송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별도 호송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기일이 동시에 열리는 수요일의 경우 업무가 폭주한다. 1명 호송 시 보통 4명이 동행하기 때문에 서울·경기권의 경우 4개 법원 11개 단독심리에 심리호송을 전담할 경우 대다수의 직원이 호송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분류심사관의 업무전문성

분류심사관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심사관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분류심사 업무를 목적으로 특별 채용된 사람,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분류심사관은 분류심사 특채, 조사관 자격 취득자, 전공자, 전문자격 취득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등을 통해 선발된다. 구체적으로 조사관, 교사(상담),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범죄심리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자가 분류심사관으로 임명되어 분류심사서를 작성하므로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3)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국 소년보호기관 업무량 및 직무분석, 2014.6, 83면.

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국 소년보호기관 업무량 및 직무분석, 2014.6, 8-9면.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 결과는 소년의 처분 결정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분류심사원에서의 비행원인 진단이 소년의 향후 처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직원 1명이 1.2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고 전문성에 대한 업무 평가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분류심사관들은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다.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보수, 근무환경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현황 검토

가. 위탁소년의 수용현황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현황을 보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수도권 내 유일한 위탁소년 수용시설로서 정원이 150명인 기관이다. 2006년에 일일 평균 109명을 수용하고 있었으나, 수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3년 247명에 이르렀다. 2014년 세월호의 여파, 2015년 상반기 메르스의 영향으로 수용인원이 다소 줄기는 하였으나 2015년 8월 현재 218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처럼 소년보호기관과 담당직원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보호처분 연령 인하와 학교폭력 등으로 위탁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표 2-2〉 전국 소년분류심사 위탁현황

(단위: 명)

구분	일일평균 위탁인원						
	서울(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2006	109	40	26	25	17	11	1
2007	129	44	21	30	27	5	3
2008	162	64	28	27	38	6	3
2009	192	64	36	38	47	8	2
2010	181	76	35	49	42	14	2
2011	210	100	34	42	34	16	1
2012	240	95	30	43	24	18	1
2013	247	84	35	50	29	14	4

24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구분	일일평균 위탁인원						
	서울(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2014	216	89	34	39	26	14	4
2015.9.	218	88	33	44	30	11	4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통계자료, 2015.

※ 부산소년원 위탁은 (구)부산소년분류심사원 인원 포함, 광주소년원 위탁은 (구)광주소년분류심사원 인원 포함, 대전소년원 위탁은 (구)대덕소년원 위탁, (구)대전의료소년원 위탁 인원 포함함

〈표 2-3〉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소년분류심사 현황

(단위: 명)

연도	분류심사 인원
2007	2,066
2008	2,486
2009	2,846
2010	2,691
2011	3,068
2012	3,274
2013	3,556
2014	3,055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통계자료, 2015.

나. 과밀수용 현상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1개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0평의 수용실에 많게는 30명씩 수용되는 사례도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⁵⁾ 수용과밀 현상은 수용생활의 스트레스와 비행성 심화로 인해 상습화된 문제행동, 집단생활체제에 따른 문제행동의 학습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불법집단행동, 기물파손, 직원모욕, 소년간 폭행사과 등의 수용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특히, 위탁소년의 경우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통상 4주, 최장 2개월까지 수용되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 분산수용하기도 어렵다.

5) 조선일보, “점통같은 10평 방에 소년범 30명...사고치고 독방 가고파”, 2013년 8월 17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6/2013081601744.html, 2015년 10월 7일 최종검색).

다. 미결구금적 성격의 위탁소년 수용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위탁은 보호처분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인성 및 환경조사를 위한 제도이므로 미결구금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소년에 대한 감호는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보호하는 기능인 반면에 미결구금은 단순히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만 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므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헌법 제12조의 구속과는 전혀 별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⁶⁾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 대상소년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미결구금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감호에는 소년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구금의 기능도 포함되고,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구속과 다름없다. 소년법 제61조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구속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⁷⁾ 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소년보호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이 아닌 처분확정기관인 소년원에서 위탁소년을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⁸⁾

제4절 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진단 및 조사현황 검토

소년부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나 그밖에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소년법 제12조). 이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는 소년의 처분결정의 중요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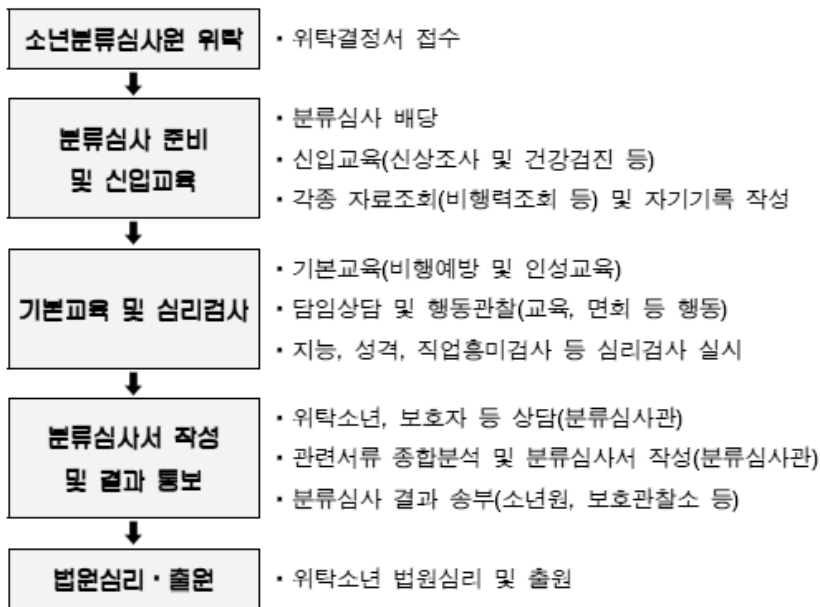
6) 원혜옥, 소년범죄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I:-미결구금제도(소년분류심사원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15호, 2002, 11면.

7) 오영근/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92면.

8) 원혜옥/강경래/정희철, 인권친화적 분류심사제도 및 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개선방안, 법무부 인권국, 2008, 13면.

1. 분류심사에서의 비행진단 절차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의 진행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법원으로부터 대상소년이 위탁되면 1주간의 신입교육과 관련자료 조회과정을 거친다. 이후 2주 동안 비행예방교육(학교폭력, 성비행, 강절도 예방교육), 심리치료(영화심리치료, 충동조절 및 분노조절훈련, 감수성훈련, 미술치료 등), 특별활동(독서활동,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정서순화, 체육활동) 등 기본교육에 참여한 결과와 담임교사의 행동관찰, 개별 및 집단 심리검사 결과를 취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류심사관은 위탁소년과 보호자를 상담하고, 심리검사 결과, 상담결과, 피해자와의 화해시도여부, 생활태도, 현지조사결과 등 관련서류를 종합 분석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한다.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법원 판사에게 송부된다.



[그림 2-1] 분류심사 진행절차

출처: 법무부 소년과 내부회의자료(2015).

2. 분류심사의 비행진단방법

분류심사는 신상관계(소년의 인적사항, 학력, 지니고 있는 문제, 비행의 개요, 비행 이력, 보호자 및 가족상황, 그밖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신체적 측면(소년의 건강상태, 신체특징, 결함여부 및 병력의 진단), 심리적 측면(소년의 지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성격의 특징, 신경증·정신병 등 정신기능의 장애여부, 적응 및 욕구, 자기개선의 의지 등의 측정), 환경적 측면(출생 이후 현재까지 소년의 가정·학교·사회생활의 조사), 행동특징(수용생활 및 검사 면접할 때 등 소년이 처한 환경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특이사항 및 경향의 관찰),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종합 분석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표 2-4〉 분류심사 실시기준

구분		일반분류심사	특수분류심사
대상		전체소년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단순한 자	상습비행자 성격, 행동이상자 저능아 신체기능이상자 마약류 또는 유해화학물질 남용자 그밖에 분류심사에서 이탈된 자
영역	신체	신체계측 건강진단 신체특징 신체결함	신체기능 우열 및 이상
	심리	지능정도 적성 성격특징	성격장애 정신질환 뇌기능장애
	환경	생육관계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생활	생육관계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생활
	행동	특징 경향 부적응행동	이상행동
방법		신체의학적 진찰법 집단심리검사법 면접조사법 행동관찰법 자료조회법	정신의학적 진단법 개별심리검사법 현지조사법

분류심사는 다각적 측면에서의 요보호성 판별을 위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기 기록 검토,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분류심사는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하는데, 일반분류심사는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비교적 단순한 소년에게 면접조사, 신체의학적인 진찰, 집단검사,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행동관찰 등을 주로 실시하는 분류심사이고, 특수분류심사는 일반분류심사 결과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현지조사 등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를 의미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3항).

〈표 2-5〉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현황

(단위 : 명,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구분								
수 용 분 류 심 사	계	5,198 (100)	5,627 (100)	5,723 (100)	6,007 (100)	5,435 (100)	6,357 (100)	5,543 (100)
	일반 분류 심사	3,796 (73.0)	3,729 (66.3)	4,380 (76.5)	4,634 (77.1)	4,008 (73.7)	4,160 (65.4)	3,467 (62.5)
	특수 분류 심사	1,402 (27.0)	1,898 (33.7)	1,343 (23.5)	1,373 (22.9)	1,427 (26.3)	2,197 (34.6)	2,076 (37.5)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3. 분류심사에서의 조사 현황

분류심사는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심사,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유치된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심사, 전문가진단의 일환으로 법원 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심사, 소년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심사로 구분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조사형태는 대부분 위탁심사가 중심을 이룬다. 위탁심사는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대행소년원에 수용된 상태에서 받는 심사이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이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음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상소년이 출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상담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상담조사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뿐만 아니라 대행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체 법원의 보호처분 대상자 가운데 35~40%정도는 분류심사를 받고 있고, 이중 절반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는 위탁심사를 받았다.

〈표 2-6〉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현황

(단위 : 명, %)

구 분 연 도	법원보호처분	합계	위탁심사	상담조사	조사비율
2008	30,222	11,150	5,198	5,952	36.9
2009	35,819	10,733	5,627	5,106	30.0
2010	32,416	11,024	5,723	5,301	34.0
2011	35,072	11,303	6,007	5,296	32.2
2012	36,150	10,583	5,435	5,148	29.3
2013	31,952	10,739	6,357	4,382	33.6
2014	24,529	9,804	5,543	4,261	40.0

주 : 상담조사 인원에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상담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4)

4. 분류심사의 현실

분류심사관이 실제로 1주일동안 분류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양은 보통 7-8개, 많으면 11-12개까지도 작성하게 된다. 여기에 사후지도, 법원 심리 참관 등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늘 촉박하게 아이들과의 만남을 갖거나 1번 수용되었을 때 평균 1번 정도 만나게 된다. 자료를 파악하거나 아이들과의 만남을 갖는 것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때가 있기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

분류심사서는 최근에 간소화 되었다고 하지만 비행정도가 가벼운 케이스도 보통 7시간이 걸리고, 비행력이 많거나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 1일 이상이 걸릴 때도 있다.

제5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인성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실태 검토

위탁소년이 수용된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4주 동안의 시간을 수용되어 행동관찰과 신병보전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소년의 보호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⁹⁾ 이에 따라 최근 소년분류심사 기능 중의 하나로, 조사와 진단 외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과 분류심사가 이루어지면서 비행예방교육과 인성교육 등이 병행함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 비행소년이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표 2-7〉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프로그램 내용

기관	구 분	자체 운영프로그램	외부강사 운영프로그램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절도 예방교육 성비행 예방교육	분노조절훈련 감수성 훈련 청소년성장훈련 미술치료 성폭력가해자치료
부산소년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절도 예방교육 성비행 예방교육 인터넷 중독예방교육 법교육	미술치료 독서치료
대구소년원		강절도 예방교육 성비행 예방교육	음악치료 미술치료
광주소녀원		강절도 예방교육 성비행 예방교육	음악치료 미술치료
춘천소년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절도 예방교육 성비행 예방교육	

출처: 법무부 소년과, 2014년도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 2014, 25-26면.

9) 이춘화, “소년사건의 조사제도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이한교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0, 573면.

실제로 위탁소년은 이후 소년원에 수용되기도 하는데, 이때 이미 분류심사 단계에서 받은 비행예방교육과 소년원에서의 교육이 동일하게 느껴져 교육의 차별성과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탁대상에 따른 교육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년분류심사원 재입원 경험여부, 소년원 수용경험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인력과 콘텐츠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3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소년분류심사원 이해관계자 조사결과

박 성 훈

제3장

소년분류심사원 이해관계자 조사결과

제1절 조사의 개요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번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7개 위탁대행소년원에 입원한 소년들, 이들을 지도하고 심사하는 직원들, 그리고 전국의 소년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법무부 소년과의 협조를 얻어 2015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수는 약 380명으로 파악되었고,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약 120명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진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각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 조사협조를 구하고,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각 기관에서는 전달된 설문지를 위탁소년 및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고 이를 다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발송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고, 회수된 설문지는 에디팅, 코딩, 데이터클리닝의 과정을 거쳤다.

판사의 경우에도 법무부 소년분류심사원 및 비행예방센터의 협조를 얻어 전국 소년부 판사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전달한 후, 작성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2. 표본의 특성

이번 연구에 참여한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은 모두 325명으로 성별로는 남자 소년 80.3%, 여자소년 19.7%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만12~15세(초·중등학교) 소년 29.6%, 만16~18세(고등학교) 소년 62.2%, 만19세 이상은 8.2%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년분류심사원에는 만16~18세 사이의 남자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별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137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 소년원 84명(25.8%), 광주 41명(12.6%), 대구 27명(8.3%), 대전 22명(6.8%), 춘천 12명(3.7%), 제주 2명(0.6%)로 나타났다.¹⁰⁾

위탁소년 가운데 이전에 분류심사원에 들어온 적이 있는 소년은 조사대상 중 38.2% 인 반면, 이번에 처음 분류심사원에 들어온 소년은 61.8%로 확인되었다.

〈표 3-1〉 표본의 특성(1): 위탁소년

구분		빈도(명)	빈도(%)
전체		325	100.0
성별	남성	261	80.3
	여성	64	19.7
연령	만12~15세	94	29.6
	만16~18세	198	62.2
	만19세 이상	26	8.2
기관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37	42.2
	부산소년원	84	25.8
	대구소년원	27	8.3
	광주소년원	41	12.6
	대전소년원	22	6.8
	춘천소년원	12	3.7
	제주소년원	2	0.6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123	38.2
	없음	199	61.8

이번 조사에 참여한 직원은 모두 117명으로 현재 직원이 약 120명 정도라고 볼 때, 대부분의 직원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 직원이 71.8%, 여자 직원이 28.2%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 13.7%, 30대 34.2%, 40대 38.4%, 50대 13.7%로 조사되었다.

10) 이러한 수치는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위탁소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입원해 수용되어 있는 실제 위탁소년의 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관별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46명(39.3%), 부산소년원 14명(12.0%), 대구소년원 12명(10.3%), 광주소년원 14명(12.0%), 대전소년원 15명(12.8%), 춘천소년원 10명(8.5%), 제주소년원 6명(5.1%)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6급 이상이 14.3%, 7급 34.8%, 8급 24.1%, 9급 26.8%로 나타났고, 근무기간별로는 5년 미만 31.5%, 5~10년 미만 11.7%, 10~20년 미만 31.5%, 20년 이상은 25.3%로 조사되었다.

〈표 3-2〉 표본의 특성(2): 직원

구분		빈도(명)	빈도(%)
전체		117	100.0
성별	남성	84	71.8
	여성	33	28.2
연령별	20대	16	13.7
	30대	40	34.2
	40대	45	38.4
	50대	16	13.7
기관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46	39.3
	부산소년원	14	12.0
	대구소년원	12	10.3
	광주소년원	14	12.0
	대전소년원	15	12.8
	춘천소년원	10	8.5
	제주소년원	6	5.1
직급별	6급 이상	16	14.3
	7급	39	34.8
	8급	27	24.1
	9급	30	26.8
근무기간별	5년 미만	35	31.5
	10년 미만	13	11.7
	20년 미만	35	31.5
	20년 이상	28.0	25.3

소년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 중 이번 연구에 참여한 판사는 모두 17명으로, 성별로는 남성 판사가 9명(52.9%), 여성 판사가 8명(47.1%)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 판사가 5명(29.4%), 40대 판사가 10명(58.8%), 50대 판사가 2명(11.8%)으로 조사되었다.

판사를 지낸 경력별로는 10년 이하가 8명(47.1%), 경력 11년 이상의 판사가 9명(52.9%)이었고, 전체 판사경력 중에서 소년사건을 맡은 지 1년 미만인 판사는 10명(58.8%), 1년 이상인 판사는 7명(41.2%)으로 나타났다.

〈표 3-3〉 표본의 특성(3): 소년부 판사

구분		빈도(명)	빈도(%)
전체		17	100.0
성별	남성	9	52.9
	여성	8	47.1
연령별	30대	5	29.4
	40대	10	58.8
	50대	2	11.8
근무경력별	10년 이하	8	47.1
	11년 이상	9	52.9
소년사건경력별	1년 미만	10	58.8
	1년 이상	7	41.2

3. 주요 조사항목

설문항목은 연구진이 이번 연구의 목적에 맞게 초안을 작성한 후 법무부 소년과와 협의를 거쳐 용어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최종 설문을 작성하였다.

위탁소년의 경우에는 크게 형사사법기관과의 접촉경험, 현재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시설에 대한 경험, 분류심사원에서 경험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분류심사원에 들어온 이후 자신이나 사건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질문하였다.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당직시간, 업무만족 및 개선시급성 등 직무와 관련한 인식, 직원들이 느끼는 위탁소년의 생활시설에 대한 만족정도, 교육업무 및 분류심사 업무와 관련한 인식 등을 질문하였다.

판사들에게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내용과 현재 분류심사원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생각 등을 질문하였다.

세 집단에 공통된 질문으로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및 어의척도 등을 활용하여 현재 분류심사원에 대한 이미지, 분류심사원의 핵심기능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직원과 판사를 대상으로는 분류심사원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관한 문항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표 3-4〉 조사대상별 주요 조사항목

위탁		직원		소년부 판사
형사사법기관 집중체험	분류심사원 경험 및 회수	분류심사원 직무인식	근무 및 당직시간 업무 만족도 업무 개선시급성 당직업무 이송·호송·소환업무 면회업무 시설만족도 급식만족도 위탁소년 교육업무 업무담당 여부 비행예방교육 활동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 위탁소년 수 적정 위탁소년 수 교육업무 개선점 분류심사업무	평균소년 사건 분류심사 위탁의뢰 위탁의뢰 시 기준 분류심사서 참고 정도 분류심사서가 지녀야 할 원칙 처분의견 제시에 대한 인식 분류심사서의 완성도 분류심사 조사업무의 개선점 분류심사원의 비행예방 도움정도 (가칭)경기분류심사원 설립에 대한 인식 미결구금형에 대한 인식 소크 구금형태의 활용에 대한 인식 소년분류심사원 이미지 분류심사원 핵심기능 역할강화 및 확대 방안
	분류심사원 이용경험			
	분류심사원 이용경험			
	분류심사원 이용경험			
분류심사원 프로그램	분류심사원 이용경험	분류심사원 이용인식 교육업무관련 (교육담당)	분류심사업무 관련	분류심사업무 관련
	분류심사원 이용경험			
	분류심사원 이용경험			
	분류심사원 이용경험			
분류심사원 생활이후 인식변화	분류심사원 생활이후 인식변화	분류심사업무관련 (분류심사담당)	분류심사업무 관련	분류심사업무 관련
	분류심사원 생활이후 인식변화			
	분류심사원 생활이후 인식변화			
	분류심사원 생활이후 인식변화			
분류심사원 이미지/개선안	분류심사원 이미지/개선안	분류심사업무 관련	분류심사업무 관련	분류심사업무 관련
	분류심사원 이미지/개선안			
	분류심사원 이미지/개선안			
	분류심사원 이미지/개선안			

제2절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경험실태 및 인식

1. 형사사법기관 접촉 경험

가.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경험

이번 조사에 참여한 소년들 중 분류심사원에 처음 입원한 소년의 비율은 61.8%(199명)로 이전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38.2%, 123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년의 경우 분류심사원 입원경험이 평균 2.5회로 파악되었다.



[그림 3-1]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경험

소년분류심사원의 입원경험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여성(25.4%)보다는 남성(41.3%)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입원경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집단별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경험여부(%)

구분		사례수	처음이다	경험있다	계	χ^2 값
전체		(325)	61.8	38.2	100.0	
성별	남성	(261)	58.7	41.3	100.0	5.44*
	여성	(64)	74.6	25.4	100.0	
연령별	만12-15세	(94)	69.1	30.9	100.0	10.40**
	만16-18세	(198)	61.9	38.1	100.0	
	만19세 이상	(26)	33.3	6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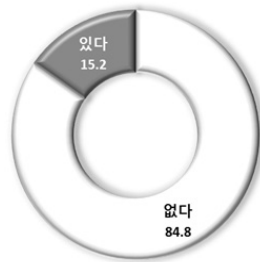
*p<0.05 **p<0.01

나. 기타 보호·교정시설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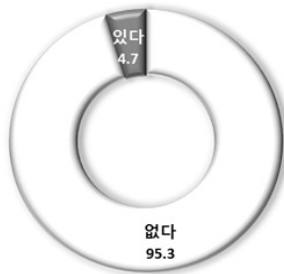
소년원, 구치소, 교도소 등 기타 보호·교정시설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년원 경험이 있는 비율은 조사대상 중 12.1%(38명), 구치소 경험이 있는 비율은 15.2%(48명)로 나타났으며, 교도소 경험이 있는 비율도 4.7%(15명)로 나타났다.



[그림 3-2] 소년원 입원 경험



[그림 3-3] 구치소 입소 경험



[그림 3-4] 교도소 입소 경험

기타 보호·교정시설의 경험자들 가운데 소년원 경험은 평균 1.3회, 구치소와 교도소 경험은 모두 평균 1.2회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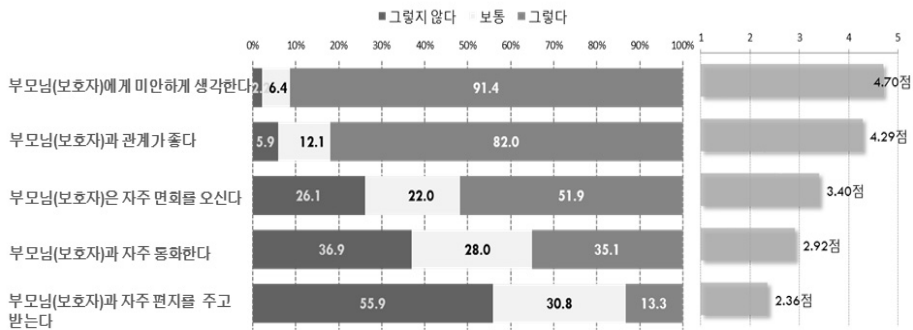
2. 생활 및 시설에 대한 만족

가. 부모(보호자)와 관계 인식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온 후 부모 혹은 보호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결과, 대체로 부모(보호자)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또는 보호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91.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또는 보호자)와 관계가 좋다’(82.0%)는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부모(보호자)의 잦은 면회(51.9%)는 응답자의 절반정도에 그쳤고, 부모(보호자)와 통화(35.1%) 혹은 편지교환(13.3%)과 같은 구체적인 관계회복을 위한 행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부모(보호자)와 관계 인식

부모(보호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문항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심사원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이전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소년(3.41)에 비해 처음 입원한 소년(3.59)일수록 부모(보호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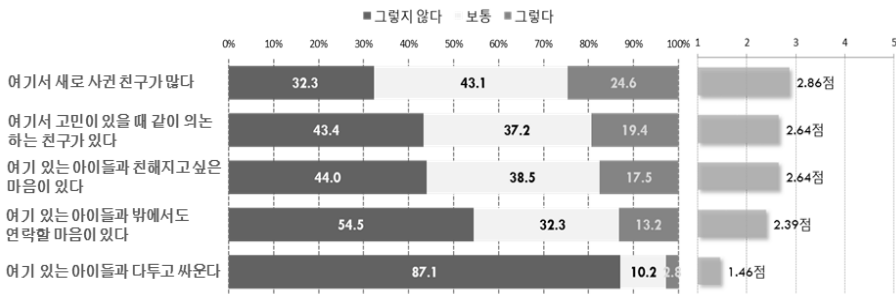
〈표 3-6〉 집단별 부모(보호자)와 관계 인식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3.41	0.795	-2.22*
	없음	3.59	0.678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3.52	0.743	-0.09
	타지역분류심사원	3.53	0.716	

*p<0.05 **p<0.01

나. 다른 입원생과 관계 인식

다른 입원생과 얼마나 유대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새로 사귄 친구가 많다’는 응답이 24.6%, ‘고민이 있을 때 의논하는 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19.4%,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응답이 17.5%, ‘밖에서도 연락할 마음이 있다’는 응답이 13.2%로 나타나, 우려했던 것과 같이 분류심사원 내에서 새로운 유대가 잘 형성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들 간에 ‘다투고 싸운다’는 응답도 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6] 다른 입원생과의 유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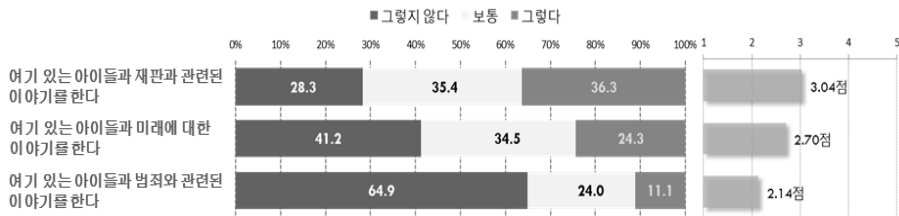
다른 입원생과의 유대와 관련된 문항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심사원 경험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이전에 분류심사원을 경험한 소년(2.94)보다 이번에 처음 입원한 소년(3.13)에서 유대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7〉 집단별 다른 입원생과의 유대 인식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2.94	0.645	-2.36*
	없음	3.13	0.712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3.04	0.650	-0.19
	타지역분류심사원	3.06	0.729	

*p<0.05 **p<0.01

입원 소년들 간에 어떤 정보가 주로 교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주로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24.3%)나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11.1%)를 나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림 3-7] 다른 입원생과의 정보교환 경험

이러한 정보교환 정도를 분류심사원 경험여부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심사원 경험이었을수록 정보교환의 정도가 다소 높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게 나타났다. 반면에, 소속기관별로 검증한 결과에서는 서울분류심사원 소년들 간의 정보교환 정도가 타 지역의 분류심사원보다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입원생의 수가 더 많아서 정보교환도 그만큼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3-8〉 집단별 다른 입원생과 정보교환 경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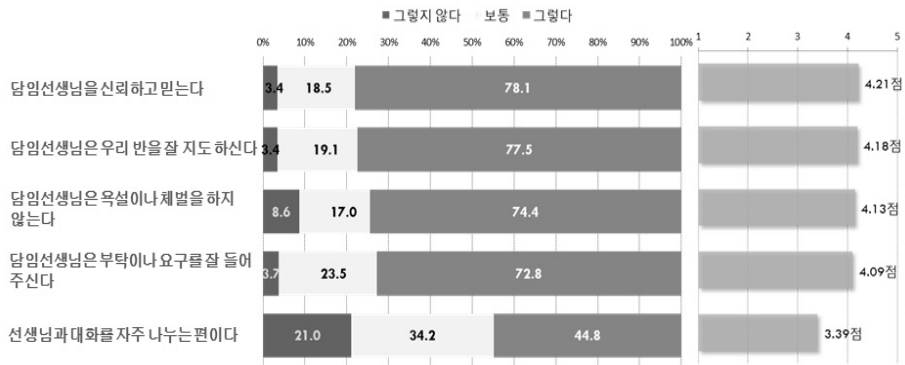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2.60	0.850	-0.45
	없음	2.65	0.913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2.81	0.822	3.18**
	타지역분류심사원	2.50	0.915	

*p<0.05 **p<0.01

다. 담임교사와 관계 인식

담임교사와의 관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나 ‘지도’에 대해 각각 78.1%, 77.5%가 동의를 나타냈고, ‘욕설이나

체벌’, ‘부탁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74.4%, 72.8%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담임교사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에 대해서는 44.8%만 동의를 나타내, 담임교사와 소년들 간 대화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 담임교사와 관계 인식

담임교사와의 관계 역시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심사원 경험여부나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9〉 집단별 담임교사와 관계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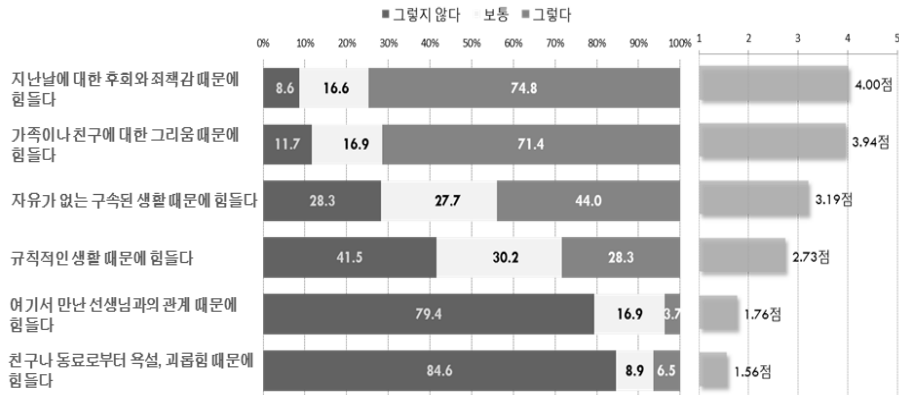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4.07	0.800	1.44
	없음	3.94	0.766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4.04	0.733	0.80
	타지역분류심사원	3.97	0.812	

*p<0.05 **p<0.01

라. 분류심사원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에 있어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74.8%가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힘들다’고 응답하였고, 71.4%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자유가 없는 구속된 생활'(44.0%), '규칙적인 생활'(28.3%) 등 규율이나 구속으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나 가족/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선생님'이나 '친구·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응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9] 분류심사원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분류심사원 경험여부나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분류심사원 경험이 없는 소년일수록, 서울분류심사원의 소년일수록 다소 생활에 어려움 정도가 높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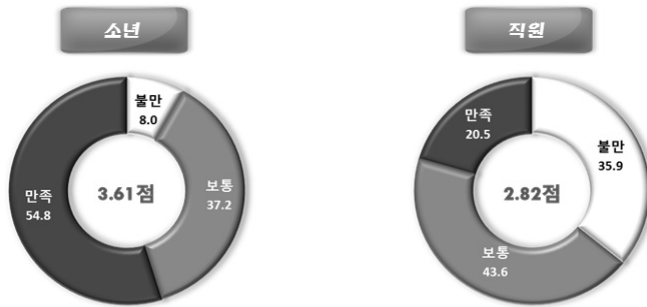
〈표 3-10〉 집단별 생활의 어려움 인식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2.81	0.685	-0.99
	없음	2.90	0.727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2.94	0.699	1.67
	타지역분류심사원	2.81	0.712	

*p<0.05 **p<0.01

마. 생활시설 만족도

식당, 면회실, 교실 등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는 동안 이용하게 되는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61점(5점 기준)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4.8%로 조사되어 절반가량은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직원들이 느끼는 소년들의 시설에 대한 만족수준은 2.82점으로, 소년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원은 20.5%, 불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35.9%로 대체로 불만족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그림 3-10] 생활시설의 전반적 만족도 비교

이를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및 소속기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이전에 분류심사원 경험이 있는 소년(3.46)일수록 이번에 처음 입원한 소년(3.70)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는 타지역에 있는 분류심사원 소년(3.71)에 비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소년(3.47)일수록 생활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과밀수용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물리적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3-11〉 집단별 생활시설의 전반적 만족도 차이(소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3.46	0.899	-2.48*
	없음	3.70	0.818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3.47	0.816	-2.45*
	타지역분류심사원	3.71	0.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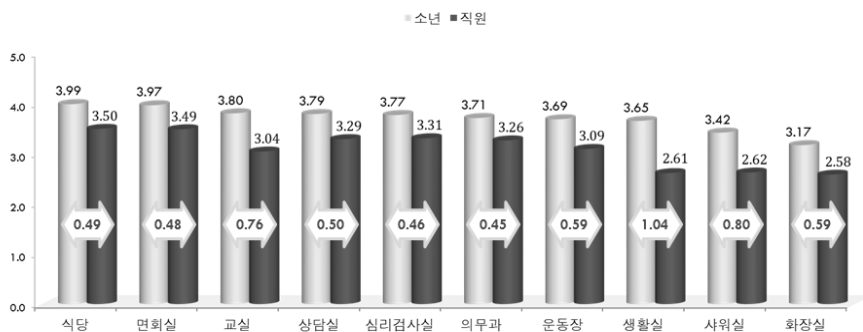
*p<0.05 **p<0.01

생활시설별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년의 경우 식당(3.99)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면회실(3.97), 교실(3.80), 상담실(3.79), 심리검사실(3.77), 의무과(3.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불만이 높은 시설로는 화장실(3.17), 샤워실(3.42)로 나타나고 있어, 생리·위생시설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2〉 생활시설별 만족도 비교(%)

구분	소년				직원			
	불만	보통	만족	평균(점)	불만	보통	만족	평균(점)
식당	2.8	23.8	73.4	3.99	6.8	40.2	53.0	3.50
면회실	3.4	27.8	68.8	3.97	8.5	36.8	54.7	3.49
교실(학과장)	3.4	34.1	62.5	3.80	25.9	39.6	34.5	3.04
상담실(분류심사관실)	2.8	36.3	60.9	3.79	13.7	42.7	43.6	3.29
심리검사실	3.2	37.9	58.9	3.77	11.1	48.7	40.2	3.31
의무과	11.4	27.6	61.0	3.71	14.5	47.9	37.6	3.26
운동장	9.6	30.5	59.9	3.69	26.5	36.7	36.8	3.09
생활실(호실)	8.6	34.3	57.1	3.65	49.2	31.0	19.8	2.61
샤워실	16.1	39.8	44.1	3.42	45.3	34.2	20.5	2.62
화장실	28.4	33.3	38.3	3.17	47.9	31.6	20.5	2.58

직원들이 느끼는 소년들의 생활시설에 대한 만족에서도 식당(3.50)과 면회실(3.49)이 높기는 하나 생활시설별로 다소 차이가 엿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실(3.04)과 생활실(2.61)에서 소년들과 만족도의 인식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직원들의 경우 소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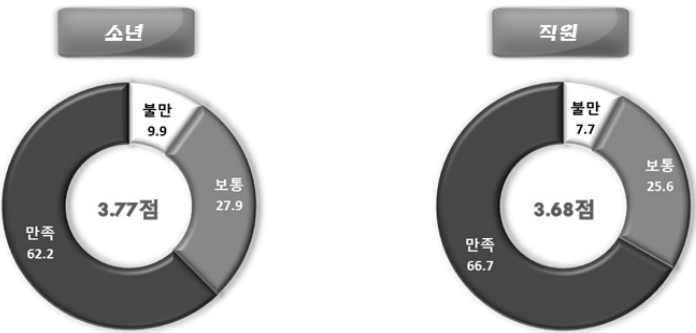


[그림 3-11] 생활시설별 만족도 비교(평균)

그러나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샤워실(2.62)과 화장실(2.58)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아, 두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바. 급식 만족도

급식에 대해서는 소년(62.2%)과 직원(66.7%)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집단 간 인식차이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급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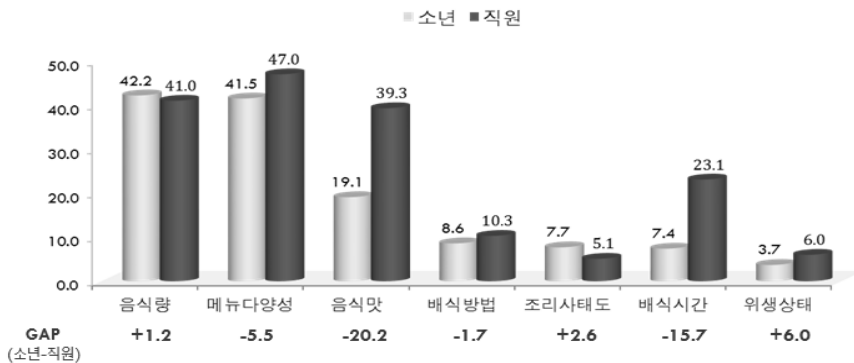
소년의 경우 분류심사원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에 경험이 있는 소년(3.59)에 비해 처음 입원한 소년(3.86)일수록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13〉 집단별 급식 만족도 차이(소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3.59	0.994	-2.36*
	없음	3.86	1.018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3.72	0.959	-0.74
	타지역분류심사원	3.80	1.059	

*p<0.05 **p<0.01

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급식의 어떠한 측면이 불만족스러운지를 확인한 결과, ‘음식의 양’에 대한 불만이 4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메뉴의 다양성’(41.5%)을 지적하였다. ‘음식의 맛’, ‘배식의 방법’, ‘조리사의 태도’ 등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급식에서 불만족스러운 점(복수응답)

반면, 직원의 경우 급식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메뉴의 다양성’(47.0%)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음식의 양’(41.0%), ‘음식의 맛’(39.3%), ‘배식시간’(23.1%) 순으로 불만사항이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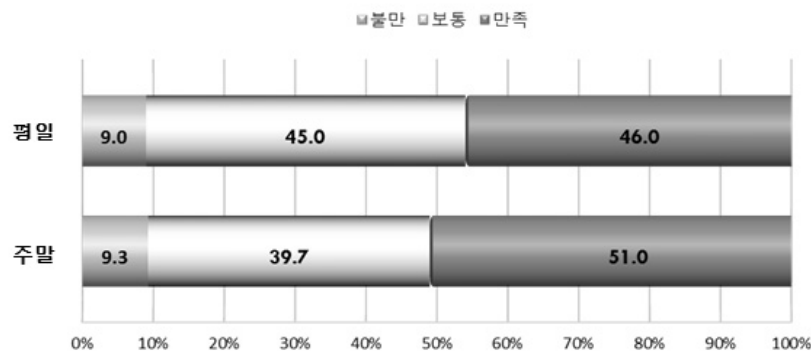
이를 통해 볼 때, 급식의 경우 대체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음식의 양과 메뉴의 다양성 측면에서 다소 불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1식 당 급식재료비가 1,666원(1일 기준 4,997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는 일반학교 급식재료비(1식 기준 2,945원)와 비교할 때, 약 56.3%에 불과한 수준으로¹¹⁾ 급식재료비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음식의 양이나 메뉴의 다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11)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내부자료 인용.

3. 프로그램 만족

가. 하루일과 만족도

하루일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평일일과(46.0%)보다는 주말일과(51.0%)에 대한 만족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소년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비율(평일기준: 45.0%, 주말기준: 39.7%)은 만족도 불만도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14] 하루일과 만족도

분류심사원 경험여부와 소속기관에 따라 하루일과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주말일과에 대해서만 서울분류심사원과 타 지역에 있는 분류심사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적어도 주말일과에 대해서는 서울 분류심사원보다 다른 지역 분류심사원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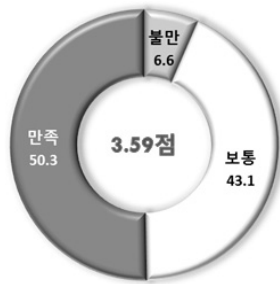
〈표 3-14〉 집단별 하루일과 만족도 차이

구분		평일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3.40	0.880	3.56	0.948
	없음	3.53	0.835	3.63	0.989
	t값	-1.31		-0.61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3.43	0.805	3.28	0.860
	타 지역 분류심사원	3.52	0.896	3.85	0.986
	t값	-0.91		-5.34**	

*p<0.05 **p<0.01

나. 생활안내 만족도

입소 후 진행되는 생활안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년들 가운데 50.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생활안내 만족도

분류심사원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이전에 경험이 있는 소년(3.47)보다 이번에 처음 입원한 소년(3.68)일수록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집단별 생활안내 만족도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3.47	0.916	2.04*
	없음	3.68	0.876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3.55	0.923	-0.67
	타지역분류심사원	3.62	0.874	

*p<0.05 **p<0.01

다. 진단·조사 프로그램

진단 및 조사프로그램 중에서는 ‘신상조사를 통한 개인상담’(64.9%)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분류심사를 위한 일대일 심층상담’(59.9%), ‘집단 또는 개별 심리검사’(59.3%), ‘건강진단’(5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단·조사 프로그램 중 소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역시 ‘개인상담(3.88)’과 ‘심층상담(3.86)’으

로 나타나, 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16〉 진단·조사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도움정도(%)

구분	만족도				도움정도			
	불만	보통	만족	평균(점)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평균(점)
개인상담	3.4	31.7	64.9	3.87	4.3	32.6	63.1	3.88
심층상담 (분류심사)	4.3	35.8	59.9	3.77	6.2	34.4	59.4	3.86
심리검사 (집단·개별)	2.7	38.0	59.3	3.76	3.4	37.6	59.0	3.77
건강진단	4.9	38.0	57.1	3.76	2.5	33.5	64.0	3.76

이러한 진단·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정도를 분류심사원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속기관별로 만족도에 있어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서울분류심사원(3.60)보다 다른 지역 분류심사원(3.95)의 소년일수록 진단·조사 프로그램의 도움정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집단별 진단·조사 프로그램 인식 차이

구분		만족도		도움정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3.70	0.771	3.74	0.790
	없음	3.80	0.803	3.84	0.781
	t값	-1.01		-1.08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3.51	0.777	3.60	0.836
	타지역분류심사원	3.94	0.753	3.95	0.713
	t값	-4.58**		-3.63**	

*p<0.05 **p<0.01

라. 교육·예방 프로그램

교육·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사·진단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평가한 결과, ‘학교폭력·성폭력·강절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법교육’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70.8%)이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집단상담 및 인성교육’(64.5%), ‘피해자에게 편지쓰기’(59.8%), ‘문화예술교육’(57.4%), ‘독서활동’(57.0%) 순이었다.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프로그램 역시 ‘비행예방교육·법교육’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분류심사원에 입원한 소년들의 상당수가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비행이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18〉 교육·예방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도움정도(%)

구분	만족도				도움정도			
	불만	보통	만족	평균(점)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평균(점)
비행예방교육 ·법교육	3.0	26.2	70.8	4.00	1.7	25.1	73.3	4.11
집단상담 인성교육	1.7	33.9	64.5	3.90	2.6	27.5	69.9	3.99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4.4	35.9	59.8	3.82	5.1	33.7	61.2	3.86
문화예술교육	2.6	40.1	57.4	3.79	3.3	34.8	61.9	3.86
독서활동	4.7	38.3	57.0	3.75	5.7	31.8	62.5	3.85

통계적 검증결과, 분류심사원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교육·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속기관에 따라서는 교육·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분류심사원보다는 다른 지역의 분류심사원에서 교육·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3.93)와 도움정도(4.00)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3-19〉 집단별 교육·예방 프로그램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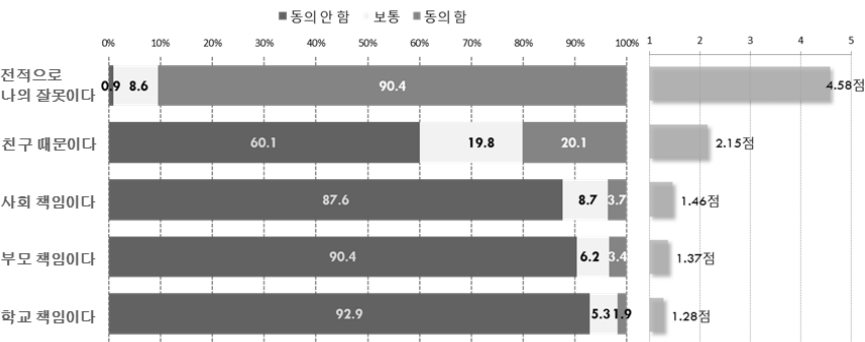
구분		만족도		도움정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3.79	0.774	3.84	0.814
	없음	3.83	0.709	3.91	0.783
	t값	-0.47		-0.67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3.66	0.712	3.71	0.797
	타지역분류심사원	3.93	0.738	4.00	0.774
	t값	-2.81**		-2.74**	

*p<0.05 **p<0.01

4. 입소 후 인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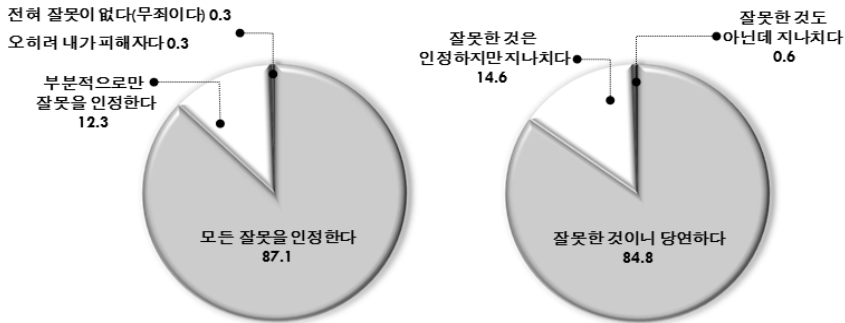
가. 사건책임 및 그로 인한 입원에 대한 인식

분류심사원에 입원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소년들의 상당수(90.4%)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친구의 책임’(20.1%)이라는 인식도 일부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부모, 학교, 사회에 책임을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6] 사건책임의 인식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정기간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소년들의 87.1%가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응답해 앞서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는 인식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잘못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한다’는 응답도 12.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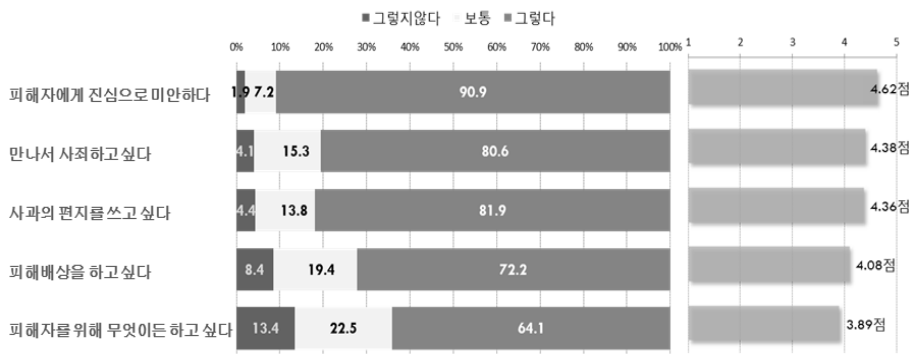
[그림 3-17] 사건의 잘못인정 및 분류심사원 입원에 대한 인식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분류심사원에서 일정기간 지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의 84.8%가 ‘잘못한 것이니 당연하다’고 인정한 반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나치다’라는 응답도 14.6%로 일부 소년들은 지나친 처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피해자에 대한 인식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9%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만나서 사죄하고 싶다’(80.6%), ‘사과의 편지를 쓰고 싶다’(81.9%), ‘피해배상을 하고 싶다’(72.2%)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수 소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64.1%)와 같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회복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림 3-18] 피해자에 대한 인식

피해자와 회복노력에 대해서는 분류심사원 경험여부나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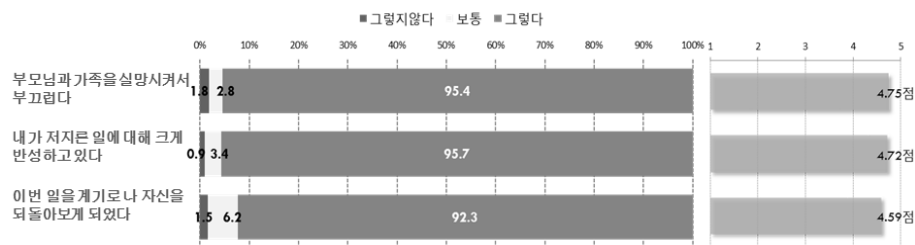
〈표 3-20〉 집단별 피해자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4.36	0.762	1.47
	없음	4.22	0.836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4.20	0.931	-1.12
	타지역분류심사원	4.31	0.724	

*p<0.05 **p<0.01

다. 자신에 대한 반성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온 이후 자신에 대해 얼마나 되돌아보게 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소년들이 ‘부모님과 가족들을 실망시켜 부끄럽다’(95.4%),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95.7%), ‘이번 일을 계기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92.3%) 등 이번 사건과 사건을 저지른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자신에 대한 반성

분류심사원 경험여부와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이전에 입원경험과 무관하게 자신에 대한 반성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속기관에 따라서는 다소 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서울분류심사원(4.57)에 비해 다른 지역의 분류심사원(4.77)에서 자신에 대한 반성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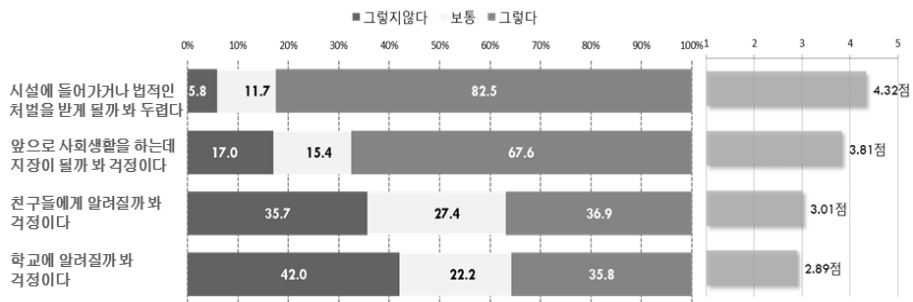
〈표 3-21〉 집단별 자신에 대한 반성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4.66	0.555	-0.82
	없음	4.71	0.531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4.57	0.662	-3.34**
	타지역분류심사원	4.77	0.411	

*p<0.05 **p<0.01

라. 퇴원 이후 두려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퇴원한 이후 걱정이나 염려가 되는 것으로는 역시 ‘법적인 처벌’(82.5%)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생활에 지장’(67.6%)이 될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친구’(36.9%)나 ‘학교’(35.8%)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퇴원 이후 두려움

퇴원 이후 두려움에 대해서는 분류심사원 경험여부나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 없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집단별 퇴원 이후 두려움에 대한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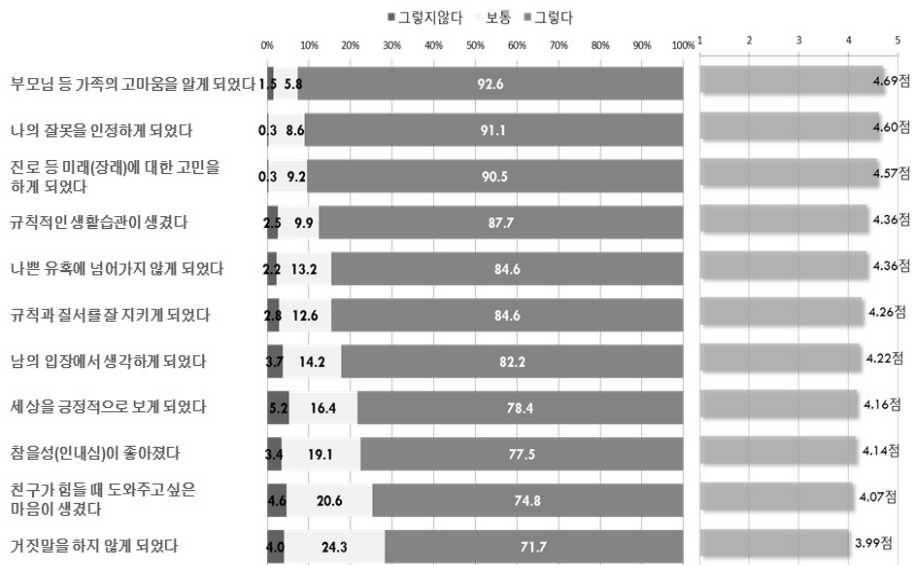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3.47	1.055	-0.53
	없음	3.53	1.016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3.46	1.000	-0.73
	타지역분류심사원	3.54	1.047	

*p<0.05 **p<0.01

마. 긍정적인 심리 및 태도변화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온 이후 인내심 향상, 미래에 대한 목표, 규칙적인 생활습관의 형성 등 예전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심리와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수 소년들이 동의를 나타냈다.

긍정적인 심리나 태도 가운데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고마움’(92.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나의 잘못에 대한 인정’(91.1%), ‘진로에 대한 고민’(90.5%), ‘규칙적인 생활습관’(87.7%), ‘나쁜 유혹에 견딜 수 있음’(84.6%), ‘규칙과 질서의 순응’(84.6%),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82.2%), ‘세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78.4%), ‘인내심 향상’(77.5%),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의 형성’(74.8%), ‘거짓말 하지 않기’(71.7%) 등 거의 모든 심리·태도의 측면에서 긍정적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1] 긍정적 심리·태도변화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나 태도의 변화는 통계적 검증결과, 분류심사원 경험여부나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23〉 집단별 긍정적 심리·태도변화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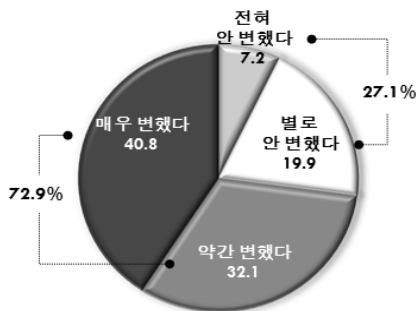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4.26	0.630	-1.37
	없음	4.35	0.563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4.23	0.686	-1.91
	타지역분류심사원	4.37	0.509	

*p<0.05 **p<0.01

바. 입원 후 소년분류심사원 생각변화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온 이후 분류심사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 소년의 72.9%가 '변했다'고 응답한 반면, '안 변했다'는 응답은 27.1%

로 나타났다. 특히 분류심사원 입원 이후 생각이 ‘매우 변했다’는 의견도 40.8%에 달해 분류심사원에서의 경험이 소년들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2] 입원 후 소년분류심사원 생각변화

통계적 검증결과, 분류심사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분류심사원 경험여부나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집단별 입원 후 소년분류심사원 생각변화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분류심사원 경험여부	있음	2.94	0.998	-1.78
	없음	3.14	0.911	
소속기관별	서울분류심사원	3.01	0.938	-0.93
	타지역분류심사원	3.11	0.950	

*p<0.05 **p<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상당수의 소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을 경험한 이후 분류심사원에 대한 생각이 바뀔 뿐 아니라 긍정적인 심리·태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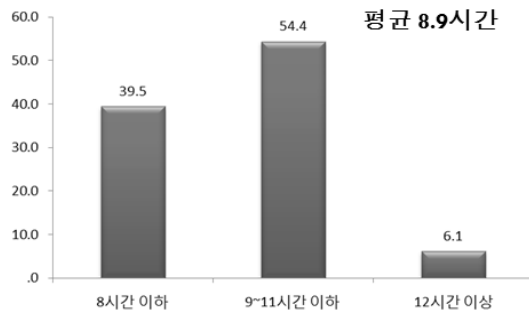
제3절 직원의 소년분류심사원 업무실태 및 인식

1. 직무에 대한 인식

가. 업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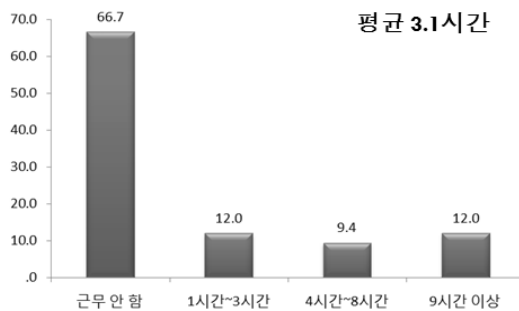
1) 평균업무 시간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파악한 결과 평일 기준으로 평균 8.9시간을 주말 기준으로는 약 3.1시간을 업무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하루 기준 업무시간(평일 기준)

평일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다수의 직원들이 9시간~11시간 이하(54.4%)와 8시간 이하(39.5%)라고 응답하였고, 12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도 6.1%로 나타났다.



[그림 3-24] 하루 기준 업무시간(주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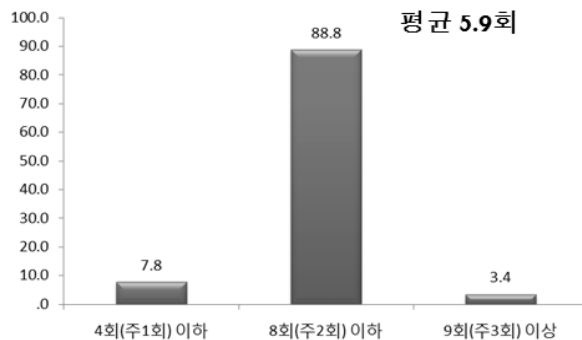
주말 업무시간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주말 근무를 안 한다는 응답이 66.7%로 나타났고, 1시간~3시간 사이와 9시간 이상이 12.0%, 4시간~8시간이 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5〉 평균업무시간(평일)

구분		8시간 이하	9~11시간 이하	12시간 이상
전체		39.5	54.4	6.1
성별	남성	39.5	53.1	7.4
	여성	39.4	57.6	3.0
직급별	6급 이상	37.5	56.3	6.3
	7급	44.7	50.0	5.3
	8급	38.5	57.7	3.8
	9급	31.0	58.6	10.3

평일 평균 업무시간을 시간대별로 성별과 직급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업무시간이 9시간~11시간 이하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직급별로도 같은 결과 나타났지만 9급에서 12시간 이상 업무를 한다는 비율이 다른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당직업무 시간



[그림 3-25] 월 기준 당직근무 횟수

직원들의 월 기준 당직근무 횟수를 살펴본 결과 한 달에 평균 5.9회 당직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근무를 횟수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한 달에 8회(주2회) 이하가 88.8%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월 4회(주1회)가 7.8%, 월 9회(주3회) 이상 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6〉 당직업무 횟수(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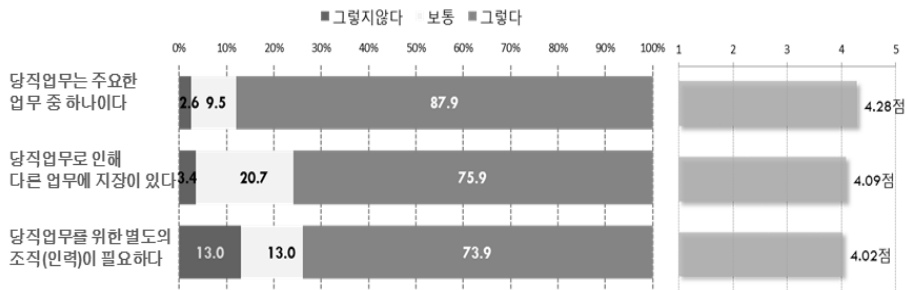
구분		4회(주1회) 이하	8회(주2회) 이하	9회(주3회) 이상
전체		7.8	88.8	3.4
성별	남성	7.2	88.0	4.8
	여성	9.1	90.9	0.0
직급별	6급 이상	37.5	62.5	0.0
	7급	0.0	94.9	5.1
	8급	3.8	92.3	3.8
	9급	6.7	90.0	3.3

당직근무를 횟수에 따라 성별과 직급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월 8회(주2회) 이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월 9회(주3회) 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도 모든 직급에서 월 8회(주2회) 이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6급 이상일 경우 다른 직급에 비해 월 4회(주1회)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 세부 업무별 인식

1) 당직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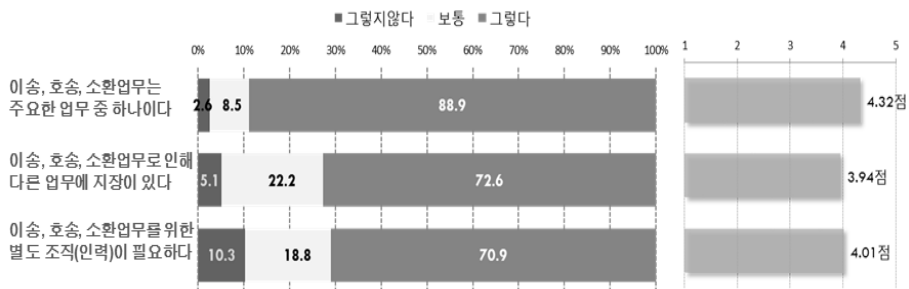
직원들에게 당직업무에 대해 인식을 확인한 결과, 당직업무가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는 응답이 87.9%로 높게 나타났으나, 당직업무로 인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응답 또한 75.9%로 높게 나타났다. 당직업무의 수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73.9%가 동의를 나타냈다. 따라서 당직업무는 중요하지만, 현재의 조직이나 인력체계로는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림 3-26] 당직업무

2) 이송·호송·소환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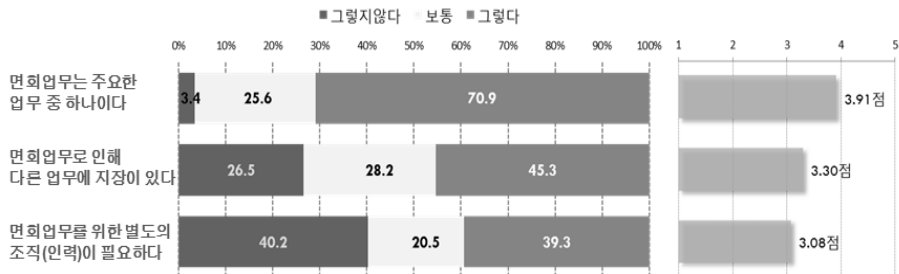
이송·호송·소환업무 역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는 응답이 88.9%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송·호송·소환업무로 인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응답도 72.6%로 높았다. 이송·호송·소환업무의 수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70.9%가 동의를 나타냈다. 이송·호송·소환업무 또한 당직업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기는 하나 현재의 업무조건에서는 이송·호송·소환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7] 이송·호송·소환업무

3) 면회업무

면회업무의 경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는 응답이 70.9%로 당직업무나 이송·호송·소환업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상당수 직원들이 면회업무 또한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면회업무로 인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응답은 45.3%로 당직업무나 이송·호송·소환업무와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면회업무의 수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39.3%만 동의를 나타내, 당직업무나 이송·호송·소환업무에 비해서는 다른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8] 면회업무

당직업무, 이송·호송·소환업무, 면회업무의 중요도를 성별, 직급별, 근무경력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당직업무의 경우 직급별로 볼 때, 6급이상에서 당직업무의 중요성(4.63)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직급보다 매우 높았다.

그러나 대부분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거의 모든 직원들이 당직업무, 이송·호송·소환업무, 면회업무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27〉 집단별 업무중요성의 인식 차이

구분		당직		이송·호송·소환		면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4.35	0.772	4.37	0.708	4.00	0.792
	여성	4.12	0.781	4.18	0.808	3.70	0.770
	t값	1.43		1.24		1.88	
직급별	6급 이상	4.63	0.500	4.25	0.683	4.25	0.577
	7급	4.33	0.621	4.26	0.715	3.97	0.743
	8급	4.35	0.846	4.37	0.792	3.93	0.781
	9급	3.93	0.944	4.33	0.802	3.63	0.928
	F값	3.28*		0.16		2.33	
보호기관 근무경력	5년 미만	3.97	0.923	4.17	0.857	3.63	0.910
	10년 미만	4.43	0.756	4.71	0.469	4.00	0.784
	20년 미만	4.39	0.704	4.18	0.797	4.03	0.797
	20년 이상	4.43	0.634	4.39	0.567	4.07	0.604
	F값	2.62		2.32		2.18	

*p<0.05 **p<0.01

당직업무, 이송·호송·소환업무, 면회업무로 인해 다른 업무에 얼마나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성별, 직급별, 근무경력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검증 결과,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당직업무, 이송·호송·소환업무, 면회업무로 인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28〉 집단별 다른 업무지장의 인식 차이

구분		당직		이송·호송·소환		면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4.04	0.862	3.95	0.877	3.24	1.048
	여성	4.21	0.781	3.91	0.947	3.45	1.092
	t값	-1.02		0.23		-0.99	
직급별	6급 이상	4.13	0.885	4.25	0.577	3.56	1.094
	7급	3.97	0.903	3.74	0.938	3.21	1.105
	8급	4.27	0.724	4.07	0.675	3.15	0.907
	9급	4.13	0.776	3.87	1.106	3.40	1.192
	F값	0.68		1.54		0.67	
보호기관 근무경력	5년 미만	4.23	0.808	4.00	0.939	3.40	1.143
	10년 미만	4.50	0.650	4.07	1.141	3.00	1.038
	20년 미만	3.85	0.834	3.76	0.781	3.32	1.093
	20년 이상	4.07	0.858	3.96	0.881	3.29	1.049
	F값	2.49		0.57		0.46	

*p<0.05 **p<0.01

당직업무, 이송·호송·소환업무, 면회업무의 수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당직업무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서, 직급별로는 직급이 낮을수록,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송·호송·소환업무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들의 의견은 당직업무, 이송·호송·소환업무, 면회업무가 중요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다른 고유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29〉 집단별 별도조직 필요성의 인식 차이

구분		당직		이송·호송·소환		면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3.94	1.221	4.05	1.161	3.06	1.274
	여성	4.21	0.960	3.91	0.947	3.12	1.364
	t값	-1.15		0.61		-0.23	
직급별	6급 이상	3.94	1.289	4.13	1.258	3.69	1.352
	7급	3.64	1.287	3.87	1.174	2.82	1.167
	8급	4.27	0.827	4.15	0.770	2.81	1.178
	9급	4.31	1.039	3.97	1.189	3.23	1.478
	F값	2.55		0.41		2.23	
보호기관 근무경력	5년 미만	4.32	1.007	4.11	1.078	3.17	1.505
	10년 미만	4.29	0.994	4.29	0.994	2.71	1.204
	20년 미만	3.85	1.228	3.79	0.978	3.06	1.153
	20년 이상	3.68	1.249	3.93	1.303	3.04	1.319
	F값	2.14		0.87		0.40	

*p<0.05 **p<0.01

다. 직무만족 및 개선시급성

현재 분류심사원의 업무를 근무환경(시간·시설), 보수, 복지, 장래성, 일의 보람, 조직문화, 사회적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각 측면에 대한 만족수준과 개선시급성을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일의 보람'(43.6%)과 '보수'(28.2%)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근무환경의 시간적 측면'(44.4%), '근무환경의 시설적 측면'(50.4%), '사회적 인식'(46.2%), '복지'(45.3%)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만이 높은 측면은 개선시급성에서 우선순위로 지적되고 있는데, ‘근무환경의 시설적 측면’은 조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62.7%, ‘근무환경의 시간적 측면’은 60.0%, ‘사회적 인식’은 55.0%, ‘복지’는 54.5%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30〉 직무만족 및 개선시급성(%)

구분	만족도				개선시급성			
	불만	보통	만족	평균(점)	안시급함	보통	시급함	평균(점)
근무환경(시간측면)	44.4	35.9	19.7	2.57	11.8	28.2	60.0	3.70
근무환경(시설측면)	50.4	30.8	18.8	2.53	10.0	27.3	62.7	3.75
보수	17.9	53.8	28.2	3.12	13.6	55.5	30.9	3.23
복지	45.3	37.6	17.1	2.63	8.2	37.3	54.5	3.62
장래성	32.5	47.0	20.5	2.76	12.7	41.8	45.5	3.50
일의 보람	21.4	35.0	43.6	3.21	21.8	43.6	34.5	3.25
조직문화	35.0	45.3	19.7	2.76	11.8	44.5	43.6	3.45
사회적 인식	46.2	38.5	15.4	2.56	10.1	34.9	55.0	3.65

이러한 직무만족 및 개선시급성의 두 차원을 기준으로 8개의 직무관련 측면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만족도와 개선시급성의 평균을 기준으로 만족도와 개선시급성이 모두 높은 측면을 ‘유지강화영역(I)’으로, 만족도는 높으나 개선시급성은 낮은 측면을 ‘지속유지영역(IV)’으로, 만족도는 낮으나 개선시급성이 높은 측면은 ‘중점개선영역(II)’으로, 만족도와 개선시급성이 모두 낮은 측면은 ‘점진개선영역(III)’으로 나누어 8개의 직무관련 측면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근무환경의 ‘시설적 측면’과 ‘시간적 측면’, ‘사회적 인식’, ‘복지’ 등이 중점개선영역에 포함되었고, ‘장래성’과 ‘조직문화’는 점진개선영역에 포함되었으며, ‘보수’와 ‘일의 보람’은 지속유지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9] 소년분류심사원 직무 포트폴리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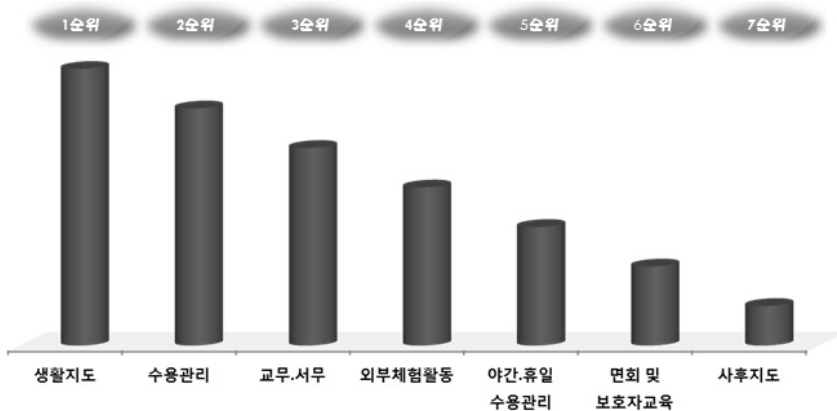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의 보람’과 같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국민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분류심사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교육업무에 대한 인식

가. 교육업무의 우선순위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 ‘생활지도’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다음으로 ‘수용관리’, ‘교무·서무’, ‘외부체험활동’, ‘야간·휴일 수용관리’, ‘면회 및 보호자교육’, ‘사후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소년들과 직접 교실에서 생활하는 교육담당 직원들에게 생활지도가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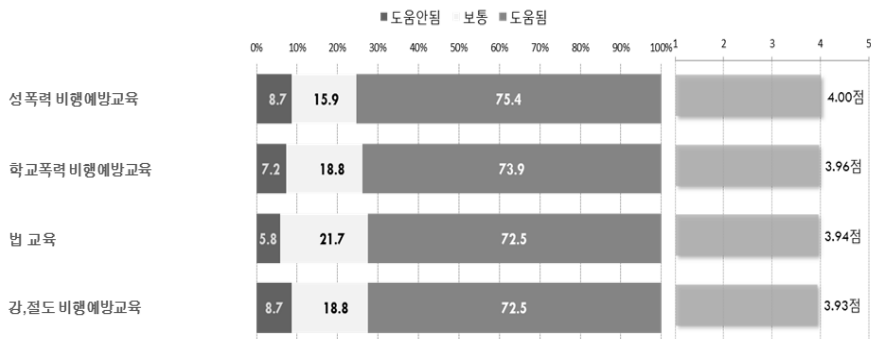
[그림 3-30] 교육업무의 우선순위

나. 비행예방교육의 도움정도

앞서 살펴본 대로 소년들의 경우 현재 분류심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예방 프로그램 가운데 ‘비행예방 및 법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 역시 ‘강·절도교육’, ‘성폭력’, ‘학교폭력’, ‘법 교육’ 등 비행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70.0%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비행예방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75.4%, ‘학교폭력 비행 예방교육’은 73.9%, ‘법 교육’은 72.5%, ‘강·절도 비행예방교육’에 대해서는 72.5%가 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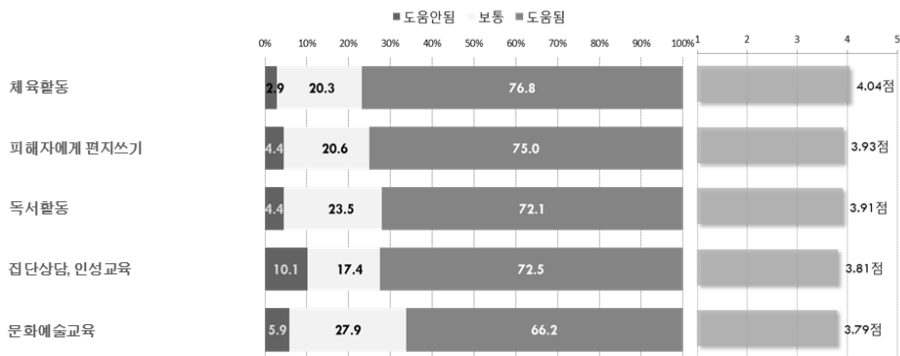
74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그림 3-31] 비행예방교육의 도움정도

다.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의 도움정도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수 직원들이 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육활동(76.8%)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피해자에게 편지쓰기(75.0%) 또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독서활동에 대해서는 72.1%, 집단상담·인성교육에 대해서는 72.5%가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한 반면, 문화예술교육(66.2%)은 효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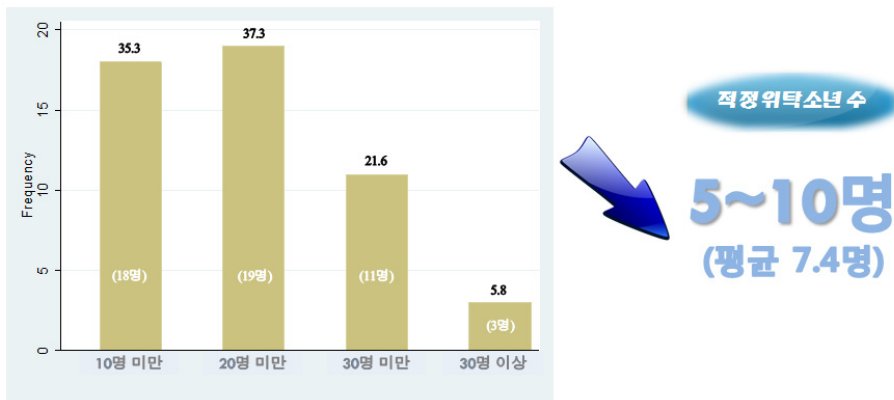


[그림 3-32]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의 도움정도

라. 걱정 위탁소년 수

교육담당 직원들에게 현재 맡고 있는 반의 위탁소년 수를 확인한 결과, 10명미만이 35.3%, 10명이상 20명미만이 37.3%로 대부분 20명 내외의 소년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명이상(27.4%)을 맡고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교무담당 직원들이 생각하는 1개 반에 적당한 위탁소년의 수는 평균 7.4명으로 대략 5~1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수치를 감안할 때, 1개 반마다 현재보다 위탁소년의 수가 절반가량 줄어야 충분한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3] 현재 위탁소년 수 및 걱정 위탁소년 수

마. 교육업무의 개선사항

교육업무의 개선사항에 대한 교육담당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별방안들을 범주화 하면, 첫째 인력확충 및 위탁소년의 적정인원수 유지, 둘째 교육 및 직원 전문성 제고, 셋째 시설개선으로 나타났다.

범주화된 주제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확충 및 적정 인원수 유지에서는 담당직원이 교육업무 외에 이송, 당직, 면회업무 등 타 업무를 많이 하며, 위탁소년이 적정인원수에 맞지 않아 교육의 질이 다소 낮아진다는 의견이 언급되었고, 교육 및 직원 전문성 제고에서는 전국에 있는 분류심사원의 교육과정 통일과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급되었으며, 시설개선에는 환자나 심신약자를 위한 개별실 마련 및 호실을 세분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언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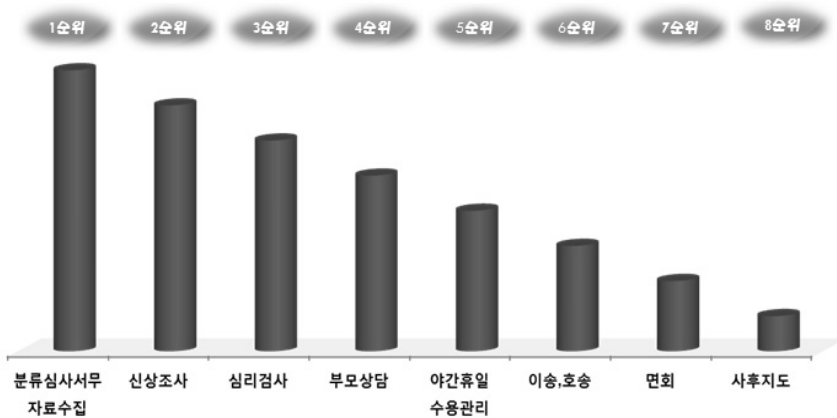
〈표 3-31〉 교육업무 개선사항(개방형 질문)

1. 인력확충/ 적정 인원수 유지
• 직원 1인당 담당 학생 수 줄이는 문제 • 직원 증원필요 담당직원이 수용·교육·이송·당직·면회 등 너무 많은 일을 함 • 적정 인원수에 맞지 않아 교육의 질이 다소 낮아지는 점 • 적정 수 일 때도 있지만 대체로 수용인원이 많을 때가 대부분임
2. 교육/ 직원 전문성
• 지식전달 보다는 위탁학생이 느낄 수 있는 교육필요 • 전국 분류심사원마다 교육과정을 통일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생각 함 •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선생님을 위한 직무교육이 필요 • 교육의 전문성 확보(중복업무 배제)
3. 시설개선
• 호실 세분화 • 개별실(환자, 심신약자) • 소규모 시설 3~4인실

3. 분류심사업무에 대한 인식

가. 분류심사업무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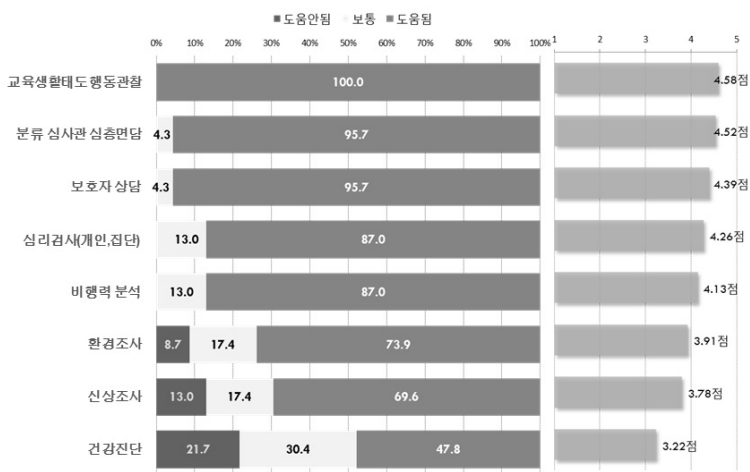
분류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류심사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 ‘분류심사서류·자료수집’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다음으로 ‘신상조사’, ‘심리검사’, ‘부모상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용관리’, ‘이송·호송’, ‘면회’ 등의 업무는 분류심사를 위한 업무와 상대적으로 관련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4] 분류심사업무의 우선순위

나. 분류심사서 작성활동의 도움정도

분류심사서 작성을 위한 활동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교육생활태도 행동관찰’(100.0%)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분류심사관 심층면담’(95.7%), ‘보호자 상담’(95.7%), ‘심리검사’(87.0%), ‘비행력 분석’(87.0%) 역시 분류심사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건강진단’(47.8%)이나 ‘신상조사’(69.6%)는 도움이 되는 정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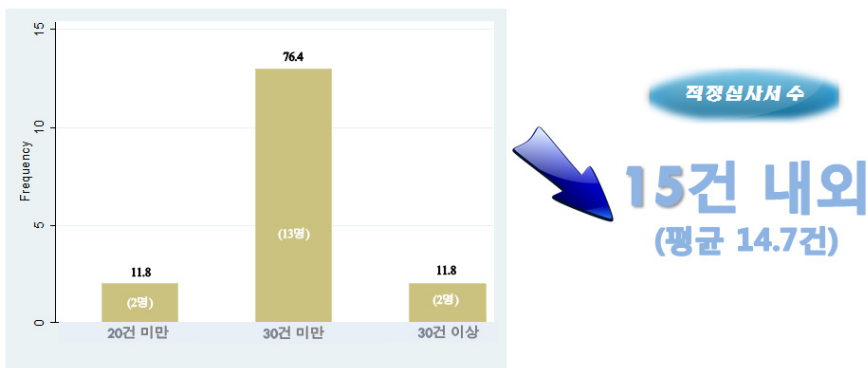


[그림 3-35] 분류심사서 작성활동의 도움정도

다. 적정 분류심사서의 수

분류심사업무담당 직원들에게 현재 작성하고 있는 분류심사서의 한 달 평균 건수를 질문한 결과, 20건 미만 11.8%, 20건 이상 30건 미만 76.4%, 30건 이상 11.8%로 대부분 월평균 20~30건 정도의 분류심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분류심사업무담당 직원들이 생각하는 월 평균 적정 분류심사서의 수는 평균 14.7건으로, 대략 한 달에 15건 내외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수치를 감안할 때, 분류심사서의 작성은 현재 수준에서 절반정도 감소해야 보다 많은 자료의 검토와 고민을 통해 도출된 충실한 분류심사서가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36] 월평균 분류심사서 작성 수 및 적정 분류심사서 수

라. 분류심사업무의 개선사항

분류심사업무의 개선사항에 대한 담당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별방안들을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첫째 분류심사서 작성을 위한 타 업무 경감, 둘째 인력확충 및 적정 인원수 유지, 셋째 전문심사관의 전문성 제고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분류심사서 작성을 위한 타 업무 경감에서 업무과다, 당직근무 제외, 분류심사서 작성 시간 부족에 대한 의견이, 인력확충 및 적정 인원수 유지에서는 인력을 보강하여 질적인 분류심사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전문심사관의 전문성 제고에서는 분류심사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언급되었다.

〈표 3-32〉 분류심사업무 개선사항(개방형 질문)

1. 분류심사서 작성을 위한 타 업무 경감
• 분류심사관의 당직근무 제외 • 업무과다 개선 필요 • 분류심사관이 주5일간 심사서를 쓰는데, 온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는 점 고려 필요 함
2. 인력확충/ 적정 인원수 유지
• 분류심사전담기관 부족으로 과밀수용 및 체계적인 비행원인 진단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인력 보강하여 질적인 분류심사가 작성될 수 있었으면 함 • 수용의 과밀화 해소를 적정인원에 대한 분류심사서 작성이 필요함
3. 전문심사관의 전문성 제고
• 분류심사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실시 • 과학적 분석

4. 수용과밀화에 대한 해소방안

수용과밀화에 대한 해소방안을 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권역별 분류심사원 증설, 인력보강 및 전문성 향상, 적정 인원수 유지의 3가지 주제로 수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주제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권역별 분류심사원 증설에서는 위탁대행 소년원은 시설 및 교육여건 면에서 현재인원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대도시마다 소규모 심사원시설을 갖추게 하여 지역별로 수용인원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 조직개편 시 폐쇄했던 심사원을 다시 개보수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인력보강 및 전문성 향상에서는 전문분류심사관을 특채자 위주로 선발하고, 특수 경비를 증원하여 수용·이송·면회업무를 수행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급되었으며, 적정 인원수 유지에서는 과도한 위탁결정 지양, 법원·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적정 인원수를 유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법원 단계에서 수용이 필요한 위탁생만 선별해 달라는 의견 등이 언급되었다.

〈표 3-33〉 수용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개방형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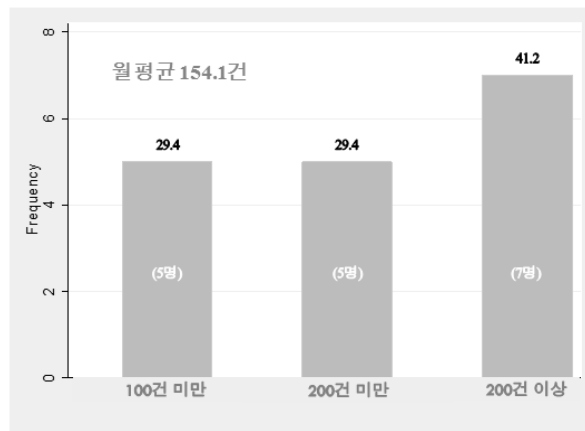
1. 권역별 분류심사원 증설
• 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신설 • 소년분류심사원을 권역별로 신설필요 • 분류심사원기관 확대 • 심사원증설, 또한 위탁된 학생들의 분류심사를 위해 분류심사관증원, 분류심사관실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소년분류심사원이 별도 설치가 필요함, 위탁대행 소년원에서는 시설도 교육여건도 현재의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마다 소규모 심사원시설을 갖추게 하여 지역별로 수용인원을 분산시킨다면 법원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될 것이고, 비행청소년의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연계도 가능할 것임 • 각 광역시별로 별도의 소년분류심사원 설치하고 서울 2개 경기1개 인천 1개 분류심사원을 설치하면 수용 과밀 해소 될 것임 • 시설의 문제에서 오는 점을 해결하고 시설개선 시에 충분한 토의가 필요함. 적정인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학생감호방법의 개선을 추구하여야 함 • 조직 개편 시 폐쇄했던 심사원을 다시 개보수하여 시설을 늘려야함 • 의료처우를 전담하기위한 의료위탁분류심사원개청
2. 인력보강 및 전문성 향상
• 전문분류심사관(특채자위주로확보) • 직원 수 확대 부산 여위탁은 전국 여위탁수를 합친 것 보다 인원이 많고 업무 과다함. 최소직원 2명이 필요함 • 분류심사중인 직원증원 특수경비 증원하여 수용 이송 면회 업무수행
3. 적정 인원수 유지
• 형사재판 진행 중의 소년을 소년부송치 줄이는 것, 소년법들의 형사부에서 소년부로의 송치가 너무 많음 • 과도한 위탁결정 지양 • 법원,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적정 인원수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 법원 단계에서 꼭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탁생만 신중히 선별해 주었으면 함 • 각 가정법원에서 심사원 수용인원을 고려해 위탁학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4. 기타
• 업무분장의 명확(고유 업무로 전문성 강화), 공통 업무 해결을 위한 고민필요 • 비행예방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심사원에서 업무하는 방안이 필요 함

제4절 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이용실태 및 인식

1. 분류심사 이용 현황

가. 소년사건 처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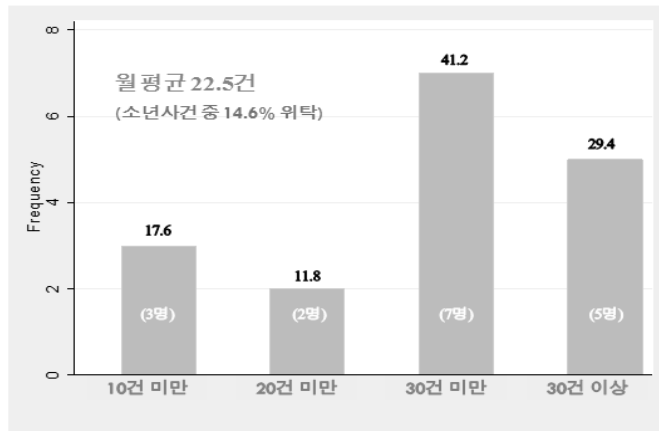
현재 소년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의 월평균 소년사건 처리건수는 평균 154.1건으로, 200건 이상 담당하는 판사도 41.2%(7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3-37] 월 평균 소년사건 처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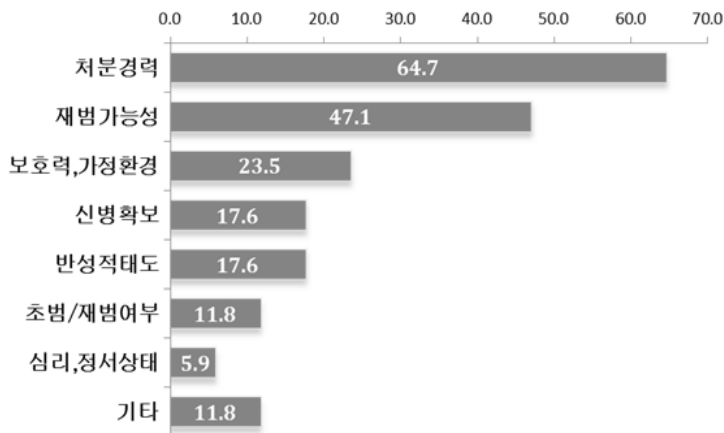
나. 분류심사 위탁건수

소년부 판사의 경우 한 달 기준으로 분류심사위탁을 의뢰하는 평균 건수는 약 23건으로, 이러한 수치는 전체 소년사건 가운데 14.6%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월 평균 10건 미만 경우가 17.6%(3명), 10건 이상 20건 미만 11.8%(2명), 20건 이상 30건 미만 41.2%(7명), 30건 이상 29.4%(5명) 등으로 대부분 20건 이상 분류심사위탁을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8] 월 평균 분류심사 위탁건수(%)

소년사건에 대한 분류심사위탁을 의뢰할 경우 주로 판단하는 기준은 ‘처분 경력’(64.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범가능성’(47.1%), ‘보호력·가정환경’(23.5%), ‘신병확보’(17.6%), ‘반성적 태도’(17.6%), ‘초범/재범 여부’(11.8%), ‘심리·정서상태’(5.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 과거의 처분경력이나 미래의 재범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분류심사위탁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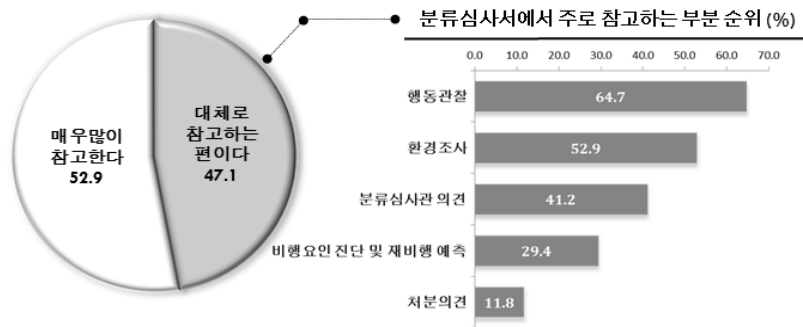


[그림 3-39] 분류심사 위탁 의뢰 기준(복수응답)

다. 분류심사서 참고 정도

소년부 판사들은 모두 분류심사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절반이상이 ‘매우 많이 참고한다’(52.9%)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소년부 판사들이 분류심사서에서 주로 참고하는 부분으로는 ‘행동관찰’(64.7%)과 ‘환경조사’(52.9%)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분류심사관 의견’(41.2%)도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판사들은 분류심사서의 다양한 내용 중에서도 일정기간 동안 한 장소에서 소년들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과 행동변화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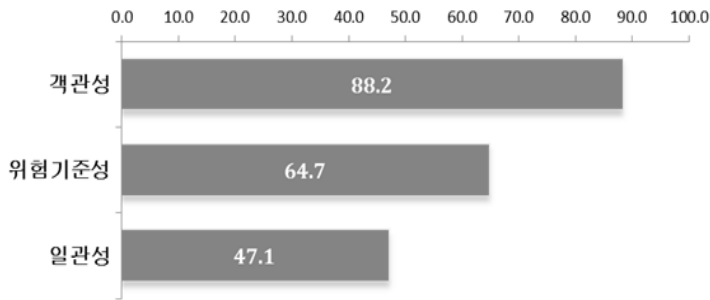


[그림 3-40] 분류심사서 참고 정도(복수응답)

라. 분류심사서의 원칙

객관성, 일관성, 위험기준성 등 분류심사서가 담고 있는 3가지 원칙 중에서 소년부 판사들은 분류심사서가 범죄의 심각성, 범죄유형, 비행횟수, 보호관찰위반경력에 따른 처분의견에 대한 ‘객관성’(88.2%)을 반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한 원칙으로는 사회 및 시설 내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감요인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기준성’(64.7%)으로 나타났고, 분류심사 양식의 통일성과 같은 ‘일관성’(47.1%)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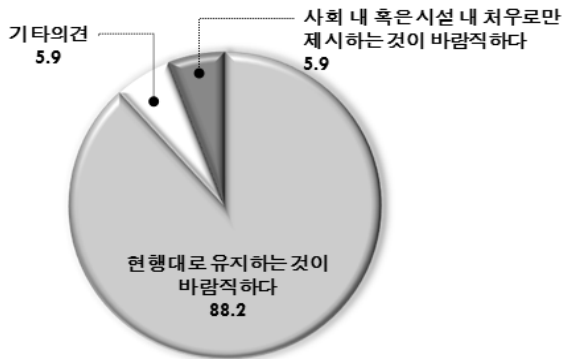


[그림 3-41] 분류심사서의 원칙(복수응답)

2. 분류심사 평가 및 개선안

가. 조사관의 처분의견 제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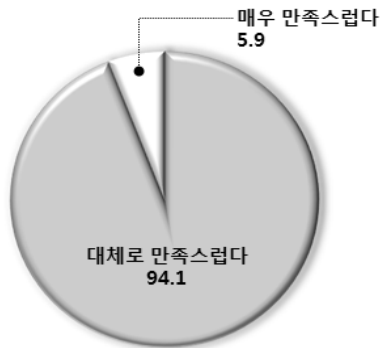
소년부 판사들은 현재 분류심사원의 조사관이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8.2%)고 보았다. 대안적으로 '사회내 혹은 시설내 처우로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9%)는 의견에는 소수만 동의를 나타냈다.



[그림 3-42] 조사관의 처분의견 제시여부(%)

나. 분류심사서의 완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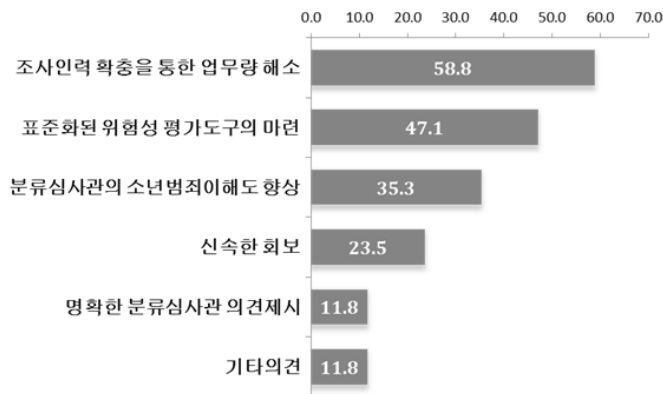
소년부 판사들은 분류심사서의 완성도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3] 분류심사서의 완성도

다. 조사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

소년부 판사들은 현재 분류심사원 조사업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사인력 확충을 통한 업무량 해소'(58.8%)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의 마련'(47.1%)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동의를 나타냈고, '분류심사관의 소년범죄에 대한 이해도 향상'(35.3%)도 필요한 개선점으로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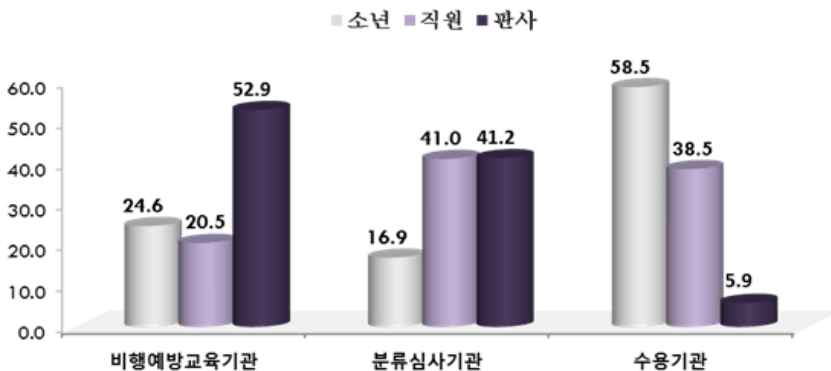


[그림 3-44] 분류심사원 조사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복수응답)

제5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에 대한 의견

1.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인식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소년분류심사원의 핵심기능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소년들은 분류심사원의 핵심기능을 ‘수용기관’(58.5%)으로, 직원들은 ‘분류심사기관’(41.0%) 및 ‘수용기관’(38.5%)으로, 판사들은 ‘비행예방교육기관’(52.9%) 및 ‘분류심사기관’(41.2%)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3-45]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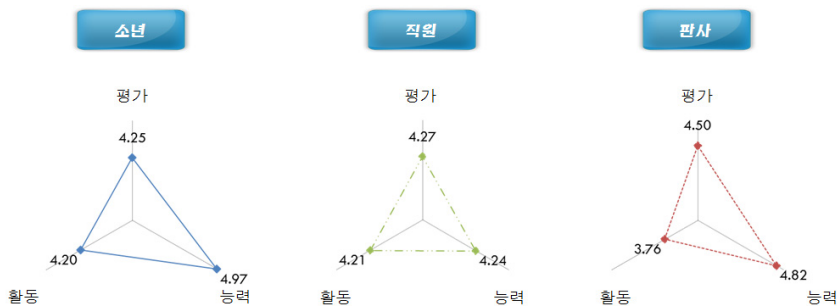
즉, 소년들은 자신들의 신병을 구속한 수용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직원들은 업무를 중심으로 분류심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판사들은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시간 교육까지 가능한 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못할 뿐 아니라 위탁을 결정 받은 소년이나 보호자 입장에서 소년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위탁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 소년분류심사원의 이미지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태도가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심리학의 태도척도를 활용하였다. 태도척도는 크게 평가차원(좋다-나쁘다), 능력차원(강하다-약하다), 활동차원(능동적-수동적)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세 가지 차원 중에서도 평가차원이 태도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¹²⁾

이 연구에서도 세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소년, 직원, 판사에게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평가를 내리도록 한 후, 각 차원의 점수를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소년은 능력차원(4.97)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반면 평가차원(4.25)과 활동차원(4.20)은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경우에는 평가차원(4.27), 능력차원(4.24), 활동차원(4.21)을 모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판사는 직원보다는 소년에 가까운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사의 경우 능력차원(4.8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평가차원(4.50), 활동차원(3.7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6]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태도 비교(평균)

따라서 분류심사원에 대한 태도형성을 정리해 보면, 소년과 판사는 분류심사원을 보다 '강한' 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태도형성에 가장 중요한 평가차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세 집단 중 판사가 분류심사원에 가장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사들은 분류심사원의 활동차원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12)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2009. 학지사. 223면.

나타났다. 직원들은 분류심사원에 대해 모든 차원에서 고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소년이나 판사에 비해 월등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4〉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태도 비교(평균)

	전체	소년	직원	판사	F값
평가차원	4.27	4.25	4.27	4.50	0.17
능력차원	4.77	4.97	4.24	4.82	9.83**
활동차원	4.19	4.20	4.21	3.76	0.54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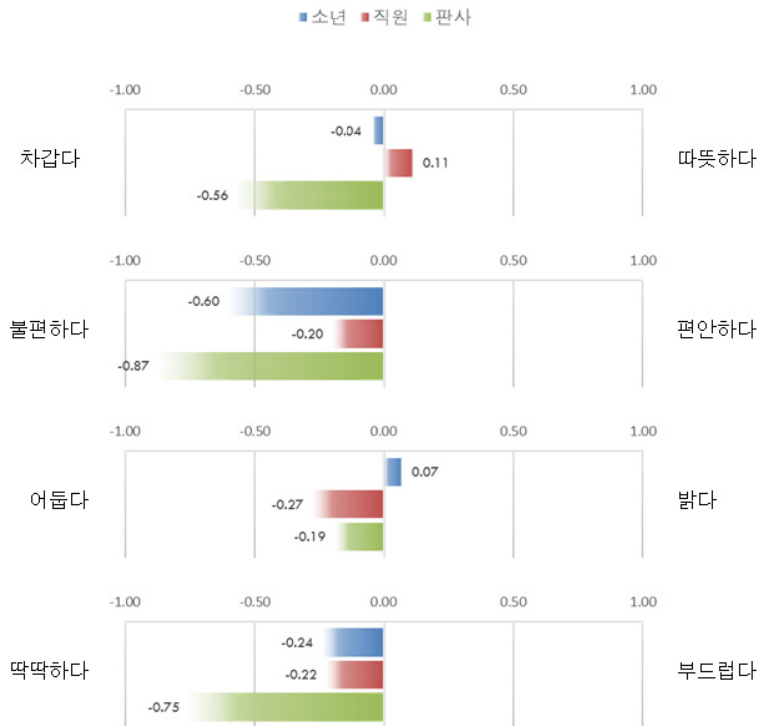
평가차원: 나쁘다/좋다, 능력차원: 약하다/강하다, 활동차원: 조용하다/활기차다

소년, 직원, 판사 등 집단별로 평가차원, 능력차원, 활동차원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평가차원과 활동차원은 세 집단이 비슷하게 인식하나, 능력차원에서는 소년, 판사, 직원 순으로 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분류심사원의 강한 이미지는 소년에게서 가장 높은 반면, 직원에게는 분류심사원의 강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태도형성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의척도(semantic scales)를 활용하여 분류심사원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해 보았다. 어의척도는 크게 ‘차갑다-따뜻하다’, ‘불편하다-편안하다’, ‘어둡다-밝다’, ‘딱딱하다-부드럽다’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하였다.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분류심사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갑다-따뜻하다’의 경우 직원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소년과 판사는 차가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가운 이미지는 소년보다 판사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불편하다-편안하다’의 경우에는 모든 집단에서 불편한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판사에게서 불편한 이미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년, 직원 순으로 나타났다. ‘어둡다-밝다’의 경우에는 소년에게서 밝은 이미지가 미약하게나마 나타난 반면, 직원과 판사는 어두운 이미지가 더 많았고, 특히 판사보다

직원에게서 어두운 이미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딱딱하다-부드럽다'의 경우에는 세 집단 모두 딱딱한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러한 딱딱한 이미지는 판사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47]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이미지 비교

3.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및 역할강화에 대한 인식

소년부 판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향후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질문하고,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판사들은 '분류심사관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인력관리제도'(4.76), '전국 권역별로 소년분류심사원의 설치'(4.71)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반면에 직원들은 '전국 권역별로 소년분류심사원의 설치'(4.30)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언급하였다. '분류심사관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인력관리제도'와 '전국 권역별로 소

년분류심사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직원보다 판사의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판사(4.29)가 직원(3.79)보다 월등히 높았고,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의 인권보다 더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판사(3.82)가 직원(2.96)보다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판사(3.76)가 직원(3.26)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및 역할강화 인식(%)

구분	판사				직원				t값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평균 (점)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평균 (점)	
분류심사관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인력관리제도가 필요하다	0.0	0.0	100.0	4.76	4.3	14.5	81.2	4.11	3.15**
전국권역별로 소년분류심사원이 별도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0.0	0.0	100.0	4.71	2.6	12.8	84.6	4.30	2.97**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인원이 과밀화되어 있다	0.0	5.9	94.1	4.35	4.3	20.7	75.0	4.17	1.06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0.0	11.8	88.2	4.29	6.0	34.2	59.8	3.79	2.19*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5.9	11.8	82.4	3.88	10.3	20.5	69.2	3.82	0.26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의 인권보다 더 보장될 필요가 있다	5.9	23.5	70.6	3.82	29.1	41.0	29.9	2.96	3.40**
소년분류심사에 대한 별도 법제정이 필요하다	0.0	41.2	58.8	3.76	5.2	31.0	63.8	3.83	-0.28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0.0	23.5	76.5	3.76	21.4	34.2	44.4	3.26	3.59**
소년분류심사원의 소년에 대한 인권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1.8	17.6	70.6	3.59	3.4	16.2	80.3	4.03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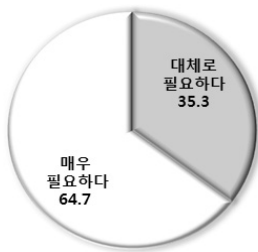
반면, '소년분류심사원의 인권보장'과 관련해서는 판사(3.59)보다 직원(4.03)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년분류심사에 대한 별도의 법제정'에 대해서도 직원

(3.83)이 판사(3.76)보다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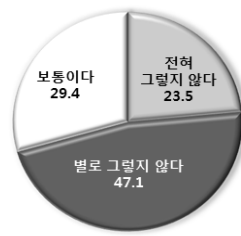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3.88)와 직원(3.82) 모두 향후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소년분류심사원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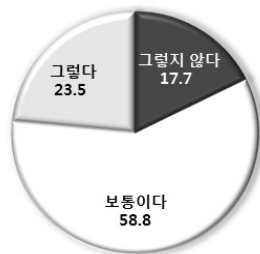
소년부 판사를 대상으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가칭)경기분류심사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모두 ‘필요하다’(매우 64.7%+대체로 35.3%)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기능이 ‘미결 구금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한다’(전혀 23.5%+별로 47.1%)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림 3-48] (가칭)경기분류심사원 설립
필요(N=17, %)



[그림 3-49] 미결구금형 주장에 대한
의견(N=17, %)



[그림 3-50] 쇼크 구금형태 주장에 대한
의견(N=17, %)

끝으로 법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을 ‘쇼크 구금형태로 활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23.5%)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17.7%)는 의견보다 높아, 분류심사원의 위탁이 실제로 쇼크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 방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 방안에 대하여 전국 소년부 판사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소년부 판사들이 제시한 개별 방안들은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 ‘분류심사관 충원’, ‘소년처우와 인권보장’, ‘조사과정에서 처분에 대한 암시 지양’, ‘소년원과 분리·독립된 시설화’의 5가지 주제로 수렴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주제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에서는 춘천지역 분류심사원의 교육수준과 보호소년 및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타 분류심사원 보다 인원이 적절하다는 이유를 제시하였고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안산분류심사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분류심사관 충원에서는 전문적인 분류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심사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급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처분에 대한 암시 지양에서는 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에게 처분에 대한 암시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분에서 소년처우의 인권보장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 분리·독립된 시설화를 추구하고 특히 여자소년분류심사원은 반드시 분리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3-36〉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 방안 (개방형 질문)

1.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 (분류심사원 증설)

-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의 범죄예방교육이 강화되고, 수도권지역에서의 과밀현상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봄. 충청지역 분류심사원의 교육수준에 대하여 보호소년 및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이는 교육인원이 경기도, 서울지역보다 적절한 수준이기 때문임
- 각급법원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심사원이 아니고 각급법원 개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년분류심사원 확충
- 인적, 물적 시설이 확충되어 과밀수용해결 및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 함
- 분류심사원의 추가설치와 인력확충
- 과밀화방지 및 초범, 재범분류를 위하여 안산분류심사원 설립 시급(단순한 지역상 분류 아닌, 비행 정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및 그에 따른 다른 교육, 처우 필요, 심사원 내에서의 비행학습 등의 역기능 해소 위하여도 필요)

2. 분류심사관 충원

- 수용의 과밀화를 개선하고 분류심사관을 증원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상담, 관찰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 전문적인 분류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심사관의 증원이 필요하고, 광역시 내지 도별로 분류심사원이 있어야 함

3. 소년처우와 인권보장

- 인력, 시설 등 환경개선, 전문성 강화, 모든 부분에서 소년처우의 인권보장 노력지속

4. 조사과정에서 처분에 대한 암시 지양

- 조사과정에서 처분에 관한 암시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심사원에서 보호소년에게 처분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함

5. 소년원과 분리·독립된 시설화

- 소년원에서 독립된 시설로 설치하고, 각 지역별 접근성 고려, 시설 대폭 확충 설립, 여자 소년분류심사원은 분리 설치 반드시 필요

제4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외국의 소년분류심사 형태

이 승 현

제4장

외국의 소년분류심사 형태

제1절 일본의 소년분류심사제도

1. 소년감별소의 역사

소년감별소는 1948년 소년법 및 소년원법이 제정되면서 소년원, 소년관호소 및 소년감별소 조직규정(법무성령 제5호)에 따라 소년의 감별과 의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소년감별소'가 설치되었다. 1950년 4월 소년법 일부개정에 의해 '소년관호소'와 '소년감별소'가 통합되어 '소년보호감별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1952년 행정조직상 교정과 보호가 분류됨에 따라 교정관계의 기관명칭에서 보호가 삭제되어 '소년보호감별소'가 '소년감별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소년감별소는 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송치된 자를 수용함과 동시에 가정재판소가 실시하는 소년에 대한 조사 및 심판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그 외의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소년의 자질에 대한 감별을 실시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소년원법 제16조). 소년감별소는 보호처분 또는 형의 집행을 받기 전의 자를 수용하는 시설로써, 소년이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소년원과 유사하지만, 수용된 재소자의 법적지위나 처우의 내용에 있어서 소년원과 차이를 두고 있다. 소년원에서는 주로 보호처분이 부처진 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면, 소년감별소에서는 주로 가정재판소의 심판을 받기 전의 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소년원에서는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에, 소년감별소에서는 교정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소년감별소는 수용 업무 이외에도 감별, 비행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원조에 관한 업무 등을 하고 있다.¹³⁾

소년감별소에 관한 규정이 소년원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4년 6월 11일 법률 제59호에 따라 ‘소년감별소법(少年鑑別所法)’ 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이에 따른 적용을 받고 있다.

2. 소년감별소의 운영현황

가. 소년감별소의 설치현황

일본은 검찰청별로 소년분류심사원에 해당하는 소년감별소가 배치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소년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년감별소의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표 4-1〉 일본 소년감별소의 설치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기관수	1일평균 수용인원	직원수	직원 1인당 관리인원
2003	53	-	-	-
2004	53	1,357	-	-
2005	53	1,271	1,214	1.0
2006	53	1,178	1,214	1.0
2007	52	1,036	1,209	0.9
2008	52	986	1,211	0.8
2009	52	954	1,211	0.8
2010	52	895	1,213	0.7
2011	52	861	1,213	0.7
2012	52	830	1,211	0.7
2013	52	766	1,203	0.6

출처: 김철호, 소년범죄 감소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임내현 의원실, 2015, 17면.

13) 法務省矯正局, 新しい少年院法と少年鑑別所法, 2014, 27夏.

나. 소년감별소의 직원

감별소 내에 상주하는 직원으로는 법무기관(심리)과 법무교관이 있다. ‘법무기관(法務技官)’은 공무원시험의 심리직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된 심리전문직으로 수용된 소년에 대한 심리검사와 면접을 한 후 감별결과 통지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법무교관(法務敎官)’은 소년원, 소년감별소, 형사시설(형무소, 소년형무소 및 구치소)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원을 말한다. 법무교관은 폭넓은 시야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소년의 개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사회복귀를 하도록 하기 위해 세심한 지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감별소가 가정재판소의 관호조치결정에 따라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비행의 원인해명이나 처우방침의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시설이므로, 이곳에서 법무교관은 소년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면접이나 행동관찰을 실시하고, 법무기관(심리)과 협력하여 소년의 문제성이나 그 개선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가정재판소의 재판이나 소년원·보호관찰소 등의 지도에 활용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학습지원, 일반적인 교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교관은 일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정직봉급표(1)에 비추어 12%정도 급여수준의 높은公安직봉급표(2)(2015년 현재 동경도특별구 내에 근무하는 경우 초임은 233,640엔)가 적용되고 있다. 주당 근무시간은 38시간 45분(주2일제)이고, 주로 교체제 근무(낮근무와 주야간근무)를 한다. 휴가제도는 연차휴가(연간 20일간) 외에 질병휴가, 특별휴가(여름휴가, 결혼·출산에 따른 휴가 등) 및 간호휴가 등이 있다.¹⁴⁾

다.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소년감별소의 역할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부쳐진 소년으로 20세 미만자를 말하는데, 범죄소년, 촉법소년(14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따르지 않는 성벽 등의 사유가 있고, 소년의 성격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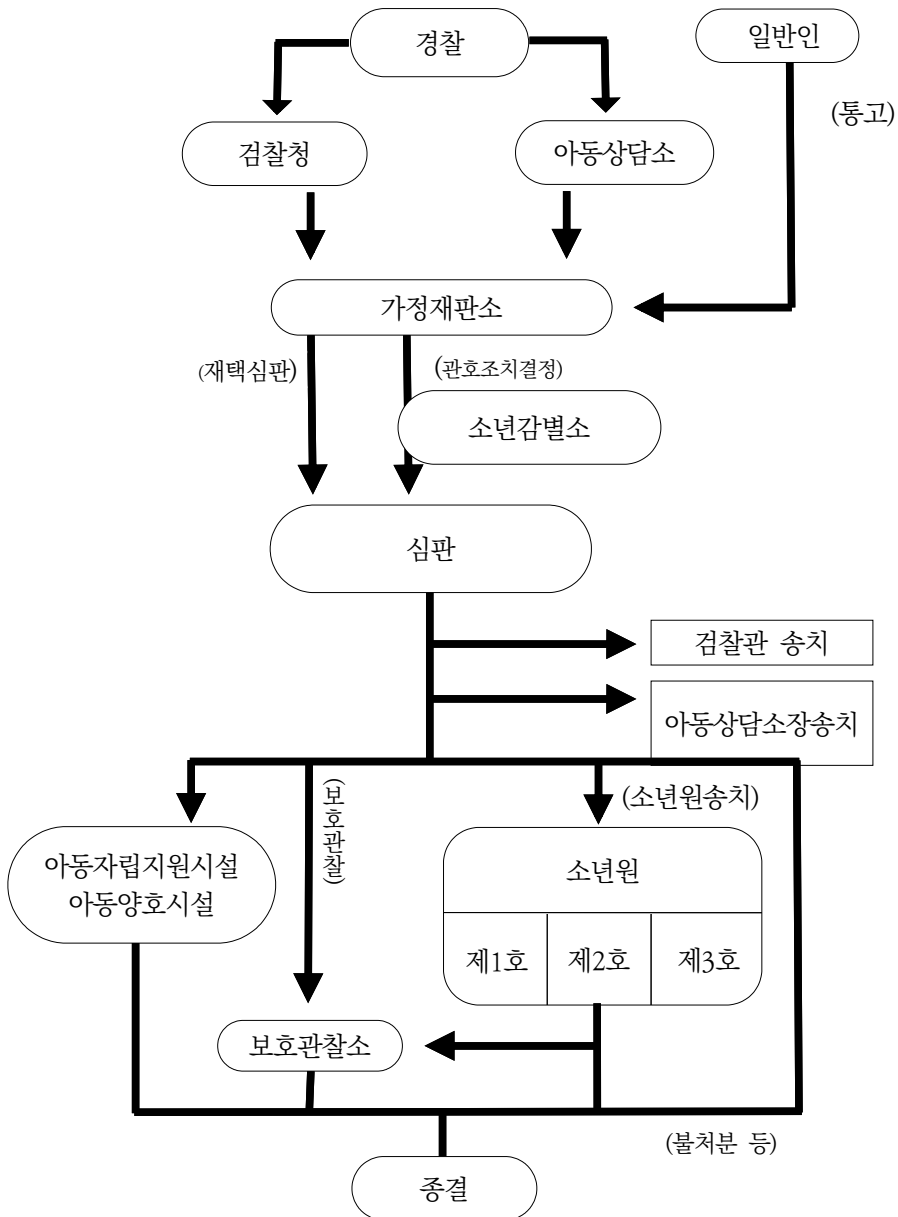
14) 법무교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i12.html 이하 참조.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죄를 범하거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이 이에 해당된다(소년법 제3조 제1항).

소년보호사건은 일반인의 통고,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보고, 경찰·검찰로부터의 송치, 아동상담소장의 송치·통고에 의해 가정재판소에 송치된다. 가정재판소는 보호사건이 송치되면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필요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고, 심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가정재판소조사관의 관호 또는 소년감별소 송치라는 관호조치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가정재판소는 소년감별소에서 소년에 대한 감별을 요청할 수도 있다.

소년감별소에서는 가정재판소부터 송치되어 수용된 소년을 수용하고 가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가정재판소에서 할 조사 및 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감별을 한다. 소년감별소 송치 관호조치의 수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1주간 갱신할 수 있다. 일정 사건에서는 다시 2회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장 8주까지 소년감별소에 수용된다(소년법 제17조 제3항, 제4항). 소년감별결과를 가정재판소에 통지하면 가정재판소조사관의 조사에도 활용된다. 이후 가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비행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보호처분은 비행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년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호시설 송치(소년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소년원송치(소년법 제24조 제1항 제3호)를 할 수 있다. 가정재판소는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치지 않는 경우에도 결정으로써 아동상담소장 등 송치(소년법 제18조), 불처분(소년법 제19조), 검찰관 송치(소년법 제20조), 심리불개시(소년법 제23조) 등을 할 수 있다.



[그림 4-1] 일본소년심판 및 처우절차

출처: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i06.html, 2015.10.23.
최종검색)

3. 소년감별의 내용

가. 소년감별의 목적

소년감별소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감별대상자의 식별을 적절하게 하며, 재소자의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밖에 자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관호처우를 하고 비행 및 범죄의 억지에 관한 원조를 적절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소년감별소법이 제정되었다.¹⁵⁾

나. 소년감별의 대상

소년감별은 소년감별소장이 가정재판소, 지방갱생보호위원회, 보호관찰소장, 아동자립지원시설장, 아동양호시설장, 소년원장 또는 형사시설의 장으로부터 감별요청을 받은 ① 보호처분(갱생보호법상 호실 수용 및 소년원법상 수용계속조치를 포함한다.) 또는 지사아동상담소장 송치조치에 관한 사건의 조사 또는 심판을 받는 자, ② 보호처분의 집행을 받는 자, ③ 징역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로 20세 미만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수용·관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는 ① 관호조치 등에 의해 수용된 피관호 재소자, ② 구류 등에 의해 수용된 미결재소자, ③ 소년원의 재원자를 재감별하기 위해 수용되는 재원 중 재소자, ④ 기타 지방갱생보호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라 수용된 각종 재소자이다(제4조).¹⁶⁾

15) 소년감별소법 전문은 <http://law.e-gov.go.jp/htmldata/H26/H26HO059.html> 참조.

16) 새롭게 제정된 소년감별소법 제2조 정의규정에 따르면 감별대상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별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1호), 재소자란 소년감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피관호재소자는 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관호조치(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동호의 관호조치라고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가 집행되어 소년감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 또는 동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년감별소에 구치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미결재소자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소년감별소에 구류(소년법 제4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구류된 경우도 포함. 제125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동일하다)되어 있는 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동법 제224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소년감별소에 구치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재원중 재소자란 소년원법 제36조 제2항 또는 제1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년감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5호). 각종재소자란 재소자로서 피관호재소자, 미결재소자 및 재원 중 재소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제2조 제6호).

다. 소년감별의 종류

일본의 소년감별은 수용위탁의 형태인 ‘관호조치’에 의해 소년의 신병을 수용하여 하는 감별(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이 대표적이다. 소년감별소의 소재지에서 가정법원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소년의 신병을 수용하는 것이 소년이나 그 가족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택감별’을 실시할 수 있다. 소년원장·지방경찰보호위원회·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의뢰하여 하는 감별도 있다(소년원법 제16조). 소년원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 다른 소년원으로의 이송, 수용 계속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감별’도 있다. 그밖에도 일반가정, 학교 등에서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감별도 있다.

라. 소년감별 처리절차

소년감별은 입소하면 소년감별소장은 재소자에게 ① 보건위생 및 의료에 관한 사항, ② 물품의 대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③ 금품의 취급에 관한 사항, ④ 서적·잡지 기타 문서·도면·신문지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⑤ 종교상 행위, 의식행사에 관한 사항, ⑥ 규율 및 질서준수사항, ⑦ 면회 및 서신 수발에 관한 사항, ⑧ 구제신청에 관한 사항, ⑨ 고충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지한다(소년감별소법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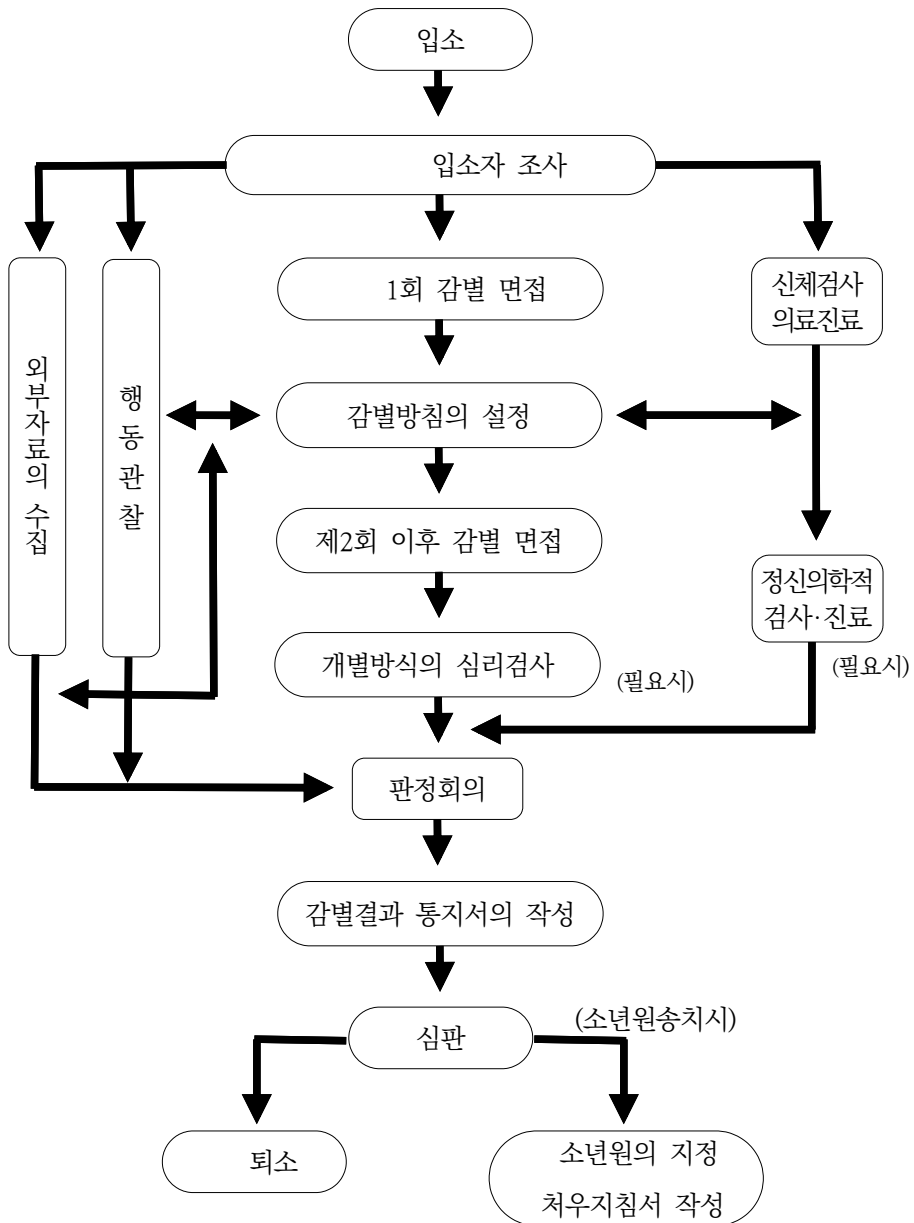
입소 직후 초기면접을 통해 소년의 현재 정신상태, 비행내용, 가정과 생활력 등을 파악하여 소년감별소 내에서의 처우상 유의점과 감별계획에 대한 중요사항을 확인한다. 성격검사, 태도검사 등 집단심리검사에서 얻은 정보와 소년감별소 내에서의 행동관찰 결과, 외부자료를 통해 감별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따라 면접, 정신의학적 검사, 개별심리검사 등이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참고인 등의 면접, 2회 이상의 검사 결과, 행동관찰 결과 등을 종합해 소년감별소장 주재 하에 관련 직원이 함께 모여 소년의 자질 특성 및 문제점, 소년 비행 원인, 재비행 위험성 등을 검토하고 토의하는 판정회의가 열린다. 검토결과 ① 보호불요, ② 재택보호(전문사회복지사에 의한 보호, 비전문가에 의한 보호), ③ 수용보호(소년원, 초·중등 특별 교호원 및 양호시설 등), ④ 보호 부적당(정신장애 등을

이유로 보호조치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나 검사에게로의 송치가 적절한 경우) 등이 결정된다. 판정회의는 보호처분 결정의 자료가 될 사항뿐만 아니라 관호처분의 방침에 관한 사항, 소년원의 처우·지도·훈련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장래 보호방침에 관한 권고사항 등도 함께 판정한다.

소년감별소장은 판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감별결과 통지서를 가정법원에 송부한다. 감별결과 통지서에는 ① 소년의 일반적인 신상사항, ② 신체검진 결과로 발육상태, 신장, 체격, 체중, 건강상태, 질병이나 기타 이상사항, ③ 지능지수, 성격, 정신장애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④ 감별소에서의 행동관찰 내용, ⑤ 종합소견으로서 소년의 소질·환경·비행성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해결법을 제시하고 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우지침을 제시하며, 필요한 기관 또는 보호자나 직장에서 처우지침 등을 담으며, 소년의 장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예후도 포함한다.¹⁷⁾

17) 원혜옥/강경래/정희철, 앞의 책, 53~54면.



[그림 4-2] 소년감별절차도

출처: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06.html, 2015.10.23.
최종검색)

4. 소년분류심사 관련법률: 소년감별소법

가. 소년감별소법의 제정배경

과거 소년감별에 관한 내용은 소년사건의 사법적 처리에 관해서는 「소년법」에서, 처우에 관해서는 「소년원법」, 「소년감별소처우규칙」에 따라 규율되고 있었다. 소년법 제9조에서 “전조의 조사는 가능한 소년, 보호자 또는 관계인의 행장, 경력, 소질, 환경 등에 관하여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 지식 특히 소년감별소의 감별 결과를 활용해 조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사의 방침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소년감별소에 관한 규정은 소년원법 제16조에서 “소년감별소는 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송치된 자를 수용하는 것과 함께 가정법원이 행하는 소년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따르는 보호처분 및 징역 또는 금고의 언도를 받은 16세 미만 소년에 대한 형의 집행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 지식에 따라 소년의 자질감별을 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감별에 관한 사항은 소년감별소처우규칙 제17조에서 “감별은 소년의 소질, 경력, 환경, 인격과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소년의 교정에 관하여 최선의 방침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율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소년원법은 소화24년에 시행된 이래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원자·재소자의 권리의무관계나 직원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

2009년 4월에 히로시마(広島)소년원에서 부적절 처우사안이 발생하였다. 히로시마 소년원 직원 5명이 재원자 50여명에 대하여 100여건의 폭행 등 부적절 처우를 한 것이 소년교정에 충격을 가져왔다. 5명의 직원이 모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2명에 대하여는 실형에 처해졌다. 법무성은 이 사태를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소년시설의 직원에 의한 부적절 처우의 방지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대신 하에 ‘소년교정을 생각하는 유직자회(少年矯正を考える有識者会議)’를 설치하였다. 유직자회의에서는 1년간 15회에 걸쳐 소년교정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하고, 2012년 12월에 『소년교정을 생각하는 유직자회의 제언(少年矯正を考える有識者会議提言』 5가지 즉, ① 소년 인격의 존엄을 지키는 적절한 처우의 전개, ② 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발달을 하도록 하기 위해 유효한 처의 전개, ③ 고도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구비한 인재의 확보·육성, ④ 적정하고 유효한 처우를 유지하기 위한 물적 기반정비의 추진, ⑤ 적정하고 유효한 처우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정비의 추진을 법무대신에게 제출하였다.¹⁸⁾

2012년 「재범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2013년 「‘세계-안전한 일본’ 창설전략」 등을 토대로 소년의 특성에 따른 처우를 실시하고, 사회에 개방된 시설운영을 도모하며, 재범·재비행 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¹⁹⁾ 이에 따라 신소년원법과 소년감별소법을 분리하여 소년감별소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조사의 충실을 위한 소년감별소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5월 27일 소년감별소법 및 신소년원법이 중의원 회의에서 가결되고, 2014년 6월 4일 소년감별소법과 신소년원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립되었다. 2014년 6월 11일부터 동법이 법률 제59호로 공포되고, 2015년 6월 1일 소년감별소법 및 신소년원법이 시행되었다.

나. 2014년 소년감별소법을 통한 변화

2014년에 제정된 소년감별소법은 기존 소년원법상의 감별에 관한 내용 가운데 세 가지 관점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첫째, 소년감별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한 감별을 실시하고, 재소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감별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에서 비행 및 범죄방지에 관한 원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대상소년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해 면회, 서신, 전화 등 외부교통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소년의 권리·의무를 보장하고, 규율질서 유지조치를 상세히 규정하여 직원의 권한을 강화하며, 보건·의료상황을 사회일반 의료수준으로 명확히 하고, 운동기회를 보장하며, 구제신청 등 불복신청제도를 정비하였다. 셋째,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년감별소 시찰위원회를 두고, 소년감별소의 의견청취 및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8) 法務省矯正局, 新しい少年院法と少年鑑別所法, 2014, 6-7頁.

19) 법무성 교정국 설명자료(http://www.moj.go.jp/kyousei1/kyousei03_00019.html, 2015년 10월 13일 최종검색).

1) 소년감별소의 기능강화

① 전문적 지식·기술에 기반한 감별 실시

구소년원법에서는 ‘자질의 감별(구소년원법 제16조)’과 가정재판소, 형사시설의 장, 소년원장, 지방갱생보호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장 이외의 자로부터 요구에 따른 ‘일반소년감별(구소년원법 제16조의2)’을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구소년원법 제16조의 자질감별은 ‘감별’로, 구소년원법 제16조의2의 일반소년감별은 ‘지역사회에서 비행 및 범죄의 방지에 관한 원조업무’로 변경되었다.²⁰⁾

이에 소년감별소법에서의 감별은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 지식 및 기술에 기초하여 감별대상자에 대하여 그 비행 또는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자질상 환경상 문제가 있는 사정을 명확하게 한 다음, 그 사정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대상자의 처우에 이바지하는 적정한 지침을 제시’하도록 한다(제16조 제1항). 또한 감별을 위하여 조사하여야 할 사항, 조사방법, 감별을 요청하는 자, 소년원송치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별(제18조)도 규정하고 있다.

감별을 위해 조사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대상자의 성격, 경력, 신상상황 및 발달정도, 비행상황, 가정환경 및 교우관계, 재소중의 생활 및 행동상황 등이다(제16조 제2항). 감별방법은 감별을 요구한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는 방법에 따르면, 조사의 필요에 따라 감별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기타 참고인과의 면접, 심리검사 기타 검사, 공무소 등에의 조회 등을 포함한다(제16조 제3항).

② 재소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실시

재소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생활태도에 관한 조언과 지도, 학습 등의 기회 제공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년감별소장은 재소자가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소자에 대하여 그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생활태도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 및 지도를 하는 것으로 한다(제28조). 또한 소년감별소장은 재소자의 감정을 풍부히 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소자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학습, 문화활동 기타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활동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 및 원조를 하도록 한다. 학교교육법에 규정되어

20) 法務省矯正局, 新しい少年院法と少年鑑別所法, 2014, 224頁.

있는 의무교육이 종료되지 않은 재소자에 대하여는 학습기회가 부여되도록 특히 고려해야 한다(제29조).

③ 지역사회에서 비행 및 범죄방지에 관한 원조 실시

구소년원법에서의 ‘일반소년감별’은 ‘지역사회에서의 비행 및 범죄방지에 관한 원조’로 변경되었다. 소년감별소장은 지역사회에서 비행 및 범죄의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비행 및 범죄에 관한 각 분야의 문제에 대하여 소년, 보호자 및 기타의 자로부터 상담,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제공, 조언 기타 원조를 하면서, 비행 및 범죄의 방지에 관하여 기관 또는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술적인 조언 및 기타 필요한 원조를 한다(제131조).

2) 적절한 처우 실시

① 외부교통에 관한 소년의 권리·의무 명시

소년시설에 수용되면 외부인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면회, 서신교환, 전화 등에 대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뿐이다. 그러나 사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재소자로서 외부사회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외부교통이 이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재소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교육에서는 재소자가 입소 전의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소년원법에서는 외부교통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구소년감별소 처우규칙 제38조(소년에 대하여 면회를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근친자, 보호자, 부첨인 기타 필요로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제40조(통신의 수발은 감별소 내의 규율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한다)에만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제정된 소년감별소법에서는 사회복귀를 위한 외부교통의 중요성,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므로 소년의 권리의무로써 면회, 서신, 전화 등 외부교통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재소자에 대하여 외부교통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하되, 면회나 서신수발이 허용되지 않는 상대방의 범위와 제한되는 경우의 요건 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피관호재소자의 면회는 ① 피관호재소자의 보호자 등, ② 혼인관계의 조정, 소송수행, 수학 또는 취업의 준비 기타 피관호재소자의 신분상법률상교육상직업상 중대한 이해에 관한 용무처리를 위한 면회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한 면회를 허용한다. 이외에도 면회신청을 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생활 영위에 필요한 원조를 받는 것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고, ① 면회로 소년감별소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결정을 발생할 우려가 없는 때, ② 면회로 피관호재소자의 보호사건·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때, ③ 면회로 피관호재소자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없는 때, ④ 면회로 피관호재소자의 감별의 적절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때 허용할 수 있다(제80조).

피관호재소자의 서신수발은 취지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로부터의 서신 수발을 허용하고 있다(제92조). 재원중인 재소자에 대하여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될 때 전화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105조).

② 규율 및 질서유지 조치를 통한 직원 권한의 명확화

구소년원법에서는 소년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소년감별소법에서는 집단생활을 하는 재소자의 안전으로 질서 있는 생활 및 처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 규율 및 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년감별소에서 규율 및 질서유지는 재소자의 관호처우 및 감별의 적절한 실시를 확보하고, 기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제72조). 규율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으로는 범죄행위를 하지 말 것, 타인에 대하여 난폭한 언동을 하거나,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말 것, 소년감별소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자기 또는 다른 재소자의 수용확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지 말 것, 소년감별소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지 말 것, 소년감별소 내의 위생 또는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금품에 대하여 부정한 사용·소지·수수 기타 행위를 하지 말 것, 이외 소년감별소의 규율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제73조). 그밖에 도 규율 및 질서유지를 위해 신체검사(제74조), 제지를 위한 조치(제75조), 수감의 사용(제76조), 보호실예의 수용(제7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보건위생·의료의 충실

재소자의 경우 행동의 자유 제한과 생활 전반의 자유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생에 관한 배려가 필요가 있다. 재소자의 심신 상황을 파악하고 건전한 심신 성장을 도모하며, 시설내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 일반의 보건위생 및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보건위생과 의료조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에 소년감별소법에서는 운동 기회의 보장(제31조), 목욕(제33조), 건강진단(제34조)뿐만 아니라 진료기회를 보장하면서(제36조), 지명의(외부의사)에 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7조).

④ 불복신청제도 정비

구소년원법에서는 불복신청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구소년감별소처우규칙에서도 이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고, 재소자와의 수시면접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재소자의 의향을 파악하는 운용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2010년 3월부터 2010년 2월 12일부 법무성 교소 제603호 교정국장통달 「재소자에 의한 소년감별소장에 대한 신청의 취급에 대하여」를 기초로 소년감별소에서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소년감별소장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년감별소법 제109조에 따라 법무대신에 대한 구제신청 및 고충 제도를 신설하였다(제109조, 제110조, 제118조).

3)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① 시설 투명화를 위한 시찰위원회 설치

소년감별소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년감별소시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시찰위원회는 소년감별소를 시찰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소년감별소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7조). 시찰위원회는 위원 7인 이내의 조직으로 하고, 위원은 인격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소년감별소의 운영개선 향상에 열의를 가진 자 중에서 법무대신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재임도 가능하다. 위원은 비상근이다(제8조)

소년감별소장은 소년감별소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소년감별소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위원에 의해 소년감별소의 시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감별소장에게 위원에 의한 재소자의 면접 실시에 대하여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소년감별소장은 시찰 및 재소자와의 면접에 대하여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하고, 제7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소자가 위원회에 대하여 제출한 서면은 검사해야 한다(제9조). 법무대신은 매년 위원회가 소년감별소장에 대하여 낸 의견 및 이를 받은 소년감별소장의 강구한 조치내용을 취합하고 그 개요를 공표해야 한다(제10조).

② 적절한 운영을 위한 의견청취 및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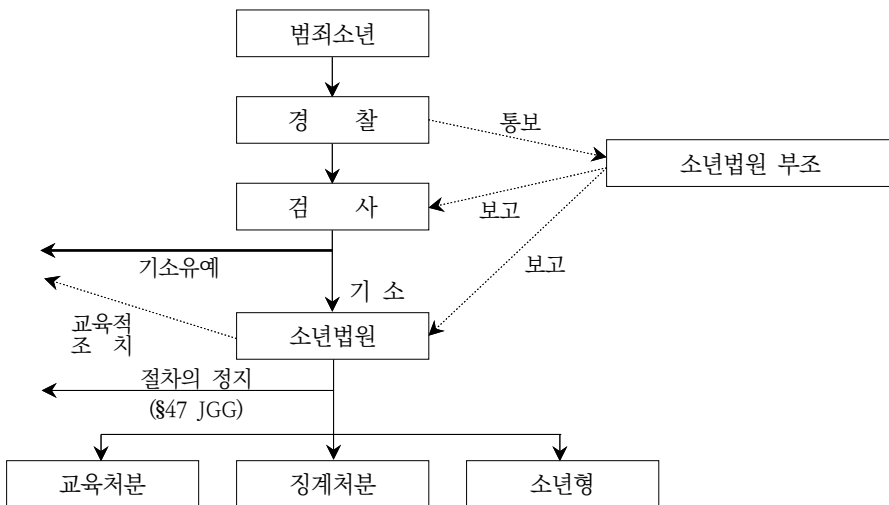
소년감별소장은 소년감별소의 적절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견을 관련된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의 직원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청취해야 한다(제6조). 소년감별소장은 소년감별소의 참관 신청이 있는 때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허용할 수 있다(제12조).

제2절 독일의 소년분류심사

독일은 소년보호처분과 소년형사처분이 분리되지 않고 소년형법적 성격의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체계와 다르다. 독일의 범죄소년의 처리절차는 보호처분절차와 일반형사절차가 분리되지 않고 소년절차(Jugendverfahren)로 통합되어 있는 단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범죄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독일은 검사가 기소법정주의 하에서 원칙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모든 사건을 소년법원에 기소한다. 물론 검사는 기소법정주의에 대한 예외로 경미한 소년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고(독일 형사소송법 제153조, 제153조a), 일정한 기관 또는 교사, 부모 또는 친척 등의 개인에 의해 적절한 교육적 조치가 가능한 경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독일소년법원법 제47조).²¹⁾

21) 이승현, 소년보호이념과 선의권에 관한 검토,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8, 136면.

독일의 소년사법은 검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심리할 수 있다(제2조, 제45조, 제46조). 절차는 예비절차(Vorverfahren)와 심판절차(Hauptverfahren)로 나누어지며, 소년법원은 범죄소년에 대하여 범죄와 책임성을 확정함과 동시에 소년의 요보호성과 교육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교육처분(Erziehungsmaßregeln), 징계처분(Zuchtmittel), 소년형(Jugendstrafe)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4-3] 독일의 소년사건처리절차도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소년분류심사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분류심사원의 진단기능을 하는 예비절차, 소년법원보조인제도와 구금기능을 하는 조사를 위한 미결구금이 있다. 이하에서는 두 기능에 관련된 예비절차, 소년법원보조인제도, 미결구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예비절차(Vorverfahren)

독일은 공판 전 예비절차에서 조사절차가 진행된다. 예비절차에서는 소년의 생활관계, 가족관계, 생활력, 성장과정 등에 대한 환경 조사를 하고 지능, 재능, 의지, 소질, 가치관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주로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는 경찰과 검사가

하지만, 인격조사는 소년법원보조인이 담당한다.

소년사건에 대한 조사절차는 일반형사소송법(StPO) 제151조~200조에 따라 진행된다. 소년사건에서는 별도로 소년법원법 제43조~4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 소년법원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소송 개시 후 가능한 한 즉시 피의자의 심리적·성격적 특징을 판단하기 위해 생활환경, 가정환경, 성장과정, 지금까지의 피의자의 소송과 행동 등이 조사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친권자와 법정대리인, 학교, 교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인격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고인의 성장배경이나 소송을 위한 중요한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소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전문감정인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하여 전문감정인을 통한 조사도 허용하고 있다.

예비절차는 주로 소년검사(Jugendstaatsanwalt)가 주재하나 실제로 소년법원보조인(Jugendgerichtshilfe)이 실제적 조사역할을 담당한다.

예비절차에서의 조사결과 검사가 범죄소년에게 결정에 의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년에게 노동의무를 부과하거나 훈계할 것을 소년재판관에게 신청하며,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년에게 기소를 유예할 수 있고 이때에는 예비절차로서 종료된다(제45조).

2. 소년법원보조인제도(Jugendgerichtshilfe)

소년법원보조인제도는 소년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소년법원법이 소년범죄에 있어서 특별하게 소년을 원호하고 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²²⁾

소년법원법 제43조와 제109조에 따라 소년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년법원보조인이 예비절차에서 생활관계, 가족관계, 성장과정, 심리적·정신적·성격적 특성 등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고, 동법 제73조에서도 “소년의 발육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범죄생물학적 조사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22) 이춘화,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보호 제16조, 2004, 55면.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전문가에 의한 조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년법원법 제38조에서는 소년법원보조인이란 소년보호단계와 함께 소년청(Jugendamt)을 중심으로 교육적·사회적·보호적 입장에서 폭넓은 보조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라고 보고 있다.

소년법원보조인은 소년청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소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격조사, 환경조사 등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소년법원과 수사기관을 보조하면서 소년형사사건 등 재판절차에서 교육적·사회적·후견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다.²³⁾

3. 조사를 위한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

우리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정기간동안 구금의 기능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 소년법원법에서도 소년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형 선고 이전에 조사를 위해 일정기간 미결구금 단계를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구분되기 때문에 보호절차에서는 소년법에 따른 소년분류심사를, 형사처분에서는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진다. 반면, 독일의 경우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형태의 소년분류심사는 없고, 소년형이 예상되는 소년에 대하여 신변확보와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미결구금제도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²⁴⁾

소년법원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미결구금이 교육을 위한 일시적 교육명령(제71조 제1항)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경우에만 한하여 부과되고 집행될 것을 요구한다.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항 제2문의 비례성 원칙에 대한 심사 에 있어서 그 집행이 소년에게 특별한 부담을 주는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즉, 소년에게 가해지는 침해와 침해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구금이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금 이외의 다른 처분으로는 형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2조 제1항 제2문). 그리고 구속되는 경우 구속영장에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일시적 수용과 같이

23) 오영근,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100면.

24) 원혜옥/강경래/정희철, 앞의 책, 62면.

다른 처우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미결구금이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독일에서 소년미결구금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도주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나, 소년사건처리절차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저연령 소년구금의 경우 구금에 따르는 부작용과 구금요건인 도주의 우려를 비교하여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6세 미만의 저연령 소년에 대하여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절차를 기피한 적이 있거나 수용시설에서 도주하려고 한 경험이 있거나, 확실한 주거 또는 거주지가 없을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2조 제2항).²⁵⁾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동일 조건 하에서도 소년보호시설에 일시 수용하는 처분(동법 제71조 제2항)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후 수용명령을 구속영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동법 제72조 제4항). 일시수용처분 부과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소년 미결구금의 경우 성인과 달리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은 소년에게 장기간 구금이 극도의 정신적 피해와 사회, 교육 및 직업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독일의 학자들은 소년미결구금상태에서의 수용은 소년형에 따른 소년교도소 수용과 다를바가 없고, 정신적 쇼크를 주는 혼란상태를 야기하는 것으로, 시설 수용으로 인해 청소년의 정신발달에 지속적인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⁷⁾ 또한 미결구금상태에서의 교육은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6조에 위반한다는 비판도 있다. 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녀를 방임한 경우나 부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는데, 미결구금상태에서의 소년에 대한 교육은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부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²⁸⁾ 소년이 미결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소송절차는 특별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요구한다(제72조 제5항).

25) 원혜옥/강경래/정희철, 앞의 책, 64-65면.

26) 원혜옥/강경래/정희철, 앞의 책, 68면.

27) Schaffstein/Beulke/Swoboda, Jugendstrafrecht, Kohlhammer, 2015, S.223.

28) 원혜옥/강경래/정희철, 앞의 책, 71-72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은 소년에게 특별한 독립시설 또는 구금시설 내 최소한 특별히 분리된 장소 또는 소년구금시설에서 집행해야 하며(동법 제93조 제1항), 미결구금의 집행은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동법 제93조 제2항). 소년법원보조인(Jugendgerichtshilfe), 소년피의자가 보호관찰 감독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관(Bewahrung), 소년피의자가 보호관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경우 보호관(Betreuungshelfer), 교육보조인이 선임된 경우 교육보조인(Erziehungsbeistand)에게는 변호인과 동일한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동법 제93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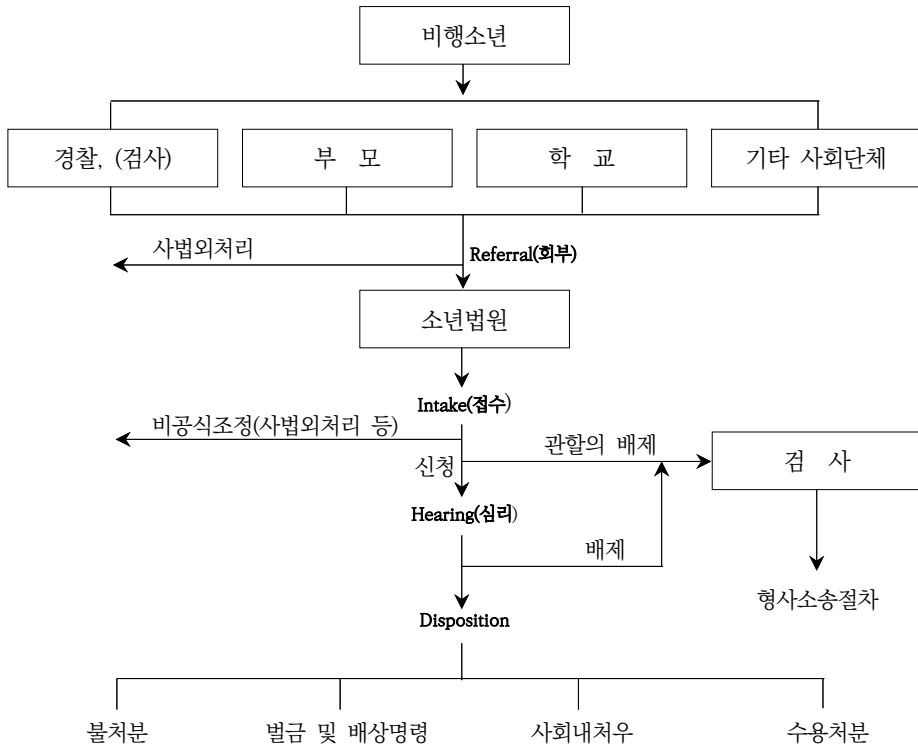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제146조 제1항에서 과밀수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거실에는 정해진 수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제3절 미국의 소년분류심사

미국은 우리의 소년분류심사와 동일한 형태의 절차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의 절차가 초기면접(Intake)과 처분심리(Disposition Hearing)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초기면접과 처분심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소년분류심사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초기면접(Intake)

미국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일차적 처리는 경찰의 재량하에 이루어진다. 비행 또는 우범소년을 체포한 경찰은 범죄의 성질이나 소년의 비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신병구속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석방하거나, 재판 외의 처리절차에 회부(Referral)하는데, 사회봉사기관에 위탁하거나 복지기관에 위탁하기도 한다.



[그림 4-4] 미국의 소년사법처리절차도²⁹⁾

경찰이 소년사건을 정식 사건화하여 소년법원에 보내면 소년법원은 접수한 사건에 대해 어떤 소년을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분류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절차가 바로 초기면접(Intake)절차이다. 이 절차는 소년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소년법원의 공식적인 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소년법원의 특유한 절차이고 예비적 준비절차(preliminary screening process)에 해당한다.³⁰⁾ 이 단계에서 초기면접관이 소년에 대한 면접과 조사를 통하여 해당소년이 판사의 심리까지 거칠 필요가 있는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소년이 정서적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정신병적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결정하는 소년법원의 특유한 절차이다.³¹⁾

29) 이승현, 소년보호이념과 선의권에 관한 검토,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8, 128면.

30) 김양곤, 주요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51면.

31) 김준호/이동원, 비행소년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30면.

초기면접절차에 대하여는 미국 표준소년법원법(The Uniform Juvenile Court Act of 1968) 제17조 (a)항에서 “소년이 법원에 송치되거나 법원이 지정한 구금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위탁되었을 때에는 법원의 초기면접관 또는 법원관리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제14조에 의한 구금 또는 일시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시 소년을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기면접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소년법원 산하 보호관찰소 조직의 일부인 초기면접관(Intake Officer)이 한다. 초기면접관은 범죄의 내용에 관해 심사를 하는데 소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가 현재 어떠한 유형의 보호관찰 하에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심사를 하고, 소년 및 그의 부모와 관계를 맺고 그의 품행, 학교기록, 병력, 심리적 병력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회적 심사도 함께 한다.³²⁾ 초기면접관은 청구의 타당성 있는 이유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하고 관련 소년의 배경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소년과 부모에 대하여 비공식적 심리를 하거나 경찰변호인과 사건에 관한 토의를 하기도 한다. 심사 결과 초기면접관은 소년을 그의 부모에게 돌려보낼지 또는 어떤 유형의 보호관찰을 부과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형사법원으로서의 이송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후 초기면접관은 해당소년이 인계된 이후 48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구금여부를 결정하는 구금심리(Detention Hearing)를 개최한다. 초기면접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소년의 관할법원을 판단하고, 최종처분을 받기까지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구금심리를 통해 초기면접관은 ① 사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고 가정으로 소년을 돌려보냄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 ② 사건을 계속 다루되 구치소에 수용하지 않고 집에 돌려보낸 상태에서 법원의 절차를 진행하는 결정, ③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법원의 절차를 진행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³³⁾

하지만, 초기면접은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봉사 및 행동과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중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 법원이 명한 자 등이 한다. 이는

32) 이춘화,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보호 제16호, 2004, 48면 재인용(Albert R. Roberts, Juvenile Justice, The Dorsey Press, 1989, pp.359-363).

33) 김준호/이동원, 앞의 책, 30-31면.

공개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법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불과하다.³⁴⁾

주에 따라 초기면접의 형태와 관련기관이 조금씩 다르다. 통상의 성인사건이 법원의 심리 후에 성인보호관찰관이 개입하지만, 텍사스 주의 경우 소년법원에 의뢰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소년보호관찰은 소년사건이 경찰 등의 법 집행기관이나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즉시, 즉 소년법원의 심리 이전에 소년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인보호관찰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 비행이나 요보호행위로 인해 소년사법의 제재를 받는 소년에 대해 소년보호관찰소가 초기면접기능을 한다. 이 단계에서 ① 의뢰된 사건이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할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해당사건을 소년법원의 심리를 거치는 공식적인 과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③ 법원의 심리 이전에 사건을 비공식 과정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³⁵⁾

초기면접을 통해 정식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사건을 선별해내고, 법원이 조기에 소년과 그의 부모, 경찰관련기관 종사자의 태도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준다.³⁶⁾ 또한 초기면접은 소년법원에서의 공식적 처우절차보다는 비공식적 다이버전에 의해 조기에 사건을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식적 사법절차는 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사전에 걸러내어 소년법원이 중대한 사건에 보다 집중하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처분심리(Disposition Hearing)

처분심리(Detention Hearing)는 치안판사가 소년법원의 정식심리를 필요로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치안판사는 처분심리를 통해 사건을 기각하거나 정식재판 전에 심리를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미국 표준소년법원법 제28조 (a)항에서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34) Albert R Roberts/Wesley T Church, II, and David Springer, *Juvenile Justice Sourcebook: Past, Present, and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124.

35) Margaret K. Rosenheim, *A Century of Juvenile Just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pp.348-350.

36) Clifford E. Simonsen, *Juvenile Justice in America*, Macmillan Coll Div, 1991, p.284.

따라 청문회 고지서가 발부되었다면 교정처우, 재활교육, 처분의 필요에 따라 청문회 이전에 법원이 법원에 소속된 보호관찰관, 법원사무관, 또는 법원이 정한 자로 하여금 소년·부모·환경 기타 처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사회조사를 하고 문서로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만일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34조 규정에 의한 청문회 고지가 발부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동법에 따라 “청문회 고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소년이 비행을 하였거나 우범소년 또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소년이라는 것은 확인하기 전까지 사회조사와 문서 보고를 지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9조 (a)와 (b)항에서는 “공소내용에 대한 증언을 청취한 뒤 법원은 소년이 비행소년 또는 우범소년인지 여부, 공소내용이 해당소년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공소를 제기한다. (중략) 소년이 비행 또는 우범행동을 하였다고 할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법원이 발견한 경우 즉시 절차를 진행하고 소년에게 처우나 재활교육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연기하고 그에 따른 사실조사와 공소를 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심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보호관찰소이다. 범죄사실 확인단계를 거쳐 처분결정을 하기 위한 처분심리 단계에 돌입한다. 유죄가 확인되면 사건에 지정된 보호관찰관이 조사자료를 준비하여 처분심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처분심리보고서에는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양육방식, 학교생활과 성적, 성숙도와 책임감 정도, 친구관계,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 비행의 동기 분석, 인성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³⁷⁾ 이 보고서는 해당소년 및 부모, 소년의 변호인, 검사 등에게도 사본이 전달된다. 처분심리 결과 시설 수용처분을 받게 될 소년에 대하여는 시설수용을 위한 분류심사 업무 담당기관에도 보고서가 송부된다.

처분심리 결과 소년의 범죄나 비행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신청의 기각을 하나, 비행이 경미하거나 기타의 사정이 있는 경우 불처분결정을 한다. 그밖에 보호관찰을 하거나 소년원 기타 보호시설, 기관 또는 의료시설에 위탁하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37) 김준호/이동원, 앞의 책, 31면.

제4절 국제인권기준상의 최소구금기준 분석

1.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용기준 검토

가. 과밀수용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UN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제30조에서는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소년의 인원은 개별처우가 가능한 정도의 소수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³⁸⁾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9조 제1항은 독거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취침시설이 독거방(Cell) 또는 단독실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각 수용자는 야간에는 1명에게 독거방 또는 단독실이 제공되어야 하고, 일시적인 과밀수용 기타 특별한 이유로 중앙 교정행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독거실 또는 단독실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다.³⁹⁾ 1인 1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수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참회를 통해 개선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⁴⁰⁾

그리고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86조에서는 “미결수용자는 기 후와 관련된 지방적인 별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거실에서 혼자

38) See Rule 30 of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Open detention facilities for juveniles should be established. Open detention facilities are those with no or minimal security measures. The population in such detention facilities should be as small as possible. The number of juveniles detained in closed facilities should be small enough to enable individualized treatment. Detention facilities for juveniles should be decentralized and of such size as to facilitate access and contact between the juveniles and their families. Small-scale detention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integrated into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 of the community."

39) See Rule 9(1) of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Where sleeping accommodation is in individual cells or rooms, each prisoner shall occupy by night a cell or room by himself. If for special reasons, such as temporary overcrowding, it becomes necessary for the central prison administration to make an exception to this rule, it is not desirable to have two prisoners in a cell or room."

40) 조병인/정진수/김종정,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0면.

취침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¹⁾ 이는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 다른 수용자와 같은 여건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⁴²⁾ 실제 일본의 경우 이 원칙에 따라 소년감별소에서 1인 1거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럽형사시설규칙(European Prison Rules)」 제2부 구금조건에 서도 인권적 처우를 위한 최소요건들이 수용과밀로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⁴³⁾

나.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자유박탈 금지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7조 (b)호 제1문에서는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아동의 자유박탈을 금지”하고 있다.⁴⁴⁾ 불법적(unlawfully)인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고, 자의적(arbitrarily)인 것은 부당하거나 공평하지 않거나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때의 자유의 박탈은 사법기관, 행정기관, 기타 다른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해 어떠한 형태든지 구금 구속되거나 개인을 공사적인 구금 장소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의 박탈은 보호를 목적으로 하든 교육적인 목적이든 간에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아동을 기관에 있도록 하는 것이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⁴⁵⁾

다. 최후의 수단으로써의 미결구금

「UN아동권리협약」 제37조 (b)호 제2문에서는 “아동의 체포, 구금, 구속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써 최소한의 적절한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져

41) See Rule 86 of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Untried prisoners shall sleep singly in separate rooms, with the reservation of different local custom in respect of the climate"

42) 조병인/정진수/김종정, 앞의 책, 12면.

43) See PartII(Conditions of imprisonment) of the European Prison Rules.

44) See Rule 37(b)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o child shall be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unlawfully or arbitrarily"

45) 장민영, “우리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법상 아동의 자유박탈에 관한 기본원칙들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2014, 281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를 위한 UN기준(United Nation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Deprived of their Liberty) 제17조에서도 교육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아동의 자유박탈은 미결구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아동에 대한 미결구금 역시 최후 수단으로써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될 필요가 있고,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⁴⁷⁾

라. 자유박탈 아동에 대한 인간적 처우보장

UN아동권리위원회는 재판 절차 전에 아동을 구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조건들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의 미결구금 기간을 법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결구금 결정에 있어서 해당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⁴⁸⁾

특히 「UN아동권리협약」 제37조(d)에서는 “자유가 박탈된 모든 아동은 신속하게 법적인 지원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와 법원 또는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기관에 자유박탈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⁹⁾ 동 조항의 권리들

46) See Rule 37(b)2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of a chil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shall be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of time"

47) See Rule 17 of the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Juveniles who are detained under arrest or awaiting trial ("untried") are presumed innocent and shall be treated as such. Detention before trial shall be avoided to the extent possible and limited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refore, all efforts shall be made to apply alternative measures. When preventive detention is nevertheless used, juvenile courts and investigative bodies shall give the highest priority to the most expeditious processing of such cases to ensure the shortest possible duration of detention. Untried detainees should be separated from convicted juveniles."

48) 장민영, 앞의 논문, 284면.

49) See Rule 37(d)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very child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ccess to legal and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s well as the right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 deprivation of his or her liberty before a court or ot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and to a prompt decision on any such action."

은 미결구금 상태에 있는 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비구금처우를 위한 UN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Non-custodial Measures)」제6조의3에서는 “미결구금된 아동은 사법부 또는 기타 독립적 권한을 가진 기관에게 미결구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여 미결구금에 대한 이의제기도 인정하고 있다.⁵⁰⁾

2. 소년분류심사의 국제기준 부합성 검토

소년분류심사는 정확한 비행진단과 처우결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수용을 전제로 한다. 위탁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최소 4주 최장 2개월까지 수용되어 있는데, 대체로 수용인원을 상회한 인원이 한 공간에 수용되면서 20여명까지 한 거실에 수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UN규칙과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위탁소년에 대한 개인적 사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적 반성의 기회를 주면서 개별처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인 1실이 보장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1개 거실에 최소 수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150명 수용이 가능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도 최대 250여명까지 수용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1인 1실 사용이 어렵지만, 하나의 거실에 수용인원을 최소화하여 보다 인권적 처우에 바람직한 모델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소년분류심사는 처분이 결정되기 전 일정기간 구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결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따라서 미결구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고려하여 미결구금을 함에 있어서 미결구금의 조건이 법에 명시되어야 하고, 보충성의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현재 소년분류심사는 소년부판사가 필요한 경우

50) See Rule 6.3 of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Non-custodial Measures.

"The offender shall have the right to appeal to a judicial or other competent independent authority in cases where pre-trial detention is employed"

51) 김지선,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74면; 박영숙,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인권복지연구 제4호, 2008, 69면; 오영근/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93면; 원혜옥, 소년범죄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I :-미결구금제도(소년분류심사원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15호, 2002, 11면; 장민영, 앞의 논문, 291면.

에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소년분류심사가 교육적 목적의 수용이라 할지라도 다른 수단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써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현행 소년분류심사를 위한 위탁요건이 보충성의 원칙을 반영하여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분류심사가 비행진단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수용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자유박탈적 수용이 전제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들이 그대로 준수되어야 하고, 수용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5절 외국 소년분류심사 형태 및 국제기준에 따른 시사점

우리나라의 소년분류심사 형태는 외국과는 달리 비행진단기능, 예방교육기능, 수용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를 의뢰하는 기관과 분류심사 대상소년이 다양하다⁵²⁾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전적으로 비행진단에 중점을 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초기진단으로서 초기면접(Intake)과 처우결정을 위한 진단으로서 처분심리(disposition hearing)로 2차례의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비행진단을 위해 일정기간 수용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한 요건들을 비교적 상세히 관련법에 기술해 두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의 진단, 교육, 수용기능이 적절하게 가미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과밀수용, 진단업무의 폭주 등으로 소년분류심사의 어느 한 기능도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외국의 소년분류심사가 어떠한 관점에서 진단, 교육, 수용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년감별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소년감별소가 비행의 과학적 진단에 집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감별소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감별방법, 규율 및 질서유지 방법, 면회, 전화, 서신교환 등 외부교통 방법, 구제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법률에 상세

52) 이춘화, 앞의 논문, 58면.

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우리의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소년원 수용소년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을 함께 “보호소년 등”이라는 표현 하에 함께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이 결정되어 집행되는 소년원 수용소년과 처분이 결정되기 전 미결구금 상태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은 엄연히 다르므로, 별도의 규율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초기면접 단계에서의 조사기능을 두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조기진단이 정식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게 해줌으로써 조기 다이버전이 가능해지고, 법원의 사건경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 비행진단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서 소년법원보조인이 있어 교육적·사회적·후견적 관점에서 비행소년의 인격조사 및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조사를 위한 미결구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결구금의 요건을 법에 규정하여 두고, 미결구금 요건을 구체화하고 엄격화하여 필요최소한 한도에서 해당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요건의 개선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할 때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한방에 최소인원이 수용되도록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소년분류심사가 진단을 위한 수용이고 미결구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 하에서 인권보장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소년분류심사의 형태가 적법절차 원칙 준수 및 이의제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이 승 현

제5장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제1절 개요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월 정도의 수용을 통해 행동을 집중관찰하고, 상담, 환경조사, 심리정신적 평가를 통해 비행원인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소년부 판사에게 제공하여 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비행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정교육을 위해 부모, 소년보호기관인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에 처우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분류심사는 사건의 처분 전 비행상황을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소년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비행진단에 중점을 두는 일본이나 미국식 분류심사형태와 구금기능에 중점을 두는 독일식 분류심사형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소년분류심사는 진단기능뿐만 아니라 구금기능, 예방교육기능을 함께 함으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이 다양해지긴 하였으나, 분류심사의 비행진단기능이 20-30%에 불과하여 핵심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소년분류심사원을 판사들은 예방교육기관으로, 소년들은 수용기관으로, 직원들은 분류심사기관 및 수용기관으로 각각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분류심사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구금기능의 경우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서, 예방교육기능은 비행예방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분류심사원이 다양한 기능에 초점을 두게 될 경우 분류심사원의 고유기능인 비행진단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가 없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제1차적으로 비행의 정확한 진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고, 비행진단을 위한 예방교육이나 구금이 부가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능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제1차적 기능인 비행진단에 따른 개별처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탁소년의 상태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을 조성해야 하고, 분류심사가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분류심사원의 본래 기능인 비행진단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과밀수용 해소방안, 분류심사의 전문성 확보방안,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입법적 정비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가.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1) 광역별 분류심사원 증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의 개별적 처우를 위해 전문적 비행진단과 분류심사를 하는 곳이므로 지금처럼 1개의 소년분류심사원과 6개의 대행소년원에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경우 비행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류심사가 어렵게 된다. 현재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에도 수용정원이 150명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상회하여 250여명까지 수용하고 있고, 위탁소년의 생활실 약 14평의 공간에 평균 20여명이 지내고 있다. 따라서 분류심사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최소한 광역단위별로 1개씩 설치할 필요가 있고, 심사원의 규모를 30~40명의 소규모 기관으로 전환해서 분류심사의 전문성을 기하여야 한다.

우리와 소년분류심사원 형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전국에 각 가정법원 단위별로 52개의 소년감별소가 설치되어 있고, 각 기관에 평균 12~15명이 수용되어 비행진단이 필요한 때에서 근접한 거리에서 즉각적인 진단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소년분류심사원만 하더라도 관할법원이 4곳(서울가정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이 되어 동시에 심리가 이루어질 경우 각 법원으로 호송하는데만 모든 인력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16년 인천

가정법원과 2019년 수원가정법원의 개원으로 인해 위탁소년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우범소년 송치비율의 증가와 보육원 등 소년보호시설장의 통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행소년 가운데도 가출, 학교유예로 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들이 심사원에 위탁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위탁소년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지방자치단체 권역별로 소년분류심사원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무부에서 ‘경기소년분류심사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소년분류심사원의 설치는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법원을 관할하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화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광범위한 경기도 권역을 분할하여 위탁소년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2) 시설의 소규모화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아이들이 지내는 곳은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공간을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하면 0.72평에 불과하여 최소한의 개인공간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⁵³⁾ 통상 위탁소년은 관할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1개월 내외, 최장 8주까지 수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적절한 생활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간적 스트레스와 집단생활로 인한 문제행동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실제 본 연구의 인식조사에서 비교적 대규모시설에 속하는 서울분류심사원에서 소규모의 심사원보다 소년들간 정보교환(재판에 관한 정보,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 등)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 설립 시 시설을 소규모화⁵⁴⁾하고 개인생활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앞의 국제인권기준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사생활 침해 및 자기반성 기회 확보를 위하여 미결구금시설의 1인 1실화를 권장하고 있다. 일본도 이에 따라 소년감별소 수용 시 1인 1실 사용을 원칙화 하고 있다.

53) 김철호,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 소년범의 감소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임내현의원실 주최, 2015, 9-10면.

54) 이춘화,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분류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3호, 2009, 125면; 정해룡, “소년분류심사제도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소년보호연구 제5호, 2003, 285면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수요를 감안할 때 1인 1실 원칙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역단위별 소년분류심사원 확보를 통해 공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한 생활실 내 수용인원을 최소한 4-5인 구조로 변경하여 생활실 내에서의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행소년원 형태의 분류심사원 운영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6개 권역(부산, 대구, 대전, 춘천, 광주, 제주)에서는 소년원 업무에 소년분류심사 업무를 가미한 대행소년원이 운영 중에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처우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두고 “보호소년 등”이라는 표현 하에 동일하게 처우관리 되고 있다.

대행소년원의 경우 소년원 내에서 위탁소년을 별도 교육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운영하고 있긴 하나, 기능이 다른 두 개 기관이 하나의 운영체계 하에서 운영될 경우 분류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소년원 운영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분류심사원에서 실시되는 인성교육 및 예방교육이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대행소년원에서의 분류심사는 자제되어야 하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반드시 분리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고유한 비행진단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 소년분류심사 대상자의 선별

소년분류심사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위탁이 전제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위탁이 꼭 필요한 대상인지에 대한 판사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구금을 통해 분류심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선별기준이 초범이나 재범이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초범의 경우 일정기간의 구금을 통해 반성정도가 깊어지기도 하고, 일정기간 자유박탈을 통한 어려움 등도 경험하면서 학업복귀의 의지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재범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재범의 경우에는 행동관찰이나 부모의 이혼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통해 아이의 장기적인 비행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 초범자의 경우 재범방지와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재범자의 경우 다시 비행을 진단하고 실제적

으로 조사한 것이 이후의 결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수용 이후 부모 및 가족에 대한 고마움, 나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진로에 대한 고민 등 심리·태도의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범성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비행소년의 환경적요인, 개인적 요인 등에 대한 종합고려를 통해 일정기간 비행상황에서 단절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저연령 소년의 경우 일정기간의 수용이 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위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이미 절차를 기피한 경우나 수용시설에서 도주하려고 한 때 또는 확실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에만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16세 미만의 저연령 소년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위탁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2. 분류심사의 전문화방안

가. 분류심사업무의 전문화 추진

분류심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단에 있어 불필요한 심사를 줄이고, 이전의 소년관련 조사들을 계속해서 누적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조사관과 분류심사관의 조사,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를 비교해보면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거나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가 생애력, 가족력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법원에서 과거 비행원인을 파악하는데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의 장점은 일정한 구금기간 동안 행동관찰을 하고 이에 따른 심리적·정신적 변화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소년사법 각 단계에서 실시되는 조사 내용이 각 기관별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분류심사에서도 이전의 조사결과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공유한 바탕 하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법원의 소년조사관과 소년감별소의 감별기관의 역할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조사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법원조사관은 소년이 처해있는 가정, 학교 등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조사를 하고, 소년감별소에서는 심리적·정신적 요인을 중심으로 감별을 실시하고 있어 과학적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와 분류심사서 결과가 중복되고, 분류심사서의 조사 결과가 있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조사관에 의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판사들은 대부분 분류심사서의 많은 내용 가운데 소년에 대한 행동관찰, 환경조사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고, 분류심사서를 통해 일정기간 한 장소에서 소년이 보여주는 구체적 행동과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른 영역의 조사서와의 차별성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의 조사의 핵심은 행동관찰 및 환경조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과 진단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조사서의 양식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⁵⁵⁾

나. 비행진단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일본의 경우 분류심사관은 개인의 특성조사만을 전담하는 형태로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의 분류심사관은 비행진단업무 외에도 호송, 면회, 당직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직원들은 소년분류심사원의 중요업무로 인식하는 비율은 당직업무가 87.9%, 호송업무가 88.9%를 차지하였고, 이들 업무로 인해 다른 업무에 지장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소년분류심사관의 경우 대부분 일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으나, 근무환경의 시간적 측면과 시설적 측면 때문에 업무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의 보람 등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하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도 분류심사관 보임 및 인력풀 관리제, 연 2회 분류심사관 능력평가, 법무부장관 승인 조사관 인증제, 전국 분류심사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분류심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55) 일부 연구에서는 상담 및 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원의 조사기능과 분류심사기능을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고.(정해룡, “소년분류심사제도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소년보호연구 제5호, 2003, 285면), 일본과 같이 조사관은 환경조사를 전담하고, 소년분류심사원은 개인특성조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다(최석운,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2008, 740면).

이 필요하다. 특히 소년분류심사 업무의 경우 업무의 과중성 등을 이유로 1년 단위로 자리가동이 많은 분야에 속하는 점을 볼 때, 과중한 업무를 해소해 주고 심사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고, 다양한 연수기회 제공 등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다. 비행진단 투여시간 확보방안

2014년 분류심사관 1인당 1일 평균 1.2건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정수준인 0.5건의 2.4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적정수준보다 2배 이상 많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절대적 시간 부족으로 인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 조사에서 분류심사업무담당 직원들에게 현재 작성하고 있는 분류심사서의 한달 평균 건수를 질문한 결과, 20건 미만 11.8%, 20건 이상 30건 미만 76.4%, 30건 이상 11.8%로 대부분 월 평균 20~30건 정도의 분류심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분류심사업무담당 직원들이 생각하는 월 평균 적정 분류심사서의 수는 평균 14.7건으로, 대략 한 달에 15건 내외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분류심사서의 작성이 현재 수준에서 절반정도 감소해야 보다 많은 자료의 검토와 고민을 통해 정확한 비행진단이 가능한 분류심사서가 완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소년분류심사관의 조사업무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주고, 분류심사관의 업무는 심사업무 외의 업무 즉, 호송이나 당직업무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위탁소년의 성격에 맞는 예방교육프로그램 실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정기간 구금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대상소년에게 구금만을 할 경우 조기 비행개선 여지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위탁소년에 대한 성비행, 학교폭력, 강절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및 대행소년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방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은 이미 비행예방센터나 소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들의 경우 비행초기자인 경우가 많고, 비행이 상습화되기 전에 범죄에 대한 위험성 인식을 통해 비행력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다. 따라서 이미 비행력이 상습화되어 있는 소년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소년분류심사원 대상자에게 그대로 교육하는 것은 대상자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대상에 맞는 교육컨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소년 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리라 본다. 예를 들어 소년분류심사원 재입원 경험여부, 소년원 수용경험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위탁소년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스스로 관심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교육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게 하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⁵⁶⁾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1. 소년분류심사원법 제정논의 검토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제도를 보완해 줄 법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본은 2014년 소년감별소와 소년원을 분리하여 각각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4년 임내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가칭)소년분류심사원법’에 대한 제정논의가 이루어진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소년분류심사원이 1개 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년분류심사원법 제정은 다소 이르다는 판단과 정부조직법상 개별법 제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이 비행진단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독립적인 법률 제정작업을 통해 분류심사와 관련된 내용

56) 정수용, 소년보호기관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법무부 대구소년분류심사원의 대안교육을 중심으로, 2005, 90면.

들을 대상자 선별에서 처우에 이르는 내용까지 상세히 담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별도법(가칭 소년분류심사원법)의 제정필요성 검토

위탁소년은 법원의 결정전까지는 무죄추정이 되기 때문에 위탁소년에 대한 인권적 측면의 보호가 수용기관에 있는 소년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서는 안되고, 위탁소년과 보호소년이 한 기관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과 소년원 수용소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은 처분이 결정되기 전 무죄추정이 적용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미 범죄사실 및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 처분이 결정된 소년원 수용소년과는 엄연히 다르다. 따라서 처우에 관한 규정 적용에 있어서도 위탁소년과 수용소년은 달라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대상의 차별적 처우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두 기관 관련법률을 분리하여 소년감별소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 관호조치의 방법, 규율 및 질서유지 방법, 면회, 서신교환, 전화통신 등 외부교통의 방법, 구제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상세히 규정해두고 있다.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소년분류심사 업무가 운영될 경우 소년원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지고, 소년분류심사원의 적절한 관리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소년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3. 별도법 제정 시 추가검토사항

가. 위탁기간에 대한 검토

소년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경우에는 비행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행동관찰을 할 수 있어 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고, 보다 소년보호이념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

성이 크다.⁵⁷⁾ 이처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일정기간 위탁은 소년에 대한 집중조사 및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위탁의 기간은 구금기간이 되는바 그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그러나 우리나라 위탁기간은 연장에 있어서 특별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장 60일까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외국의 소년분류심사 형태와 국제인권기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분류심사에서의 위탁기간은 미결구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기간도 소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은 관호조치 연장을 인정하여 최장 8주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형,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으로 그 비행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증인신문, 감정 또는 검증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또는 이에 관하여 소년이 수용하지 않으면 심판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일본 소년법 제17조 제4항 단서, 제9항).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탁기간 연장 시 그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나. 위탁사유의 엄격화

현재 소년법원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의 구속요건과는 달리 소년법원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 즉, 소년법원판사가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제18조 1항)라고 하는 매우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요건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②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57) 오영근/최병각, 앞의 책, 98면.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요건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다. 소년분류심사단계에서는 아직 처분결정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속요건보다 보다 더 엄격한 요건하에서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관호조치가 신병구속을 동반하는 강제처분이고 비행사실인정을 위한 심판 전 조사이기 때문에 보호 및 교육기능을 위해 관호조치를 인정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⁵⁸⁾ 그러므로 조사를 할 필요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관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조사를 위한 미결구금시 일반적 구속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즉, 조사를 위한 미결구금을 위해서는 유력한 범죄혐의가 있고, 도주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또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구금으로 인해 소년에게 가해지는 침해와 침해로 야기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구금이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 구금 이외 다른 약한 처분으로는 형집행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고, 반드시 다른 수단에 의해 소년법원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소년의 경우 미결구금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인보다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있어서는 독일이나 일본의 규정과 같이 위탁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⁵⁹⁾ 따라서 ‘비행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거나’, ‘소년이 주거부정 상태에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는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 ‘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거나 보호를 위해 수용이 불가피한 때’ 등으로 위탁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 위탁처분에 대한 대상소년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 통로 마련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경우 항고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위탁처분은 처분 결정 전 임시조치라는 이유로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58) 원혜옥/강경래/정희철, 앞의 책, 338면.

59) 실제로 양형실무에서는 형사소송법과 유사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심리조건을 충족했는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심리할 개연성이 있는가, 소년의 신병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가, 소년을 감호하여 분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비송, 2000, 261면 참조).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은 일정기간 소년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에 해당하는 만큼 대상 자측에게 이러한 구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일본은 2001년 개정소년법에서 관호조치 결정 및 수용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된 바 있다. 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관호조치 결정 및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소년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가정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원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은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일본 소년법 제17조의2 제3항).

우리의 경우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위탁 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이 위탁결정 및 위탁연장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규정 마련

소년분류심사는 소년의 구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보호가 필수적이고, 보호절차의 특성에 맞는 적정절차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최근에 일본에서는 소년감별소법 내에 각 절차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해두고 있다. 소년감별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재소자의 구체적 처우에 관한 사항 즉, 관호조치 방법, 보건위생 및 의료지원, 물품대여방법, 규율 및 질서유지 방법, 각 감별대상자별로 면회, 서신교환, 전화통신 등 외부교통 방법, 구제나 고충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소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준용하고 형태로 인권보장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처분 결정이 된 수용소년과 처분 결정전 위탁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소년감별소법 규정과 같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면회나 서신교환, 전화사용 등에 관하여 소년원 운영에 관한 기준보다 보다 완화된 형태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규율 및 질서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 제재조치, 수갑사용 등에 있어서도 소년원 처우보다 완화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김지선,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김양곤, 주요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김준호/이동원, 비행소년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김철호,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 소년범의 감소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임내현의원실 주최, 2015.
- 박영숙,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인권복지연구 제4호, 2008.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국 소년보호기관 업무량 및 직무분석, 2014.
- 법무부 소년과, 2014년도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 2014.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비송, 2000.
- 오영근,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오영근/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원혜옥, 소년범죄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I:-미결구금제도(소년분류심사원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15호, 2002.
- 원혜옥, 소년범죄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I:-미결구금제도(소년분류심사원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15호, 2002.
- 원혜옥/강경래/정희철, 인권친화적 분류심사제도 및 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개선방안, 법무부 인권국, 2008.
- 이승현, 소년보호이념과 선의권에 관한 검토,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춘화,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보호 제16호, 2004.
- 이춘화, “소년사건의 조사제도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이한교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0.
- 이춘화,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분류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3호, 2009.
- 이춘화,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보호 제16호, 2004.
- 장민영, “우리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법상 아동의 자유 박탈에 관한 기본원칙들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2014.
- 정수용, 소년보호기관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법무부 대구소년분류심사원의 대안교육을 중심으로, 2005.
- 정해룡, “소년분류심사제도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소년보호연구 제5호, 2003.
- 조병인/정진수/김종정,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최석윤,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2008.
-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8.

2. 외국 문헌

- Albert R Roberts/Wesley T Church, II, and David Springer, Juvenile Justice Sourcebook: Past, Present, and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Albert R. Roberts, Juvenile Justice, The Dorsey Press, 1989.
- Clifford E. Simonsen, Juvenile Justice in America, Macmillan Coll Div, 1991.
- Margaret K. Rosenheim, A Century of Juvenile Just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 Schaffstein/Beulke/Swoboda, Jugendstrafrecht, Kohlhammer, 2015.
- 法務省矯正局, 新しい少年院法と少年鑑別所法, 2014.

3. 인터넷 자료

법무교관(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i12.html).

소년감별소법(<http://law.e-gov.go.jp/htmldata/H26/H26HO059.html>).

법무성 교정국 설명자료(http://www.moj.go.jp/kyousei1/kyousei03_00019.html,
2015년 10월 13일 최종검색).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i06.html,
2015.10.23. 최종검색).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https://www.unodc.org/pdf/criminal_justice/United_Nations_Rules_for_the_Protection_of_Juveniles_Deprived_of_their_Liberty.pdf)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
https://www.unodc.org/pdf/criminal_justice/UN_Standard_Minimum_Rules_for_the_Treatment_of_Prisoners.pdf).

European Prison Rules(<https://wcd.coe.int/ViewDoc.jsp?id=955747>).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Non-custodial Measures
(<http://www.ohchr.org/Documents/ProfessionalInterest/tokyorules.pdf>).

Abstract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Lee, Seung-hyun · Park Seong-hoon

The role of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since it helps to accurately diagnose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in its early stages and provides the right treatment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juveniles.

However, currently there is only 1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in South Korea and 6 proxy juvenile detention institutions. Under the circumstance, such institutions are severely overcrowded with juvenile delinquents. As the number of juveniles in such institutions increases continuously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petent courts, overcrowding gets more severe, worsening negative aspects such as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learning crime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ere is a need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current operation of the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its role and function, and examine the measures that the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needs to take to accurately diagnose juvenile delinquents and to decide on their treatment.

The target of this study is the juveniles under detention at the Seoul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and at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s in Busan, Daegu, Gwangju, Daejeon, Chuncheon, and Jeju, the staff members who guide and review these delinquents, and the judges handling juvenile cases.

First, the findings of the survey of juveniles under detention on the changes in their attitude and awareness before and after entering detention institutions show that many of them thought they themselves are responsible for what they did, that they acknowledge their wrongdoings, and that therefore they are under detention. Quite a few of them answered that they are apologetic and feel responsible for their victims, and came to look back upon their parents (custodians). However, they are greatly worried about detention center disposition or the influence of the same on their life in society after they are discharged from detention facilities. With respect to mental state and attitude, they gave positive evaluations on their awareness about their future, regularity, consideration of others, patience, etc.

The result of staff survey shows that work conditions such as physical work environment (facilities and amenities), work hours, social awareness, and welfare are pointed out as the priority area for improvement. This means that there should be a measure to urgently improve their work conditions. However, the respondents said their job is worth doing, meaning it is of an element that should be maintained continuously. Regarding education works, guidance of life and detention management were surveyed to be very important job. Given those in charge of education works said that the appropriate number of juveniles under detention was around 10 on average, that the current number is too large is a serious problem. Regarding classification review works, monitoring of behavior and attitudes during education, and in-depth interview by classification review officers were turned out to be most helpful in preparing classification review reports. Currently, one classification review officer prepares an average of 20 to 30 classification review reports on a monthly basis but appropriate number of such reports should be some 15, classification review officers responded.

In a comparison survey on the function of the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perceived by juveniles under detention, staff, and judges taking care of juvenile cases, such judges perceived it as an institution for misconduct prevention and education, those juveniles under detention regarded it as a confinement facility, staff considered it as an agency for classification review and detention. Considering this, rather than being an organ distributing scarce resources with various functions, the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needs to be an entity that focuses on diagnosing misconducts accurately that cannot be done by other agencies and that carries out prevention education and detention diagnose.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establish more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s by the unit of metropolitan city but also to make small the current facilities of the classification review board and to abolish the classification review function of the proxy juvenile detention institutions. Considering negative side effects, classification review of young juveniles through detention should be limited as much as possible. Behavior observation and environment inspection should be the priority for the purpose of specializing classification review. And there is a need to remove transport of delinquents and night duty from the duty list of classification review officers to improve their work environment. They should be given ample office hours to diagnose misconducts and prepare classification review reports. There is also a need to develop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s to prevent delinquency especially those detained at the institutions in their beginning stage of delinquency.

Second, regarding legislative improvements, there is a need for special budgeting and treatment of those subject to classification review through a

separate legislation, for example, of the Act on the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temporary name). In addition, for a specialized misconduct diagnose, the minimum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should be detained.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riteria to extend detention period should be stipulated in related laws, and legal grounds should be prepared to more strictly apply the causes for detention.

Procedural rules to raise objections to classification review processes should be laid down to let delinquents themselves and their parents to make appeals. There should be separate provisions in related laws for treatment of those juveniles in the proxy institutions, aside from treatment for juveniles in average juvenile detention centers.

[부록1]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생활경험 및 인식조사

ID

TYPE

소년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향후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화는 물론 역할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소년,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경험 및 인식, 태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비행진단, 분류심사, 비행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다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바람직한 형사정책을 위해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설문내용 역시 학술적 목적 외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연구 주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 책임 : 이승현 연구위원(02-3460-5193), 박성훈 연구위원(02-3460-5130)
☐ 협동 기관 : 법무부 소년과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

조사일시	2015년	월	일	에디팅 확인		입력확인	
------	-------	---	---	--------	--	------	--

[응답자 정보 기입란입니다. 직접 기입해 주세요.]

SQ1. 소속기관	01) 서울소년분류심사원 03) 대구소년원 05) 대전소년원 07) 제주소년원	02) 부산소년원 04) 광주소년원 06) 춘천소년원
SQ2. 소속반	반 이름을 직접 써 주세요. ()반	
SQ3. 성별	1) 남자 2) 여자	
SQ4. 연령	()년생 만()세	
SQ5. 입원 전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PART 1.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경험 및 실태

1. 여러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처음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① 처음이다 ② 이전에 와 본적이 있다(→ 1-1로 갈 것)
- 1-1. [1번에서 '❷ 이전에 와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만 해당] 이전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와 봤다면 몇 번째 입니까? 이번에 입원한 횟수까지 포함해서 응답해 주세요.
→ ()번
2. 여러분은 이번에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7일 이하(1주 이하) → ()일 ② 8일~ 14일(2주 이하)
③ 15일~21일(3주 이하) ④ 22일~ 28일(4주 이하)
⑤ 29일~35일(5주 이하) ⑥ 36일~ 42일(6주 이하)
⑦ 43일~49일(7주 이하) ⑧ 50일~ 56일(8주 이하)
⑨ 57일 이상(8주 이상) → ()일
3. 여러분은 이전에 소년분류심사원 말고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① 없다 ② 있다(→ 3-1로 갈 것)
- 3-1. [3번에서 '❷ 있다'고 응답한 학생만 해당] 이전에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됩니까?
→ ()번
4. 여러분은 이전에 소년분류심사원 말고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4-1로 갈 것)
- 4-1. [4번에서 '❷ 있다'고 응답한 학생만 해당] 이전에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됩니까?
→ ()번
5. 여러분은 이전에 소년분류심사원 말고 '교도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5-1로 갈 것)
- 5-1. [5번에서 '❷ 있다'고 응답한 학생만 해당] 이전에 교도소에 들어간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됩니까?
→ ()번

PART 2. 소년분류심사원 생활경험 및 시설만족도

6. 여러분은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합니까?** 다음 각 시설별로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매우 불만이다	대체로 불만이다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01) 생활실(호실)	①	②	③	④	⑤
02) 화장실	①	②	③	④	⑤
03) 샤워실	①	②	③	④	⑤
04) 교실(학과장)	①	②	③	④	⑤
05) 상담실(분류심사관실)	①	②	③	④	⑤
06) 면회실	①	②	③	④	⑤
07) 운동장	①	②	③	④	⑤
08) 식당	①	②	③	④	⑤
09) 심리검사실	①	②	③	④	⑤
10) 의무과	①	②	③	④	⑤

7. 현재 여러분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먹고 있는 '급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합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대체로 불만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8. '급식'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세요.

→ 첫 번째 (), 두 번째 ()

- ① 음식의 양 ② 음식의 맛 ③ 위생상태
④ 배식시간 ⑤ 배식방법 ⑥ 조리사의 태도
⑦ 메뉴의 다양성 ⑧ 기타()

9. 그러면 여러분은 숙소, 화장실, 교실, 상담실, 운동장, 면회실, 식당 등 소년분류심사원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합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대체로 불만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PART 3. 소년분류심사원 프로그램만족도

10. 여러분은 분류심사원에서의 하루일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응답해 주세요.

	매우 불만이다	대체로 불만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경험 없음
평일 일과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10-1. 만일 여러분이 평일 일과생활 중 '불만족'(①,②에 응답한 경우)하다면, 어떤 점이 가장 불만입니까?
직접 적어주세요.

()

	매우 불만이다	대체로 불만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경험 없음
주말 일과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10-2. 만일 여러분이 주말 일과생활 중 '불만족'(①,②에 응답한 경우)하다면, 어떤 점이 가장 불만입니까?
직접 적어주세요.

()

11. 여러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받은 '생활안내(규칙, 칭찬카드, 꾸중카드, 생활방법 등)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만족했나요?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대체로 불만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2.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하나요?

질문 내용	매우 불만이다	대체로 불만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경험 없음
1) 건강진단	①	②	③	④	⑤	⑥
2) 신상조사를 통한 개인상담	①	②	③	④	⑤	⑥
3) 심리검사(집단, 개별)	①	②	③	④	⑤	⑥
4) 일대일 심층상담(분류심사)	①	②	③	④	⑤	⑥

13.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되는 다음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내용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경험 없음
1) 건강진단	①	②	③	④	⑤	⑥
2) 신상조사를 통한 개인상담	①	②	③	④	⑤	⑥
3) 심리검사(집단, 개별)	①	②	③	④	⑤	⑥
4) 일대일 심층상담(분류심사)	①	②	③	④	⑤	⑥

1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하는 것 중 다음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하나요?**

질문 내용	매우 불만 이다	대체로 불만 이다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경험 없음
1) 학교폭력, 성폭력, 강절도 비행예방교육, 법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2) 집단상담, 인성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3) 문화예술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4) 독서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5)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①	②	③	④	⑤	⑥

15.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하는 것 중 다음의 활동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내용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경험 없음
1) 학교폭력, 성폭력, 강절도 비행예방교육, 법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2) 집단상담, 인성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3) 문화예술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4) 독서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5)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①	②	③	④	⑤	⑥

16. 다음은 부모님 또는 보호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자주 통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자주 편지를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부모님(보호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자주 면회를 오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7.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만난 친구·동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여기서 새로 사귀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여기서 고민이 있을 때 같이 의논하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밖에서도 연락할 마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다투고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담임선생님은 우리 반을 잘 지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담임선생님은 부탁이나 요구를 잘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담임선생님은 욕설이나 체벌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담임선생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선생님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이리본이 씨앗을 이리본과 이리본은 (수년복합사이에) 올해 다 낳은 논그 씨앗이리본 씨앗이리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친구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번 일을 계기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과 가족을 실망시켜서 부끄럽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 알려질까봐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들에게 알려질까봐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시설에 들어가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3. 다음은 여러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오기 전에 저지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사과의 편지를 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만나서 사죄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피해배상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피해자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음은 여러분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하는데 힘든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기서 만난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유가 없는 구속된 생활 때문에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3) 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6) 친구나 동료로부터 욕설,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음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온 후 자신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 참을성(인내심)이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02)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03)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04)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05)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06)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07)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08)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09) 나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 등 가족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진로 등 미래(장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5. 소년분류심사원의 이미지

26. 여러분은 처음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올 때 소년분류심사원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만 응답해 주세요.

- ① 학교와 비슷하게 교육을 받는 곳이다 ② 소년원과 비슷하게 갇혀 있는 곳이다
③ 재판을 받기 전 조사를 받는 곳이다

27. 그럼, 여러분은 지금은 처음 들어올 때와 비교해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 ① 전혀 변하지 않았다 ② 별로 변하지 않았다
③ 약간 변했다 ④ 매우 많이 변했다

28. 여러분은 소년분류심사원을 생각할 때, 다음 제시된 두 가지 '이미지' 중 어떤 곳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좋다
차갑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따뜻하다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편안하다
어둡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밝다
딱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드럽다
약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강하다
조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활기차다

29. 여러분은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30. 현재 여러분의 학교교육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휴학이나 자퇴한 학생은 해당사항에 표시하고 휴학이나 자퇴했을 당시의 학년을 응답해 주세요. (예. 중학교 1학년에 휴학)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휴학 ()학년에 휴학
③ 중학교 유예 ()학년에 유예
④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포함)
⑤ 고등학교 휴학 ()학년에 휴학
⑥ 고등학교 자퇴 ()학년에 자퇴
⑦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포함)
⑧ 대학생
⑨ 기타 ()

동 제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생활경험 및 인식조사

ID

TYP

직원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형사
정책연구원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연구원에서는 향후 소년범죄심사원의 전문화, 법제 보완 강화 및 범죄예방 활동 등을 제안하기 위해 소년범죄심사원에 입원한 소년, 그리고 소년범죄심사원 업무에 담당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소년범죄심사원의 역할개선 및 인식, 행동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비행진단, 분류심사, 비행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인 역원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다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바람직한 행사정책을 위해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문조사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설문내용 역시 학술적 목적 외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연구 주관: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 책임: 이승현 연구위원(02-3460-5193), 박성훈 연구위원(02-3460-5130)
□ 발행 기관: 행정부 소년부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

조사일시	2015년	월	일	에디팅 확인		입력확인	
------	-------	---	---	--------	--	------	--

[응답자 정보 기입란]

SQ1. 소속기관	01) 서울소년분류심사원 03) 대구소년원 05) 대전소년원 07) 제주소년원	02) 부산소년원 04) 광주소년원 06) 춘천소년원	
SQ2. 근무부서	1) 분류심사과(분류보호과) 5) 기ЕК	2) 교무과)	3) 행정지원과 4) 의무과
SQ3. 성별	1) 남성 2) 여성		
SQ4. 연령	만 ()세		

PART 1. 소년분류심사원 직무에 대한 인식 [공통 질문]

1. 선생님께서는 하루를 기준으로 평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당직근무는 제외)

→ 평일 기준 평균()시간

→ 주말 기준 평균()시간

2. 선생님께서는 월 평균 몇 회 정도 당직근무를 하십니까? 그리고, 당직근무는 월 기준으로 총 몇 시간이나 됩니까?

→ 월 기준 평균 ()회

→ 월 기준 총 ()시간

3. 다음은 선생님의 업무에 대한 만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업무별로 만족 정도와 개선의 시급성을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만족도					개선시급성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시급함	매우 시급함
1) 근무환경(시간측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근무환경(시설측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보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복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장래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일의 보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조직문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사회적 인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선생님께서 다양한 업무를 중에서 특정한 업무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의 업무를 중에서 '시급함'(④대체로 시급함 또는 ⑤매우 시급함)이라고 응답한 것을 기준으로 그 이유를 써 주세요.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 개일 경우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해 주세요.)

▶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분야 : ()

▶ 이유 :

5. 다음은 당직업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당직업무는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당직업무로 인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당직업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인력)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이송·호송·소환업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송·호송·소환업무는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송·호송·소환업무로 인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송·호송·소환업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인력)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은 면회업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면회업무는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면회업무로 인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면회업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인력)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PART 2.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인식 [공통 질문]

8. 선생님께서는 소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위탁대행 소년원)의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시설별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매우 불만이다	대체로 불만이다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01) 생활실(호실)	①	②	③	④	⑤
02) 화장실	①	②	③	④	⑤
03) 샤워실	①	②	③	④	⑤
04) 교실(학과장)	①	②	③	④	⑤
05) 상담실(분류심사관실)	①	②	③	④	⑤
06) 면회실	①	②	③	④	⑤
07) 운동장	①	②	③	④	⑤
08) 식당	①	②	③	④	⑤
09) 심리검사실	①	②	③	④	⑤
10) 의무과	①	②	③	④	⑤

9. 선생님께서는 소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먹고 있는 급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대체로 불만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0. 선생님께서는 소년들이 급식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워 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개만 선택해 주세요.

→ 첫 번째 (), 두 번째 ()

- ① 음식의 양 ② 음식의 맛 ③ 위생상태
④ 배식시간 ⑤ 배식방법 ⑥ 조리사의 태도
⑦ 메뉴의 다양성 ⑧ 기타()

11. 그럼, 선생님께서 소년들이 숙소, 화장실, 교실, 상담실, 운동장, 면회실, 식당 등 소년분류심사원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대체로 불만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PART 3. 소년분류심사원의 이미지 및 개선방안 [공동 질문]

12. 선생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의 핵심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하나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예방교육기관이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미결소년에 대한 수용기관이다
③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전단기관이다

13. 선생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 및 확대와 관련한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인원이 과밀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소년분류심사원의 소년에 대한 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의 인권보다 더 보장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소년분류심사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전국 권역별로 소년분류심사원이 별도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분류심사관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인력관리제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선생님은 소년분류심사원을 생각할 때, 다음 제시된 두 가지 이미지 중 어떤 곳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좋다
차갑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따뜻하다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편안하다
머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밝다
딱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드럽다
약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강하다
조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활기차다

※ 다음에 제시된 PART 4는 교육담당 선생님만, PART 5는 분류심사담당 선생님만 응답해 주세요.

PART 4. 위탁소년 교육업무 인식 [교육담당 선생님만 해당]

1. 선생님께서는 위탁소년 교육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개월
2.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업무 중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업무내용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여부에 ①로 표시한 업무만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써 주세요.]

업무내용	담당여부		우선순위
1) 교무·사무(교육행정)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2) 외부체결활동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3) 생활지도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4) 수용관리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5) 면회 및 보호자교육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6) 사후지도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7) 야간·휴일 수용관리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3. 선생님께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하는 다음의 비행예방교육 활동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내용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해당 없음
1) 학교폭력 비행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2) 성폭력 비행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3) 강·절도 비행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4) 법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4. 선생님께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하는 다음의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내용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해당 없음
1) 집단상담, 인성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2) 문화예술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3) 체육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4) 독서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5)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①	②	③	④	⑤	⑥

5. 선생님께서 현재 맡고 있는 반의 위탁소년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6.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교사 1인당 맡아야 할 적정 위탁소년의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명
7.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위탁소년 교육업무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개선점 :

※ 다음에 제시된 PART 4는 교육담당 선생님만, PART 5는 분류심사담당 선생님만 응답해 주세요.

PART 5. 위탁소년 분류심사업무 인식 [분류심사담당 선생님만 해당]

1. 선생님께서 분류심사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 ()년 ()개월

2. 선생님께서 다음의 업무 중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업무내용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여부에 ①로 표시한 업무만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써 주세요.]

업무내용	담당여부		우선순위
1) 분류심사서류 자료수집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2) 신상조사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3) 심리검사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4) 미송, 호송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5) 부모상담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6) 면회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7) 사후지도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8) 야간·휴일 수용관리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순위

3. 선생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되는 다음의 내용이 분류심사서의 작성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내용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건강진단	①	②	③	④	⑤
2) 신상조사	①	②	③	④	⑤
3) 심리검사(개인, 집단)	①	②	③	④	⑤
4) 보호자 상담	①	②	③	④	⑤
5) 환경조사	①	②	③	④	⑤
6) 분류심사관 심층면담	①	②	③	④	⑤
7) 비행력 분석	①	②	③	④	⑤
8) 교육생활대도 행동관찰	①	②	③	④	⑤

4. [분류심사관만 작성] 선생님께서 현재 한달 평균 작성하시는 분류심사서는 몇 건입니까?

→ 월 평균 ()건

5. [분류심사관만 작성]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달 평균 적정 심사서는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월 평균 ()건

6.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분류심사업무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개선점 :

※ 다음에 제시된 질문은 모든 선생님들께 공통된 질문입니다.

PART 6. 기타 질문 및 통계처리들 위한 질문 [공통 질문]

1. 선생님께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2. 선생님의 현재 직급은 무엇입니까?

→ ()급

3. 선생님께서는 전국소년보호기관(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등) 근무 경력이 몇 년입니까?

→ ()년차

4. 선생님께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란에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추가로 기재해 주세요.)

① 교사

② 사회복지사

③ 청소년지도사

④ 청소년상담사

⑤ 기타

▶

▶

▶

▶

▶

▶

▶

▶

▶

♣ 바쁘신 데 끝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역할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

ID TYPE 판사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향후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화는 물론 역할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국의 소년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판사님을 대상으로 소년분
류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구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비행진단, 분류심사, 비행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다소 귀찮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바람직한 형사정책을 위해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학술적·정책적 목적 외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 진 환

- ☐ 연구 주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 책임 : 이승현 연구위원(02-3460-5193), 박성훈 연구위원(02-3460-5130)
☐ 협동 기관 : 법무부 소년과

[이 부분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일시	2015년	월	일	에디팅 확인		입력확인	
------	-------	---	---	--------	--	------	--

[응답자 정보는 통계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오니 기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Q1. 소속기관	() 법원
DQ2. 법원판사 재직 총기간	()년 ()개월
DQ3. 소년담당 판사 재직 총기간	()년 ()개월
DQ4. 성별	1) 남성 2) 여성
DQ5. 연령	()세

PART 1. 소년분류심사 업무경험 및 분류심사원에 대한 인식

1. 판사님께서서는 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 몇 건의 소년사건을 담당하시는지요?

→ 월 기준 평균 ()건

2. 그러면, 판사님께서 한 달에 평균 처리하시는 소년사건 중 대략 몇 건이나 분류심사 위탁을 의뢰하십니까?

→ 월 기준 평균 ()건

3. 판사님께서서는 소년사건에 대해 분류심사 위탁을 의뢰하실 때, 주로 어떤 기준으로 갖고 결정을 내리십니까?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첫 번째 (), 두 번째 ()

- | | |
|---------------------|------------|
| ① 초범/재범 여부 | ② 처분 경력 |
| ③ 재학 여부 | ④ 보호력·가정환경 |
| ⑤ 신병 확보 | ⑥ 반성적 태도 |
| ⑦ 재범가능성 | ⑧ 심리·정서상태 |
| ⑨ 기타 () | |

4. 판사님께서서는 소년사건의 심리 시 분류심사서를 얼마나 참고하시는 편이십니까?

- | | |
|----------------------------|------------------------------|
| ①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 (→ 문4-1번으로) | ② 별로 참고하지 않는 편이다 (→ 문4-1번으로) |
| ③ 대체로 참고하는 편이다 (→ 문4-2번으로) | ④ 매우 많이 참고한다 (→ 문4-2번으로) |

4-1. [주로 참고하지 않는 경우] 판사님께서 분류심사서를 주로 참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의뢰해도 회보가 너무 늦기 때문에 | |
| ②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 |
| ③ 심사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고 오류가 발견되기 때문에 | |
| ④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불충분한 반면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 |
| ⑤ 기타의견 () | |

4-2. [주로 참고하시는 경우] 판사님께서 분류심사서에서 주로 참고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참고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첫 번째 (), 두 번째 ()

- | | | |
|-----------------------|------------|--------|
| ① 환경조사 | ② 행동관찰 | ③ 심리특성 |
| ④ 비행요인 진단 및 재비행 예측 | ⑤ 분류심사관 의견 | ⑥ 처분의견 |
| ⑦ 기타의견 () | | |

5. 판사님께서서는 분류심사서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첫 번째 (), 두 번째 (), 세 번째 ()

- | |
|--|
| ① 객관성 (범죄심각성, 범죄유형, 비행횟수, 보호관찰위반경력에 따른 처분의견) |
| ② 일관성 (위험성 평가기준, 분류심사 양식의 통일성) |
| ③ 위험기준성 (사회 및 시설 내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가·감 요인의 포함여부) |

6. 판사님께서 현재 분류심사원의 조사관이 처분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사회내 혹은 시설내 처우로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기타의견 ()

7. 그럼, 판사님께서 분류심사서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②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③ 대체로 만족스럽다
 ④ 매우 만족한다

7-1. 판사님께서 위와 같이 만족 혹은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판사님 의견 :

8. 판사님께서 현재 분류심사원 조사업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첫 번째 (), 두 번째 ()

- ① 분류심사관의 소년범죄에 대한 이해도 향상
 ② 명확한 분류심사관 의견 제시
 ③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의 마련
 ④ 신속한 회보
 ⑤ 조사인력 확충을 통한 업무량 해소
 ⑥ 기타의견 ()

9. 판사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의 핵심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사님의 생각에 가까운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예방교육기관이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미결소년에 대한 수용기관이다
 ③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원인 진단 및 처분제시 기관이다

10. 판사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을 생각할 때, 다음 제시된 두 가지 이미지 중 어떤 곳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좋다
차갑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따뜻하다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편안하다
어둡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밝다
딱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드럽다
약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강하다
조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활기차다

11. 판사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이 소년비행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PART 2.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및 역할강화에 대한 인식

12. 다음은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 및 확대와 관련한 의견들입니다. 판사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인원이 과밀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소년분류심사원의 소년에 대한 인권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의 인권보다 더 보장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소년분류심사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전국 권역별로 소년분류심사원이 별도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분류심사관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인력관리제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리모델링을 통한 (가칭)경기분류심사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4. 일부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위탁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일종의 미결구금형이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판사님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다른 한편으로 일부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위탁이 쇼크 구금형태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판사님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끝으로 판사님께서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 시급히 도입되거나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판사님 의견

[부록2] 일본의 소년감별소법

(少年鑑別所法, 平成二十六年六月十一日法律第五十九号)

第一章 総則

第一節 目的等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少年鑑別所の適正な管理運営を図るとともに、鑑別対象者の鑑別を適切に行うほか、在所者の人権を尊重しつつ、その者の状況に応じた適切な観護処遇を行い、並びに非行及び犯罪の防止に関する援助を適切に行う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鑑別対象者 第十七条第一項又は第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鑑別の対象となる者をいう。

二 在所者 少年鑑別所に収容されている者をいう。

三 被観護在所者 少年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六十八号）第十七条第一項第二号の観護の措置（同条第七項の規定により同号の観護の措置とみなされる場合を含む。以下単に「観護の措置」という。）が執られて少年鑑別所に収容されている者又は同法第十四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三十一号）第百六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少年鑑別所に留置されている者をいう。

四 未決在所者 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り少年鑑別所に勾留（少年法第四十五条第四号の規定により勾留とみなされる場合を含む。第二百五条第一号及び第三号において同じ。）されている者又は刑事訴訟法第百六十七条第一項（同法第二百二十四条第二項において準ず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少年鑑別所に留置されている者をいう。

五 在院中在所者 少年院法（平成二十六年法律第五十八号）第三十六条第二項又は第百三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少年鑑別所に収容されている者をいう。

六 各種在所者 在所者であつて、被観護在所者、未決在所者及び在院中在所者以外のものをいう。

七 保護者 少年法第二条第二項 に規定する保護者をいう。

八 保護者等 次のイ又はロ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在所者に対し虐待、悪意の遺棄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心身に有害な影響を及ぼす行為をした者であつて、その在所者の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と認められるものを除く。）をいう。

イ 在所者の保護者

ロ 在所者の親族（イに掲げる者を除き、婚姻の届出をしていないが、事実上婚姻関係と同様の事情にある者を含む。）

第二節 少年鑑別所の運営

（少年鑑別所）

第三条 少年鑑別所は、次に掲げる事務を行う施設とする。

一 鑑別対象者の鑑別を行うこと。

二 観護の措置が執られて少年鑑別所に收容される者その他法令の規定により少年鑑別所に收容すべきこととされる者及び收容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る者を收容し、これらの者に対し必要な観護処遇を行うこと。

三 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非行及び犯罪の防止に関する援助を行うこと。

（在所者の分離）

第四条 在所者は、次に掲げる別に従い、それぞれ互いに分離するものとする。

一 性別

二 被観護在所者（未決在所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未決在所者（被観護在所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未決在所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被観護在所者、在院中在所者及び各種在所者の別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適当と認めるときは、居室（在所者が主として休息及び就寝のために使用する場所として少年鑑別所の長が指定する室をいう。以下同じ。）外に限り、同項第二号に掲げる別による分離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実地監査）

第五条 法務大臣は、この法律の適正な施行を期するため、その職員のうちから監査官を指名し、各少年鑑別所について、毎年一回以上、これに実地監査を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意見聴取)

第六条 少年鑑別所の長は、その少年鑑別所の適正な運営に資するため必要な意見を関係する公務所及び公私の団体の職員並びに学識経験のある者から聴くこと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少年鑑別所視察委員会)

第七条 少年鑑別所に、少年鑑別所視察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を置く。

2 委員会は、その置かれた少年鑑別所を視察し、その運営に関し、少年鑑別所の長に対して意見を述べるものとする。

(組織等)

第八条 委員会は、委員七人以内で組織する。

2 委員は、人格が高潔であって、少年の健全な育成に関する識見を有し、かつ、少年鑑別所の運営の改善向上に熱意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法務大臣が任命する。

3 委員の任期は、一年とする。ただし、再任を妨げない。

4 委員は、非常勤とする。

5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委員会の組織及び運営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委員会に対する情報の提供及び委員の視察等)

第九条 少年鑑別所の長は、少年鑑別所の運営の状況につ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定期的に、又は必要に応じて、委員会に対し、情報を提供するものとする。

2 委員会は、少年鑑別所の運営の状況を把握するため、委員による少年鑑別所の視察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委員会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少年鑑別所の長に対し、委員による在所者との面接の実施について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少年鑑別所の長は、前項の視察及び在所者との面接について、必要な協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九十三条（第九十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百一条（第百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かかわらず、在所者が委員会に対して提出する書面は、検査をしてはならない。

(委員会の意見等の公表)

第十条 法務大臣は、毎年、委員会が少年鑑別所の長に対して述べた意見及びこれを受けて少年鑑別所の長が講じた措置の内容を取りまとめ、その概要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裁判官及び検察官の巡視)

第十一条 裁判官及び検察官は、少年鑑別所を巡視することができる。

(参観)

第十二条 少年鑑別所の長は、その少年鑑別所の参観を申し出る者がある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少年鑑別所の職員)

第十三条 少年鑑別所の職員には、在所者の人権に関する理解を深めさせ、並びに鑑別対象者の鑑別、在所者の観護処遇その他の少年鑑別所の業務を適正かつ効果的に行うために必要な知識及び技能を習得させ、及び向上させるために必要な研修及び訓練を行うものとする。

第三節 関係機関等との連携

(関係機関等に対する協力の求め等)

第十四条 少年鑑別所の長は、第三条各号に掲げる事務を適切に実施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家庭裁判所、少年院、地方更生保護委員会又は保護観察所その他の関係行政機関、学校、病院、児童の福祉に関する機関、民間の篤志家その他の者に対し、協力を求め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協力をした者は、その協力を行うに当たって知り得た鑑別対象者又は在所者に関する秘密を漏らしてはならない。

(公務所等への照会)

第十五条 少年鑑別所の長は、鑑別対象者の鑑別及び在所者の観護処遇の適切な実施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公務所又は公私の団体に照会して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二章 鑑別対象者の鑑別

(鑑別の実施)

第十六条 鑑別対象者の鑑別においては、医学、心理学、教育学、社会学その他の専門的知識及び技術に基づき、鑑別対象者について、その非行又は犯罪に影響を及ぼした資質上及び環境上問題となる事情を明らかにした上、その事情の改善に寄与するため、その者の処遇に資する適切な指針を示すものとする。

2 鑑別対象者の鑑別を行うに当たっては、その者の性格、経歴、心身の状況及び発達の程度、非行の状況、家庭環境並びに交友関係、在所中の生活及び行動の状況（鑑別対象者が在所者である場合に限る。）その他の鑑別を行うために必要な事項に関する調査を行うものとする。

3 前項の調査は、鑑別を求めた者に対して資料の提出、説明その他の必要な協力を求める方法によるほか、必要と認めるときは、鑑別対象者又はその保護者その他参考人との面接、心理検査その他の検査、前条の規定による照会その他相当と認める方法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家庭裁判所等の求めによる鑑別等)

第十七条 少年鑑別所の長は、家庭裁判所、地方更生保護委員会、保護観察所の長、児童自立支援施設の長、児童養護施設の長、少年院の長又は刑事施設の長から、次に掲げる者について鑑別を求められたときは、これを行うものとする。

一 保護処分（更生保護法（平成十九年法律第八十八号）第七十二条第一項並びに少年院法第百三十八条第二項及び第百三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措置を含む。次号において同じ。）又は少年法第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措置に係る事件の調査又は審判を受ける者

二 保護処分の執行を受ける者

三 懲役又は禁錮の刑の執行を受ける者であって、二十歳未満のもの

2 少年鑑別所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鑑別を終えたときは、速やかに、書面で、鑑別を求めた者に対し、鑑別の結果を通知するものとする。

3 前項の通知を受けた者は、鑑別により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てはならない。

(少年院の指定等)

第十八条 少年鑑別所の長は、その職員が家庭裁判所から少年法第二十四条第一

項第三号 の保護処分に係る同項 の決定又は更生保護法第七十二条第一項 の決定の執行の指揮を受けたときは、その決定を受けた者について鑑別を行い、少年院法第三十一条 の規定により各少年院について指定された矯正教育課程（同法第三十条 に規定する矯正教育課程をいう。）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その者を収容すべき少年院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2 少年鑑別所の長は、前項の指定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同項の決定を受けた者に告知し、及び同項の指定に係る少年院の長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3 前項の規定による少年院の長に対する通知に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鑑別の結果を付するものとする。

第三章 在所者の観護処遇

第一節 通則

（観護処遇）

第十九条 在所者の観護処遇は、この章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在所者の観護処遇の原則）

第二十条 在所者の観護処遇に当たっては、懇切にして誠意のある態度をもって接することにより在所者の情操の保護に配慮するとともに、その者の特性に応じた適切な働き掛けを行うことによりその健全な育成に努めるものとする。

2 在所者の観護処遇は、医学、心理学、教育学、社会学その他の専門的知識及び技術を活用して行うものとする。

（未決在所者の観護処遇における留意事項）

第二十一条 未決在所者の観護処遇に当たっては、未決の者としての地位を考慮し、その逃走及び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防止並びにその防御権の尊重に特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在院中在所者の観護処遇における留意事項）

第二十二条 在院中在所者の観護処遇に当たっては、矯正教育を受ける者としての地位を考慮し、その改善更生及び円滑な社会復帰に資するよう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節 入所

(入所時の告知)

第二十三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に対し、その少年鑑別所への入所に際し、在所者としての地位に応じ、次に掲げる事項を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少年鑑別所に収容されている在所者がその地位を異にするに至ったときも、同様とする。

- 一 保健衛生及び医療に関する事項
- 二 物品の貸与及び支給並びに自弁に関する事項
- 三 金品の取扱いに関する事項
- 四 書籍等（書籍、雑誌その他の文書図画（信書及び新聞紙を除く。）をいう。以下同じ。）及び新聞紙の閲覧に関する事項
- 五 宗教上の行為、儀式行事及び教誨に関する事項
- 六 第七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遵守事項
- 七 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関する事項
- 八 第百九条又は第百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出に関する事項
- 九 苦情の申出に関する事項

2 前項の規定による告知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平易な表現を用いて、書面で行う。

(識別のための身体検査)

第二十四条 法務省令で定める少年鑑別所の職員（以下「指定職員」という。）は、在所者について、その少年鑑別所への入所に際し、その者の識別のため必要な限度で、その身体を検査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後必要が生じたときも、同様とする。

2 女子の在所者について前項の規定により検査を行う場合には、女子の指定職員がこれ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女子の指定職員がその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男子の指定職員が少年鑑別所の長の指名する女子の職員を指揮して、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入所の通知)

第二十五条 少年鑑別所の長は、被観護在所者、未決在所者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在所者がその少年鑑別所に入所し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その保護者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第三節 観護処遇の態様等

(観護処遇の態様)

第二十六条 在所者の観護処遇（運動、入浴又は面会の場合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ける観護処遇を除く。）は、居室外において行うことが適当と認める場合を除き、昼夜、居室において行う。

2 在所者の居室は、その観護処遇上又は鑑別上共同室に収容することが適当と認める場合を除き、できる限り、単独室とする。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観護在所者及び未決在所者について、その保護事件又は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防止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その居室は単独室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被観護在所者及び未決在所者は、その保護事件又は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防止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居室外においても他の在所者と接触をさせてはならない。

(起居動作の時間帯)

第二十七条 少年鑑別所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食事、就寝その他の起居動作をすべき時間帯を定め、これを在所者に告知するものとする。

第四節 健全な育成のための支援

(生活態度に関する助言及び指導)

第二十八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が健全な社会生活を営むことができるよう、在所者に対し、その自主性を尊重しつつ、その生活態度に関し必要な助言及び指導を行うものとする。

(学習等の機会の提供等)

第二十九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の情操を豊かにし、その者が健全な社会生活を営むために必要な知識及び能力を向上させることができるよう、在所者に対し、その自主性を尊重しつつ、学習、文化活動その他の活動の機会を与えるとともに、その活動の実施に関し必要な助言及び援助を行うものとす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学校教育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二十六号）に定める義務教育を終了しない在所者に対しては、学習の機会が与えられるよう特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節 保健衛生及び医療

(保健衛生及び医療の原則)

第三十条 少年鑑別所においては、在所者の心身の状況を把握することに努めるとともに、在所者の健全な心身の成長を図り、及び少年鑑別所内の衛生を保持するため、社会一般の保健衛生及び医療の水準に照らし適切な保健衛生上及び医療上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運動)

第三十一条 在所者には、日曜日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日を除き、できる限り戸外で、その健全な心身の成長を図るため適切な運動を行う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審判期日又は公判期日への出頭その他の事情により少年鑑別所の執務時間内にその機会を与え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在所者の清潔義務)

第三十二条 在所者は、身体、着衣及び所持品並びに居室その他日常使用する場所を清潔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入浴)

第三十三条 在所者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少年鑑別所における保健衛生上適切な入浴を行わせる。

(調髪及びひげそり)

第三十四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が調髪又はひげそりを行い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健康診断)

第三十五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に対し、その少年鑑別所への入所後速やかに、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健康診断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少年鑑別所における保健衛生上必要があるときも、同様とする。

2 在所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健康診断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健康診断の実施のため必要な限度内における採血、エックス線撮影その他の医学的処置を拒むことはできない。

(診療等)

第三十六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速やかに、少年鑑別所の職員である医師等（医師又は歯科医師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又は少年鑑別所の長が委嘱する医師等による診療（栄養補給の処置を含む。以下同じ。）を行い、その他必要な医療上の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一号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の心身に著しい障害が生じ、又は他人にその疾病を感染させるおそれがないときは、その者の意思に反しない場合に限る。

- 一 負傷し、若しくは疾病にかかっているとき、又はこれらの疑いがあるとき。
- 二 飲食物を摂取し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心身に著しい障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2 少年鑑別所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診療を行う場合において、必要に応じ在所者を少年鑑別所の外の病院又は診療所に通院させ、やむを得ないときは在所者を少年鑑別所の外の病院又は診療所に入院させることができる。

(指名医による診療)

第三十七条 少年鑑別所の長は、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ている在所者について、その者又はその親権を行う者若しくは未成年後見人（以下「親権を行う者等」という。）が、医師等（少年鑑別所の職員である医師等及び少年鑑別所の長が委嘱する医師等を除く。）を指名して、その在所者がその診療を受けることを申請した場合において、傷病の種類及び程度、入所前にその医師等による診療を受けていたこと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て、その在所者の医療上適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少年鑑別所内において、その在所者が自弁によりその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2 少年鑑別所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す場合において、同項の診療を行う医師等（以下この条において「指名医」という。）の診療方法を確認するため、又はその後にその在所者に対して少年鑑別所において診療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少年鑑別所の職員をしてその診療に立ち会わせ、若しくはその診療に関して指名医に質問させ、又は診療録の写しその他のその診療に関する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指名医は、その診療に際し、少年鑑別所の長が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指示する事項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少年鑑別所の長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指名医が、第二項の規定により少年鑑別所の長が行う措置に従わないとき、前項の規定により少年鑑別所の長が指示する事項を遵守しないとき、

その他その診療を継続することが不適當であるときは、これを中止し、以後、その指名医の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さないことができる。

(在所者の重態の通知等)

第三十八条 少年鑑別所の長は、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っている在所者が重態となり、又はその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その保護者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少年鑑別所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通知を受けた者から同項の在所者を看護したい旨の申出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在所者に対し、その看護を受け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感染症予防上の措置)

第三十九条 少年鑑別所の長は、少年鑑別所内における感染症の発生を予防し、又はそのまん延を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在所者に対し、第三十五条の規定による健康診断又は第三十六条の規定による診療その他必要な医療上の措置を執るほか、予防接種、当該疾病を感染させるおそれなくなるまでの間の隔離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養護のための措置等)

第四十条 少年鑑別所の長は、妊産婦、身体虚弱者その他の養護を必要とする在所者について、その養護を必要とする事情に応じ、傷病者のための措置に準じた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2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が出産するときは、やむを得ない場合を除き、少年鑑別所の外の病院、診療所又は助産所に入院させるものとする。

第六節 物品の貸与等及び自弁

(物品の貸与等)

第四十一条 在所者には、次に掲げる物品（書籍等及び新聞紙を除く。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であって、少年鑑別所における日常生活に必要なもの（第四十三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を貸与し、又は支給する。

- 一 衣類及び寝具
- 二 食事及び湯茶
- 三 日用品、学用品その他の物品

2 在所者には、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必要に応じ、室内装飾品その他の少年鑑別所における日常生活に用いる物品（第四十三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を貸与し、又は嗜好品（酒類及びたばこを除く。次条第一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自弁の物品の使用等）

第四十二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院中在所者以外の在所者が、次に掲げる物品（次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物品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自弁のものを使用し、又は摂取し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は、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並びにその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除き、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一 衣類

二 食料品及び飲料

三 室内装飾品

四 嗜好品

五 日用品、学用品その他の少年鑑別所における日常生活に用いる物品

2 少年鑑別所の長は、在院中在所者が、前項各号に掲げる物品について、自弁のものを使用し、又は摂取し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者の観護処遇上適当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補正器具等の自弁等）

第四十三条 在所者には、次に掲げる物品については、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除き、自弁のものを使用させるものとする。

一 眼鏡その他の補正器具

二 信書を発するのに必要な封筒その他の物品

三 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物品

2 前項各号に掲げる物品について、在所者が自弁のもの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であって、必要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にこれを貸与し、又は支給するものとする。

（物品の貸与等の基準）

第四十四条 第四十一条又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貸与し、又は支給する物品

は、在所者の健全な育成を図るのにふさわしく、かつ、国民生活の実情等を勘案し、在所者としての地位に照らして、適正と認められ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節 金品の取扱い

(金品の検査)

第四十五条 少年鑑別所の職員は、次に掲げる金品について、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

- 一 在所者が入所の際に所持する現金及び物品
- 二 在所者が在所中に取得した現金及び物品（信書を除く。次号において同じ。）であって、同号に掲げる現金及び物品以外のもの（少年鑑別所の長から支給された物品を除く。）
- 三 在所者に交付するため当該在所者以外の者が少年鑑別所に持参し、又は送付した現金及び物品

(入所時の所持物品等の処分)

第四十六条 少年鑑別所の長は、前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物品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在所者に対し、その物品について、その保護者等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への交付その他相当の処分を求めるものとする。

- 一 保管に不便なものであるとき。
 - 二 腐敗し、又は滅失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 三 危険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 2 前項の規定により物品の処分を求めた場合において、在所者が相当の期間内にその処分をしないときは、少年鑑別所の長は、これを売却してその代金を領置する。ただし、売却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は、廃棄することができる。

(被観護在所者への差入物の引取り等)

第四十七条 少年鑑別所の長は、第四十五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の交付の相手方が被観護在所者である場合であって、当該現金若しくは物品が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とき、又は当該物品が刑事訴訟法（少年法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観護在所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許されないものであるときは、その現金又は物品を持参し、又は送付した者（以下「差入人」という。）に対し、その引取りを求めるものとする。

- 一 被觀護在所者の保護者等が持参し、又は送付したものであるとき。
- 二 婚姻關係の調整、訴訟の遂行、修學又は就業の準備その他の被觀護在所者の身分上、法律上、教育上又は職業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處理のため被觀護在所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必要なものであるとき。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少年鑑別所の長は、第四十五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の交付の相手方が被觀護在所者である場合であつて、当該現金又は物品が同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ときにおいて、健全な社会生活を営むために必要な援助を受けることその他被觀護在所者がその交付を受けることを必要とする事情があり、かつ、次の各号（交付の相手方が鑑別対象者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第四号を除く。）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ない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物品が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觀護在所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許されないもの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交付により、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き。
- 二 交付により、被觀護在所者の保護事件又は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 三 交付により、被觀護在所者の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おそれがないとき。
- 四 交付により、被觀護在所者の鑑別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ることとした現金又は物品について、差入人の所在が明らかでないため同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少年鑑別所の長は、その旨を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って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に規定する現金又は物品につ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公告した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差入人がその現金又は物品の引取りをしないときは、その現金又は物品は、国庫に帰属する。

5 第三項に規定する物品であつて、前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少年鑑別所の長は、前項の期間内でも、これを売却してその代金を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売却できないものは、廃棄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八条 少年鑑別所の長は、第四十五条第三号に掲げる物品（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ることとした物品を除く。）の交付の相手方が被觀護在所者である場合であつて、当該物品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差入人に対し、その引取りを求めるものとする。

一 自弁により使用し、若しくは摂取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る物品又は退所の際に必要なと認められる物品（第五十五条及び第六十条において「自弁物品等」という。）以外の物品であるとき。

二 第四十六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物品であるとき。

2 前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ることとした物品について、差入人の所在が明らかでないため同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若しくはその引取りを求め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き、又は差入人がその引取りを拒んだときは、少年鑑別所の長は、被観護在所者に対し、その保護者等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への交付その他相当の処分を求めるものとする。

3 第四十六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処分を求め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四十九条 少年鑑別所の長は、第四十五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の交付の相手方が被観護在所者である場合であって、第四十七条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ないこととしたときにおいて、被観護在所者がその交付を受けることを拒んだときは、差入人に対し、その引取りを求め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四十七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を準用する。

（未決在所者への差入物の引取り等）

第五十条 少年鑑別所の長は、第四十五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の交付の相手方が未決在所者（被観護在所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である場合であって、当該現金又は物品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差入人に対し、その引取りを求めるものとする。

一 交付（差入人が未決在所者の保護者等であるものを除く。第三号において同じ。）により、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二 刑事訴訟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未決在所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許されない物品であるとき。

三 交付により、未決在所者の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四 差入人の氏名が明らかでないものであるとき。

2 前三条（第四十七条第一項及び第二項を除く。）の規定は、第四十五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の交付の相手方が未決在所者であ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四十七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第一項」とあり、並びに第四十八条第一項中「前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五十条第一項」と、前条中「第四十七条第一項」とあるのは「次条第一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在院中在所者への差入物の引取り等)

第五十一条 少年鑑別所の長は、第四十五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の交付の相手方が在院中在所者である場合であって、当該現金又は物品が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ときは、差入人に対し、その引取りを求めるものとする。

- 一 在院中在所者の保護者等が持参し、又は送付したものであるとき。
- 二 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修学又は就業の準備その他の在院中在所者の身分上、法律上、教育上又は職業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在院中在所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必要なものであるとき。
- 三 在院中在所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その改善更生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とき。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少年鑑別所の長は、第四十五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の交付の相手方が在院中在所者である場合であって、当該現金又は物品が同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ときにおいて、健全な社会生活を営むために必要な援助を受けることその他在院中在所者がその交付を受けることを必要とする事情があり、かつ、次の各号(交付の相手方が鑑別対象者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第三号を除く。)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ないことができる。

- 一 交付により、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き。
- 二 交付により、在院中在所者の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 三 交付により、在院中在所者の鑑別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3 第四十七条から第四十九条まで(第四十七条第一項及び第二項を除く。)の規定は、第四十五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の交付の相手方が在院中在所者であ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四十七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第一項」とあり、第四十八条第一項中「前条第一項」とあり、並びに第四十九条中「第四十七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五十一条第一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各種在所者への差入物の引取り等)

第五十二条 第四十七条から第四十九条まで(第四十七条第二項ただし書及び第二号を除く。)の規定は、第四十五条第三号に掲げる現金又は物品の交付の相手方が各種在所者であ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四十七条第一項中「とき、又は当該物品が刑事訴訟法(少年法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観護在所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許されないものであるとき」とあるのは、「とき」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金品の領置)

第五十三条 次に掲げる金品は、少年鑑別所の長が領置する。

一 第四十五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物品であって、第四十六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

二 第四十五条第三号に掲げる物品であって、第四十七条第一項（前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四十八条第一項（第五十条第二項、第五十一条第三項及び前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五十条第一項又は第五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ないこととしたもの（在所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を拒んだ物品を除く。）

三 第四十五条各号に掲げる現金であって、第四十七条第一項（前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五十条第一項又は第五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引取りを求めないこととしたもの

2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について領置している物品（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の総量（第五十五条第一号において「領置総量」という。）が領置限度量（在所者としての地位の別ごとに在所者一人当たりについて領置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量として少年鑑別所の長が定める量をいう。同号において同じ。）を超えるときは、当該在所者に対し、その超過量に相当する量の物品について、その保護者等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への交付その他相当の処分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腐敗し、又は滅失するおそれが生じた物品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3 第四十六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処分を求め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領置物品の使用等)

第五十四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について領置している物品のうち、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在所者が使用し、又は摂取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ついて、在所者がその引渡しを求めた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引き渡すものとする。ただし、その者が所持する物品の総量が次項の規定により所持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量を超えることとな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少年鑑別所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項本文の規定により在所者が引渡しを受けて所持する物品及び在所者が受けた信書でその保管するものに関し、これらを所持し、又は保管する方法並びに所持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量及び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信書の通数について、少年鑑別所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少年鑑別所の長は、第一項本文の規定により在所者が引渡しを受けて所持する物品又は在所者が受けた信書でその保管するものについて、その者が、少年鑑別所の長においてその物品の引渡しを受け、又はその信書を領置することを求めた場合には、その引渡しを受け、又は領置するものとする。

4 少年鑑別所の長は、第一項本文の規定により在所者が引渡しを受けて所持する物品又は在所者が受けた信書でその保管するものについて、在所者が第二項の規定による制限に違反したときは、その物品を取り上げること又はその信書を取り上げて領置することができる。

(領置金の使用)

第五十五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が、自弁物品等を購入し、又は少年鑑別所における日常生活上自ら負担すべき費用に充てるため、領置されている現金を使用することを申請した場合には、必要な金額の現金の使用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自弁物品等を購入するための現金の使用について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購入により、領置総量が領置限度量を超えることとなるとき。
- 二 在所者が被観護在所者又は未決在所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刑事訴訟法（少年法）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購入する自弁物品等の交付を受けることが許されないとき。

(被観護在所者の領置金品の他の者への交付)

第五十六条 少年鑑別所の長は、被観護在所者が、領置されている金品（第九十八条に規定する文書図画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他の者（当該少年鑑別所に収容されている者を除く。同項及び次条から第五十九条までにおいて同じ。）への交付（信書の発信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同項及び次条から第五十九条までにおいて同じ。）を申請した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当該物品が刑事訴訟法（少年法）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同項において同じ。）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交付が許されないもの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被観護在所者の保護者等に交付するとき。
- 二 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修学又は就業の準備その他の被観護在所者の身分上、法律上、教育上又は職業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被観護在所者が交付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き。

2 少年鑑別所の長は、被観護在所者が、領置されている金品について、他の者

への交付を申請した場合であって、前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ときにおいて、健全な社会生活を営むために必要な援助を受けることその他被観護在所者がその金品を交付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事情があり、かつ、次の各号（被観護在所者が鑑別対象者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第四号を除く。）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物品が刑事訴訟法 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交付が許されないもの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交付により、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き。
- 二 交付により、被観護在所者の保護事件又は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 三 交付により、被観護在所者の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おそれがないとき。
- 四 交付により、被観護在所者の鑑別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未決在所者の領置金品の他の者への交付）

第五十七条 少年鑑別所の長は、未決在所者（被観護在所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が、領置されている金品（第九十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九十八条に規定する文書図画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他の者への交付を申請した場合に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 一 交付（その相手方が未決在所者の保護者等であるものを除く。第三号において同じ。）により、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
- 二 刑事訴訟法 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交付が許されない物品であるとき。
- 三 交付により、未決在所者の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おそれがあるとき。

（在院中在所者の領置金品の他の者への交付）

第五十八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院中在所者が、領置されている金品（第百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九十八条に規定する文書図画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他の者への交付を申請した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 一 在院中在所者の保護者等に交付するとき。
- 二 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修学又は就業の準備その他の在院中在所者の身分上、法律上、教育上又は職業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在院中在所者が交付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き。
- 三 在院中在所者が交付することが、その改善更生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

2 少年鑑別所の長は、在院中在所者が、領置されている金品について、他の者への交付を申請した場合であって、前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ときにおいて、健全な社会生活を営むために必要な援助を受けることその他在院中在所者がその金品を交付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事情があり、かつ、次の各号（在院中在所者が鑑別対象者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第三号を除く。）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 一 交付により、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き。
- 二 交付により、在院中在所者の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 三 交付により、在院中在所者の鑑別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各種在所者の領置金品の他の者への交付）

第五十九条 第五十六条（第一項ただし書並びに第二項ただし書及び第二号を除く。）の規定は、各種在所者が領置されている金品（第百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九十八条に規定する文書図画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他の者への交付を申請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差入れ等に関する制限）

第六十条 少年鑑別所の長は、この節に定め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差入人による在所者に対する金品の交付及び在所者による自弃物品等の購入について、少年鑑別所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領置物の引渡し）

第六十一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の退所の際、領置している金品をその者又はその親権を行う者等に引き渡すものとする。

（退所者の遺留物）

第六十二条 退所した在所者の遺留物（少年鑑別所に遺留した金品をいう。以下同じ。）は、その退所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その者又はその親権を行う者等からその引渡しを求める申出がなく、又はその引渡しに要する費用の提供がないときは、国庫に帰属する。

2 前項の期間内でも、少年鑑別所の長は、腐敗し、又は滅失するおそれが生じた遺留物は、廃棄することができる。

(逃走者等の遺留物)

第六十三条 在所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その者又はその親権を行う者等から引渡しを求める申出がなく、又は引渡しに要する費用の提供がないときは、その遺留物は、国庫に帰属する。

一 逃走したとき 逃走した日

二 第七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に規定する避難を必要とする状況がなくなった後速やかに同項に規定する場所に出頭しなかったとき 避難を必要とする状況がなくなった日

2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遺留物について準用する。

(死亡者の遺留物)

第六十四条 死亡した在所者の遺留物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遺族等（法務省令で定める遺族その他の者をいう。以下同じ。）に対し、その申請に基づき、引き渡すものとする。

2 死亡した在所者の遺留物が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遺族等の所在が明らかでないため第百二十九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少年鑑別所の長は、その旨を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って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遺留物は、第百二十九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公告をした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第一項の申請がないときは、国庫に帰属する。

4 第六十二条第二項の規定は、第一項の遺留物について準用する。

第八節 書籍等の閲覧等

(少年鑑別所の書籍等)

第六十五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の健全な育成を図るのにふさわしい書籍等の整備に努め、在所者が学習、娯楽等の目的で自主的にこれを閲覧する機会を与えるものとする。

2 前項に規定する閲覧の方法は、少年鑑別所の長が定める。

(在院中在所者以外の在所者の自弁の書籍等及び新聞紙の閲覧)

第六十六条 在院中在所者以外の在所者が自弁の書籍等及び新聞紙を閲覧することは、この条及び第六十八条の規定による場合のほか、これを禁止し、又は制限してはならない。

2 少年鑑別所の長は、在院中在所者以外の在所者が自弁の書籍等又は新聞紙を閲覧することにより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閲覧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 二 在院中在所者以外の在所者が被観護在所者又は未決在所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保護事件又は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 三 在院中在所者以外の在所者の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おそれがあるとき。
- 四 在院中在所者以外の在所者が鑑別対象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鑑別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3 前項の規定により閲覧を禁止すべき事由の有無を確認するため自弁の書籍等又は新聞紙の翻訳が必要であ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在院中在所者以外の在所者にその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負担すべき費用を負担しないときは、その閲覧を禁止する。

(在院中在所者の自弁の書籍等及び新聞紙の閲覧)

第六十七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院中在所者が、自弁の書籍等又は新聞紙を閲覧したい旨の申出をした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在院中在所者が鑑別対象者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第三号を除く。)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 一 閲覧により、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 二 閲覧により、在院中在所者の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 三 閲覧により、在院中在所者の鑑別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2 少年鑑別所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閲覧を許すか否かを判断するに当たっては、書籍等及び新聞紙の閲覧が、一般に、青少年の健全な育成に資するものであること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閲覧を許す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自弁の書籍等又は新聞紙の翻訳が必要であ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在院中在所者にその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負担すべき費用を負担しないときは、その閲覧を許さない。

(新聞紙に関する制限)

第六十八条 少年鑑別所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在所者が取得

することができる新聞紙の範囲及び取得方法について、少年鑑別所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時事の報道に接する機会の付与)

第六十九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に対し、日刊新聞紙の備付け、報道番組の放送その他の方法により、できる限り、主要な時事の報道に接する機会を与え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九節 宗教上の行為等

(一人で行う宗教上の行為)

第七十条 在所者が一人で行う礼拝その他の宗教上の行為は、これを禁止し、又は制限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宗教上の儀式行事及び教誨)

第七十一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が宗教家(民間の篤志家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行う宗教上の儀式行事に参加し、又は宗教家の行う宗教上の教誨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機会を設け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少年鑑別所の長は、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在所者に前項に規定する儀式行事に参加させず、又は同項に規定する教誨を受け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

第十節 規律及び秩序の維持

(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

第七十二条 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は、在所者の観護処遇及び鑑別の適切な実施を確保し、並びにその健全な育成を図るのにふさわしい安全かつ平穏な環境を保持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適正に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執る措置は、そのために必要な限度を超えてはならない。

(遵守事項等)

第七十三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が遵守すべき事項(次項において「遵守事項」という。)を定める。

2 遵守事項は、在所者としての地位に応じ、次に掲げる事項を具体的に定めるものとする。

- 一 犯罪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 二 他人に対し、粗野若しくは乱暴な言動をし、又は迷惑を及ぼす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 三 自身を傷つけ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 四 少年鑑別所の職員の職務の執行を妨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 五 自己又は他の在所者の収容の確保を妨げるおそれのあ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 六 少年鑑別所の安全を害するおそれのあ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 七 少年鑑別所内の衛生又は風紀を害す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 八 金品について、不正な使用、所持、授受その他の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
 - 九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な事項
 - 十 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定めた遵守事項に違反する行為を企て、あおり、唆し、又は援助してはならないこと。
- 3 前二項のほか、少年鑑別所の長又はその指定する職員は、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在所者に対し、その生活及び行動について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身体の検査等)

第七十四条 指定職員は、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在所者について、その身体、着衣、所持品及び居室を検査し、並びにその所持品を取り上げて一時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二十四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女子の在所者の身体及び着衣の検査について準用する。

3 指定職員は、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少年鑑別所内において、在所者以外の者（弁護士である付添人若しくは在所者若しくはその保護者の依頼により付添人となろうとする弁護士又は弁護人等（弁護士又は刑事訴訟法第三十九条第一項 に規定する弁護人となろうとする者をいう。以下同じ。）を除く。）の着衣及び携帯品を検査し、並びにその者の携帯品を取り上げて一時保管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検査は、文書図画の内容の検査に及んではない。

(制止等の措置)

第七十五条 指定職員は、在所者が自身を傷つけ若しくは他人に危害を加え、逃走し、少年鑑別所の職員の職務の執行を妨げ、その他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著しく害する行為を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で、その行為を制止し、その在所者を拘束し、その他その行為を抑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2 指定職員は、在所者以外の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で、その行為を制止し、その行為をする者を拘束し、その他その行為を抑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一 少年鑑別所に侵入し、その設備を損壊し、少年鑑別所の職員の職務執行を妨げ、又はこれらの行為をまさにしようとするとき。

二 指定職員の要求を受けたのに少年鑑別所から退去しないとき。

三 在所者の逃走又は少年鑑別所の職員の職務執行の妨害を、現場で、援助し、あおり、又は唆すとき。

四 在所者に危害を加え、又はまさに加えようとするとき。

3 前二項の措置に必要な警備用具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

(手錠の使用)

第七十六条 指定職員は、在所者を護送するとき、又は在所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の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やむを得ないときは、少年鑑別所の長の命令により、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手錠（手錠に附属するひもがある場合にはこれを含む。以下この条及び第百十条第一項第五号において同じ。）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一 逃走すること。

二 自身を傷つけ、又は他人に危害を加えること。

三 少年鑑別所の設備、器具その他の物を損壊すること。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少年鑑別所の長の命令を待ついとまがないときは、指定職員は、その命令を待たないで、手錠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速やかに、その旨を少年鑑別所の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在所者を護送する際に手錠を使用するに当たっては、その名誉をいさずらに害することのないよう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手錠の制式は、法務省令で定める。

(保護室への収容)

第七十七条 指定職員は、在所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

て、やむを得ないときは、少年鑑別所の長の命令により、その者を保護室に收容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自身を傷つけるおそれがあるとき。

二 次のイからハ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維持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き。

イ 指定職員の制止に従わず、大声又は騒音を発するとき。

ロ 他人に危害を加えるおそれがあるとき。

ハ 少年鑑別所の設備、器具その他の物を損壊し、又は汚損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少年鑑別所の長の命令を待ついとまがないときは、指定職員は、その命令を待たないで、その在所者を保護室に收容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は、速やかに、その旨を少年鑑別所の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保護室への收容の期間は、七十二時間以内とする。ただし、特に継続の必要がある場合には、少年鑑別所の長は、四十八時間ごとにこれを更新することができる。

4 保護室に收容されている在所者に対しては、その心情の安定を図るための適切な働き掛けを行う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5 少年鑑別所の長は、第三項の期間中であっても、保護室への收容の必要がなくなったときは、直ちにその收容を中止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6 在所者を保護室に收容し、又はその收容の期間を更新した場合には、少年鑑別所の長は、速やかに、その在所者の健康状態について、少年鑑別所の職員である医師又は少年鑑別所の長が委嘱する医師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7 保護室の構造及び設備の基準は、法務省令で定める。

(收容のための連戻し)

第七十八条 指定職員は、在所者が逃走した場合には、これを連れ戻すことができる。ただし、逃走の時から四十八時間を経過した後は、被観護措置者等(観護の措置(当該措置が少年法第四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より執ら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事件が家庭裁判所に送致されていないときを除く。))が執られて收容されている者、少年院法第二条第二号に規定する保護処分在院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在所者及び少年法第二十六条の二の規定により收容されている者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次条第四項において同

じ。)にあっては裁判官のあらかじめ発する連戻状によらなければ連戻しに着手することができず、被観護措置者等以外の在所者にあっては連戻しに着手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連戻しが困難である場合には、少年鑑別所の長は、警察官に対して連戻しのための援助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援助を求められた警察官については、同項の規定を準用する。

3 第一項ただし書（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連戻状は、少年鑑別所の長の請求により、その少年鑑別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裁判官が発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少年法第四条 及び第三十六条 の規定を準用する。

（災害時の避難及び解放）

第七十九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地震、火災その他の災害に際し、少年鑑別所内において避難の方法がないときは、在所者を適当な場所に護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在所者を護送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少年鑑別所の長は、その者を少年鑑別所から解放することができる。地震、火災その他の災害に際し、少年鑑別所の外にある在所者を避難させるため適当な場所に護送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も、同様とする。

3 前項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者は、避難を必要とする状況がなくなった後速やかに、少年鑑別所又は少年鑑別所の長が指定した場所に出頭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指定職員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被観護措置者等が前項の規定に違反して少年鑑別所又は指定された場所に出頭しないときは、裁判官のあらかじめ発する連戻状により、その者を連れ戻すことができる。

5 前項の規定による連戻しが困難である場合には、少年鑑別所の長は、警察官に対して連戻しのための援助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援助を求められた警察官については、同項の規定を準用する。

6 前条第三項の規定は、第四項（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連戻状について準用する。

第十一節 外部交通

第一款 面会

第一目 被觀護在所者

(面会の相手方)

第八十条 少年鑑別所の長は、被觀護在所者に対し、次に掲げる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第百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刑事訴訟法 (少年法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 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面会が許され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被觀護在所者の保護者等

二 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修学又は就業の準備その他の被觀護在所者の身分上、法律上、教育上又は職業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面会することが必要な者

2 少年鑑別所の長は、被觀護在所者に対し、前項各号に掲げる者以外の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健全な社会生活を営むために必要な援助を受けることその他面会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事情があり、かつ、次の各号(被觀護在所者が鑑別対象者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第四号を除く。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ただし、刑事訴訟法 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面会が許され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面会により、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二 面会により、被觀護在所者の保護事件又は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三 面会により、被觀護在所者の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おそれがないとき。

四 面会により、被觀護在所者の鑑別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面会の立会い等)

第八十一条 少年鑑別所の長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被觀護在所者の面会(付添人等(付添人又は在所者若しくはその保護者の依頼により付添人となろうとする弁護士をいう。以下同じ。))又は弁護人等との面会を除く。)に立ちかわ

せ、又はその面会の状況を録音させ、若しくは録画させるものとする。ただし、前条第二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立会い並びに録音及び録画（次項において「立会い等」という。）を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

2 少年鑑別所の長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観護在所者の次に掲げる者との面会については、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又は被観護在所者の保護事件若しくは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べき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を除き、立会い等をさせてはならない。

一 自己に対す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観護処遇又は鑑別に関し調査を行う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の職員

二 自己に対す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観護処遇又は鑑別に関し弁護士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五号）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職務を遂行する弁護士

（面会の一時停止及び終了）

第八十二条 少年鑑別所の職員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付添人等又は弁護士等との面会の場合にあっては、第一号ロに限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行為若しくは発言を制止し、又はその面会を一時停止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面会の一時停止のため、被観護在所者又は面会の相手方に対し面会の場所からの退出を命じ、その他必要な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一 被観護在所者又は面会の相手方が次のイ又はロ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するとき。

イ 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制限に違反する行為

ロ 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行為

二 被観護在所者又は面会の相手方が次のイからト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内容の発言をするとき。

イ 暗号の使用その他の理由によって、少年鑑別所の職員が理解できないもの

ロ 犯罪又は非行を助長し、又は誘発するもの

ハ 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もの

ニ 被観護在所者の保護事件又は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もの

ホ 被観護在所者の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おそれのあるもの

ヘ 特定の用務の処理のため必要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許された面会において、その用務の処理のため必要な範囲を明らかに逸脱するもの

ト 被観護在所者が鑑別対象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鑑別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もの

2 少年鑑別所の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面会が一時停止された場合において、面会を継続させ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面会を終わらせることができる。

(面会に関する制限)

第八十三条 少年鑑別所の長は、被觀護在所者の面会（付添人等又は弁護人等との面会を除く。）に関し、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面会の相手方の人数、面会の場所、日及び時間帯、面会の時間及び回数その他面会の態様について、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面会の回数について制限をするときは、その回数は、一日につき一回を下回ってはならない。

第八十四条 被觀護在所者の付添人等又は弁護人等との面会の日及び時間帯は、日曜日その他政令で定める日以外の日の少年鑑別所の執務時間内とする。

2 前項の面会の相手方の人数は、三人以内とする。

3 少年鑑別所の長は、付添人等又は弁護人等から前二項の定めによらない面会の申出がある場合においても、少年鑑別所の管理運営上支障があるとき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4 少年鑑別所の長は、第一項の面会に関し、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面会の場所について、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その他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目 未決在所者

(面会の相手方)

第八十五条 少年鑑別所の長は、未決在所者（被觀護在所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目において同じ。）に対し、他の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次項又は第百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刑事訴訟法 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面会が許され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少年鑑別所の長は、犯罪性のある者その他未決在所者が面会することにより、その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おそれがある者（未決在所者の保護者等を除く。）については、未決在所者がその者と面会す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付添人等又は弁護人等と面会する場合及び被告人若しくは被疑

者としての権利の保護又は訴訟の準備その他の権利の保護のた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面会の立会い等)

第八十六条 少年鑑別所の長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未決在所者の面会(付添人等又は弁護士等との面会を除く。)に立ち合わせ、又はその面会の状況を録音させ、若しくは録画させるものとする。ただし、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立会い並びに録音及び録画(次項において「立会い等」という。)を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

一 面会により、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二 面会により、未決在所者の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三 面会により、未決在所者の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おそれがないとき。

2 少年鑑別所の長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未決在所者の次に掲げる者との面会については、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又は未決在所者の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べき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を除き、立会い等をさせてはならない。

一 自己に対す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観護処遇に関し調査を行う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の職員

二 自己に対す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観護処遇に関し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職務を遂行する弁護士

(面会の一時停止及び終了等)

第八十七条 第八十二条から第八十四条まで(第八十二条第一項第二号へ及びトを除く。)の規定は、未決在所者の面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号ニ中「保護事件又は刑事事件」とあるのは、「刑事事件」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三目 在院中在所者

(面会の相手方)

第八十八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院中在所者に対し、次に掲げる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第一百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これを許すものとする。

- 一 在院中在所者の保護者等
 - 二 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修学又は就業の準備その他の在院中在所者の身分上、法律上、教育上又は職業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面会することが必要な者
 - 三 在院中在所者の更生保護に関係のある者その他の面会により在院中在所者の改善更生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者
- 2 少年鑑別所の長は、在院中在所者に対し、前項各号に掲げる者以外の者から面会の申出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健全な社会生活を営むために必要な援助を受けることその他面会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事情があり、かつ、次の各号（在院中在所者が鑑別対象者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第三号を除く。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すことができる。
- 一 面会により、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 二 面会により、在院中在所者の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 三 面会により、在院中在所者の鑑別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面会の立会い等）

第八十九条 少年鑑別所の長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在院中在所者の面会（付添人等又は弁護人等との面会を除く。）に立ち会わせ、又はその面会の状況を録音させ、若しくは録画させるものとする。ただし、前条第二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立会い並びに録音及び録画（次項において「立会い等」という。）を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

2 少年鑑別所の長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在院中在所者の次に掲げる者との面会については、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べき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を除き、立会い等をさせてはならない。

- 一 自己に対す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少年鑑別所において受けた観護処遇若しくは鑑別又は自己に対する少年院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少年院において受けた処遇に関し調査を行う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の職員
- 二 自己に対す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少年鑑別所において受けた観護処遇若しくは鑑別又は自己に対する少年院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少年院において受けた処遇に関し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 に規定する職務を遂行する弁護士

(面会の一時停止及び終了等)

第九十条 第八十二条から第八十四条まで(第八十二条第一項第二号ニを除く。)の規定は、在院中在所者の面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号ホ中「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とあるのは、「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四目 各種在所者

第九十一条 第一目(第八十条第一項ただし書並びに第二項ただし書及び第二号並びに第八十二条第一項第二号ニを除く。)の規定は、各種在所者の面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八十一条第一項中「前条第二項各号」とあるのは「前条第二項各号(第二号を除く。)」と、同条第二項中「結果又は被観護在所者の保護事件若しくは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結果」とあるのは「結果」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款 信書の発受

第一目 被観護在所者

(発受を許す信書)

第九十二条 少年鑑別所の長は、被観護在所者に対し、この目又は第一百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他の者との間で信書を発受する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ただし、刑事訴訟法(少年法)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信書の発受が許され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信書の検査)

第九十三条 少年鑑別所の長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被観護在所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検査を行わせるものとする。

2 次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は、前項の検査は、これらの信書に該当す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第三号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又は被観護在所者の保護事件若しくは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べき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被觀護在所者が付添人等又は弁護士等から受ける信書
- 二 被觀護在所者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から受ける信書
- 三 被觀護在所者が自己に対す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觀護処遇又は鑑別に関し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 に規定する職務を遂行する弁護士（弁護士法人を含む。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から受ける信書
- 3 少年鑑別所の長は、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じ、又は被觀護在所者の保護事件若しくは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る場合には、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一項の検査を行わせないことができる。

（信書の内容による差止め等）

第九十四条 少年鑑別所の長は、前条の規定による検査の結果、被觀護在所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その全部又は一部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発受を差し止め、又はその該当箇所を削除し、若しくは抹消することができる。同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これらの信書に該当することを確認する過程においてその全部又は一部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が判明した場合も、同様とする。

- 一 暗号の使用その他の理由によって、少年鑑別所の職員が理解できない内容のものであるとき。
- 二 発受によって、刑罰法令に触れる行為をすることとなり、又は犯罪若しくは非行を助長し、若しくは誘発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
- 三 発受によって、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 四 威迫にわたる記述又は明らかな虚偽の記述があるため、受信者を著しく不安にさせ、又は受信者に損害を被らせるおそれがあるとき。
- 五 受信者を著しく侮辱する記述があるとき。
- 六 発受によって、被觀護在所者の保護事件又は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の隠滅の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 七 発受によって、被觀護在所者の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おそれがあるとき。
- 八 被觀護在所者が鑑別対象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発受によって、その鑑別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觀護在所者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であってその機関の権限に属する事項を含むもの及び被觀護在所者が弁護士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であってその被觀護在所者に係る弁護士法

第三条第一項 に規定する弁護士職務に属する事項を含むものについては、その発受の差止め又はその事項に係る部分の削除若しくは抹消は、その部分の全部又は一部が前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又は第六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限り、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

(信書に関する制限)

第九十五条 少年鑑別所の長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被観護在所者が発する信書の作成要領、その発信の申請の日及び時間帯、被観護在所者が発信を申請する信書(付添人等又は弁護士等に対して発するものを除く。)の通数並びに被観護在所者の信書の発受の方法について、少年鑑別所の管理運営上必要な制限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被観護在所者が発信を申請する信書の通数について制限をするときは、その通数は、一日につき一通を下回ってはならない。

(発信に要する費用)

第九十六条 信書の発信に要する費用については、被観護在所者が負担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いて、少年鑑別所の長が発信の目的に照らし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全部又は一部を国庫の負担とする。

(発受を禁止した信書等の取扱い)

第九十七条 少年鑑別所の長は、第九十四条又は第一百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信書の発受を差し止め、又は禁止した場合にはその信書を、第九十四条の規定により信書の一部を削除した場合にはその削除した部分を保管するものとする。

2 少年鑑別所の長は、第九十四条の規定により信書の記述の一部を抹消する場合には、その抹消する部分の複製を作成し、これを保管するものとする。

3 少年鑑別所の長は、被観護在所者の退所の際、前二項の規定により保管する信書の全部若しくは一部又は複製(以下「発受禁止信書等」という。)をその者又はその親権を行う者等に引き渡すものとする。

4 少年鑑別所の長は、被観護在所者が死亡した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遺族等に対し、その申請に基づき、発受禁止信書等を引き渡すものとする。

5 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により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これを引き渡さないものとする。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その引渡しにより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の維持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も、同様とする。

一 退所した被觀護在所者又はその親権を行う者等が、被觀護在所者の退所後に、發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を求めたとき。

二 被觀護在所者が第六十三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被觀護在所者又はその親権を行う者等が、發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を求めたとき。

6 第六十二条第一項、第六十三条第一項並びに第六十四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被觀護在所者に係る發受禁止信書等（前項の規定により引き渡さないこととされたものを除く。）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中「第一項の申請」とあるのは、「第九十七条第四項の申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7 第五項の規定により引き渡さないこととした發受禁止信書等は、被觀護在所者の退所若しくは死亡の日又は被觀護在所者が第六十三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日から起算して三年を経過した日に、国庫に帰属する。

（被觀護在所者作成の文書図画）

第九十八条 少年鑑別所の長は、被觀護在所者が、その作成した文書図画（信書を除く。）を他の者に交付することを申請した場合には、その交付につき、被觀護在所者が發する信書に準じて検査その他の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

第二目 未決在所者

第九十九条 前目（第九十四条第一項第八号を除く。）の規定は、未決在所者（被觀護在所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が發受する信書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九十二条ただし書中「刑事訴訟法（少年法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とあるのは「刑事訴訟法」と、第九十三条第二項ただし書及び第三項中「保護事件若しくは刑事事件」とあり、並びに第九十四条第一項第六号中「保護事件又は刑事事件」とあるのは「刑事事件」と、第九十三条第二項第三号中「觀護処遇又は鑑別」とあるのは「觀護処遇」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三目 在院中在所者

（發受を許す信書）

第一百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院中在所者に対し、この目又は第一百七条第三項の

規定により禁止される場合を除き、他の者との間で信書を発受することを許すものとする。

(信書の検査)

第百一条 少年鑑別所の長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在院中在所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検査を行わせるものとする。

2 次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は、前項の検査は、これらの信書に該当す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第四号に掲げる信書について、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べき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在院中在所者が付添人等又は弁護士等から受ける信書

二 在院中在所者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から受ける信書

三 在院中在所者が自己に対す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少年鑑別所において受けた観護処遇若しくは鑑別又は自己に対する少年院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少年院において受けた処遇に関し調査を行う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に対して発する信書

四 在院中在所者が自己に対す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少年鑑別所において受けた観護処遇若しくは鑑別又は自己に対する少年院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少年院において受けた処遇に関し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 に規定する職務を遂行する弁護士との間で発受する信書

3 少年鑑別所の長は、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じ、又は在院中在所者の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る場合には、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一項の検査を行わせないことができる。

(信書の発受の禁止)

第百二条 少年鑑別所の長は、犯罪性のある者その他在院中在所者が信書を発受することにより、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し、又は在院中在所者の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者(在院中在所者の保護者等を除く。)については、在院中在所者がその者との間で信書を発受す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婚姻関係の調整、訴訟の遂行、修学又は就業の準備その他の在院中在所者の身分上、法律上、教育上又は職業上の重大な利害に係る用務の処理のため信書を発受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信書の内容による差止め等)

第百三条 第九十四条から第九十八条まで(第九十四条第一項第六号を除く。)

の規定は、在院中在所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前条」とあるのは「第百一条」と、同項第七号中「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とあるのは「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と、第九十四条第二項中「第三号まで又は第六号」とあるのは「第三号まで」と、第九十七条第一項中「又は第百七条第三項」とあるのは「、第百二条又は第百七条第三項」と、同条第五項中「生ずる」とあるのは「生じ、又は在院中在所者の犯罪若しくは非行を助長し、若しくは誘発す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四目 各種在所者

第百四条 第九十二条本文、第九十四条から第九十八条まで（第九十四条第一項第六号を除く。）及び第百一条の規定は、各種在所者が発受する信書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前条」とあるのは「第百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一条」と、第九十四条第二項中「第三号まで又は第六号」とあるのは「第三号まで」と、第百一条第二項第三号及び第四号中「若しくは鑑別又は自己に対する少年院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少年院において受けた処遇」とあるのは「又は鑑別」と、同条第三項中「結果を生じ、又は在院中在所者の改善更生に支障」とあるのは「結果」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三款 電話等による通信

（電話等による通信）

第百五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院中在所者に対し、その改善更生又は円滑な社会復帰に資すると認めるとき、その他相当と認めるときは、第八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者との間において、電話その他政令で定める電気通信の方法による通信を行う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2 第九十六条の規定は、前項の通信について準用する。

（通信の確認等）

第百六条 少年鑑別所の長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前条第一項の通信の内容を確認するため、その通信を受けさせ、又はその内容を記録させるものとする。ただし、次の各号（在院中在所者が鑑別対象者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第三号を除く。）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通信により、少年鑑別所の規律及び秩序を害する結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 二 通信により、在院中在所者の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 三 通信により、在院中在所者の鑑別の適切な実施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いとき。
- 2 第八十二条（第一項第一号イ及び第二号ニを除く。）の規定は、在院中在所者による前条第一項の通信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号ホ中「健全な育成を著しく妨げる」とあるのは、「改善更生に支障を生ず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四款 雜則

（外国語による面会等）

第一百七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又はその面会等（面会又は第二百五条第一項の通信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相手方が国語に通じない場合には、外国語による面会等を許す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発言又は通信の内容を確認するため通訳又は翻訳が必要であ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在所者にその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又はその信書の発受の相手方が国語に通じない場合その他相当と認める場合には、外国語による信書の発受を許す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信書の内容を確認するため翻訳が必要であ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在所者にその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在所者が前二項の規定により負担すべき費用を負担しないときは、その面会等又は信書の発受を許さない。

（条約の効力）

第一百八条 この節に規定する面会及び信書の発受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条約に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規定による。

第十二節 救済の申出等

第一款 救済の申出

（救済の申出）

第一百九条 在所者は、自己に対す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観護処遇又は鑑別について苦情があるときは、書面で、法務大臣に対し、救済を求める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一百十条 退所した者は、自己に対する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又は自己に対する第四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少年鑑別所の職員による行為について苦情があるときは、書面で、法務大臣に対し、救済を求める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第六十六条第三項又は第六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費用を負担させる処分

二 第九十七条第五項前段（第九十九条、第百三条及び第百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百十五条第一項第九号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をしない処分（第九十七条第三項（第九十九条、第百三条及び第百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引渡しに係るものに限る。同号において同じ。）

三 第一百七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費用を負担させる処分

四 身体に対する有形力の行使

五 手錠の使用

六 保護室への収容

2 前項の規定による申出は、退所し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三十日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天災その他前項の期間内に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出をし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やむを得ない理由があ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理由がやんだ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一週間以内に限り、そ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一百十一条 第百九条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出（以下「救済の申出」という。）は、これを行う者が自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相談員）

第一百十二条 少年鑑別所の長の指名を受けた少年鑑別所の職員（次項及び第一百二十条第一項において「相談員」という。）は、在所者に対し、救済の申出に関する相談に応じるものとする。

2 相談員は、その相談によって知り得た救済の申出の内容をその少年鑑別所の他の職員に漏らしてはならない。

（調査）

第一百十三条 法務大臣は、職権で、救済の申出に関して必要な調査をするものとする。

2 法務大臣は、前項の調査を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きは、少年鑑別所の長に対し、報告若しくは資料その他の物件の提出を命じ、又はその指名する職員を

して、救済の申出をした者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質問をさせ、若しくは物件の提出を求めさせ、これらの者が提出した物件を留め置かせ、若しくは検証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処理)

第百十四条 法務大臣は、救済の申出を受けたときは、これを誠実に処理するものとする。

2 法務大臣は、救済の申出の内容が、その申出をした者に対する第百十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少年鑑別所の職員による行為に係るもの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できる限り六十日以内に、それら以外のもの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できる限り九十日以内にその処理を終え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法務大臣の措置)

第百十五条 法務大臣は、救済の申出の内容がその申出をした者に対する次に掲げ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に係るものであって、その措置が違法又は不当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措置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消し、又は変更するものとする。

一 第三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診療を受けることを許さない処分又は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診療の中止

二 第四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自弁の物品の使用又は摂取を許さない処分

三 第五十五条の規定による領置されている現金の使用又は第五十六条（第五十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五十七条若しくは第五十八条の規定による領置されている金品の交付を許さない処分

四 第六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書籍等又は新聞紙の閲覧の禁止

五 第六十六条第三項又は第六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費用を負担させる処分

六 第六十八条の規定による新聞紙の取得の制限

七 第七十条に規定する宗教上の行為の禁止又は制限

八 第九十四条、第九十五条第一項若しくは第九十八条（これらの規定を第九十九条、第百三条及び第百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又は第百二条の規定による信書の発受又は文書図画の交付の禁止、差止め又は制限

九 第九十七条第五項前段の規定による発受禁止信書等の引渡しをしない処分

十 第百七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費用を負担させる処分

2 法務大臣は、救済の申出の内容がその申出をした者に対する第百十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少年鑑別所の職員による行為に係るものであって、同項第四号に掲げる行為にあってはその行為が違法であることを、同項第

五号又は第六号に掲げる行為にあってはその行為が違法又は不当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同様の行為の再発の防止のため必要な措置その他の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通知)

第一百十六条 法務大臣は、第一百十四条の規定による処理を終えたときは、速やかに、処理の結果（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法務大臣の措置を含む。）を救済の申出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在所者による救済の申出（第一百十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又は少年鑑別所の職員による行為に係る救済の申出を除く。）について、その在所者が退所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法務省令への委任)

第一百十七条 この款に定めるもののほか、救済の申出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二款 苦情の申出

(監査官に対する苦情の申出)

第一百十八条 在所者は、自己に対す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観護処遇又は鑑別について、口頭又は書面で、第五条の規定により実地監査を行う監査官（以下この条及び第一百二十条第一項において単に「監査官」という。）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一百十一条の規定は、前項の苦情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

3 監査官は、口頭による苦情の申出を受けるに当たっては、少年鑑別所の職員を立ち会わせてはならない。

4 監査官は、苦情の申出を受けたときは、これを誠実に処理し、処理の結果を苦情の申出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者が退所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少年鑑別所の長に対する苦情の申出)

第一百十九条 在所者は、自己に対する少年鑑別所の長の措置その他自己が受けた観護処遇又は鑑別について、口頭又は書面で、少年鑑別所の長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一百十一条の規定は、前項の苦情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

3 在所者が口頭で第一項の苦情の申出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少年鑑別所の長は、その指名する職員にその内容を聴取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前条第四項の規定は、少年鑑別所の長が苦情の申出を受け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款 雜則

(秘密申出)

第二百十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が、救済の申出をし、又は監査官に対し苦情の申出をするに当たり、その内容を少年鑑別所の職員（当該救済の申出に関する相談に応じた相談員を除く。）に秘密に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九十三条（第九十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一百一条（第一百四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かかわらず、救済の申出又は苦情の申出の書面は、検査をしてはならない。

(不利益取扱いの禁止)

第二百十一条 少年鑑別所の職員は、在所者が救済の申出又は苦情の申出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その者に対し不利益な取扱いをしてはならない。

(在院中在所者に関する特則)

第二百十二条 第一百十二条及び前二条の規定は、在院中在所者が少年院法第二百十条の規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て救済を求める申出を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十三節 仮收容

第二百十三条 在所者を同行する場合（第七十八条第一項（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七十九条第四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連れ戻す場合を含む。）において、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きは、最寄りの少年鑑別所若しくは少年院又は刑事施設の特に区別した場所にその者を仮に收容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四節 退所

(被觀護在所者の退所)

第二百二十四条 被觀護在所者の退所は、次に掲げる事由が生じた後直ちに行う。

- 一 あらかじめ定められた収容の期間が満了したこと。
- 二 少年法第十八条、第二十三条第二項若しくは第二十四条第一項の決定又は更生保護法第七十一条の申請に対する決定により觀護の措置が効力を失ったこと（当該決定が審判期日において告知された場合に限る。）。
- 三 家庭裁判所又は檢察官その他のその者の身体の拘束について権限を有する者の退所の指揮又は通知を受けたこと。

(未決在所者の退所)

第二百五条 未決在所者の退所は、次に掲げる事由が生じた後直ちに行う。

- 一 勾留されている被告人について、勾留の期間が満了したこと。
- 二 刑事訴訟法第六十七条第一項（同法第二百二十四条第二項において準ず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留置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あらかじめ定められた留置の期間が満了したこと。
- 三 刑事訴訟法第三百四十五条の規定により勾留状が効力を失ったこと（同法の規定により勾留されている未決在所者が公判廷にある場合に限る。）。
- 四 檢察官の退所の指揮又は通知を受けたこと。

(在院中在所者等の退所)

第二百六条 在院中在所者及び各種在所者の退所は、政令で定める事由が生じた後直ちに行う。

(願い出による滞留)

第二百七条 少年鑑別所の長は、退所させるべき在所者が負傷又は疾病により重態であるとき、その他その者の利益のために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きは、その願い出により、その者が少年鑑別所に一時とどまることを許す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少年鑑別所にとどまる者の觀護処遇については、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各種在所者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歸住旅費等の支給)

第二百八条 退所する在所者に対しては、その歸住を助けるため必要な旅費又は衣類を支給するものとする。

第十五節 死亡

(死亡の通知)

第二百二十九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在所者が死亡した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遺族等に対し、その死亡の原因及び日時並びに交付すべき遺留物又は発受禁止信書等があるときはその旨を速やか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死体に関する措置)

第三百十条 在所者が死亡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死体の埋葬又は火葬を行う者がいないときは、墓地、埋葬等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三年法律第四十八号）第九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埋葬又は火葬は、少年鑑別所の長が行うものとする。

2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在所者の死体に関する措置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四章 非行及び犯罪の防止に関する援助

第三百十一条 少年鑑別所の長は、地域社会における非行及び犯罪の防止に寄与するため、非行及び犯罪に関する各般の問題について、少年、保護者その他の者からの相談のうち、専門的知識及び技術を必要とするものに応じ、必要な情報の提供、助言その他の援助を行うとともに、非行及び犯罪の防止に関する機関又は団体の求めに応じ、技術的助言その他の必要な援助を行うものとする。

第五章 罰則

第三百十二条 第七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解放された在所者（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第九十七条 に規定する者に該当するものに限る。）が、第七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少年鑑別所又は指定された場所に出頭しないときは、一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附 則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少年院法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五条及び第

百十八条の規定は、同法附則第一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規定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入所時の告知に関する特例)

第二条 第二十三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少年鑑別所に収容されている在所者についても、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中「その少年鑑別所への入所に際し」とあるのは、「この法律の施行後速やかに」とする。

(入所の通知に関する特例)

第三条 第二十五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少年鑑別所に収容されている在所者(同条に規定する在所者に限る。)であって、その保護者その他相当と認める者に対し入所の通知がされ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も、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中「被観護在所者、未決在所者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在所者がその少年鑑別所に入所したときは、」とあるのは「この法律の施行後」と、「その旨」とあるのは「被観護在所者、未決在所者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在所者がその少年鑑別所に入所した旨」とする。

(金品の取扱いに関する経過措置)

第四条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少年院法及び少年鑑別所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六年法律第六十号)第一条の規定による廃止前の少年院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六十九号。以下「旧少年院法」という。)第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旧少年院法第九条の規定により領置されている在所者の金品については、第四十五条第二号に掲げる金品とみなして、第五十三条第一項の規定を適用する。

(連戻しに関する経過措置)

第五条 この法律の施行の日(次項及び附則第七条において「施行日」という。)前にされた旧少年院法第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旧少年院法第十四条第三項の請求であって、この法律の施行の際まだその処理がされ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は、第七十八条第三項の請求とみなす。

2 施行日前に旧少年院法第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旧少年院法第十四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発せられた連戻状であって、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その効力を有するものについては、第七十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発せられた連戻状とみなす。

(發受を禁止した信書の取扱いに関する経過措置)

第六条 旧少年院法第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旧少年院法第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く法務省令の規定により發受を許されなかった在所者に係る信書であって、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少年鑑別所の長が保管しているものについては、第九十七条第一項（第九十九条、第百三条及び第百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保管している信書とみなす。

(救済の申出に関する経過措置)

第七条 第百十条第一項の規定は、施行日前に退所した者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연구총서 15-AB-05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발행 | 2015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김진환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삼신인쇄 (02)2285-6478
ISBN | 978-89-7366-855-7 9336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